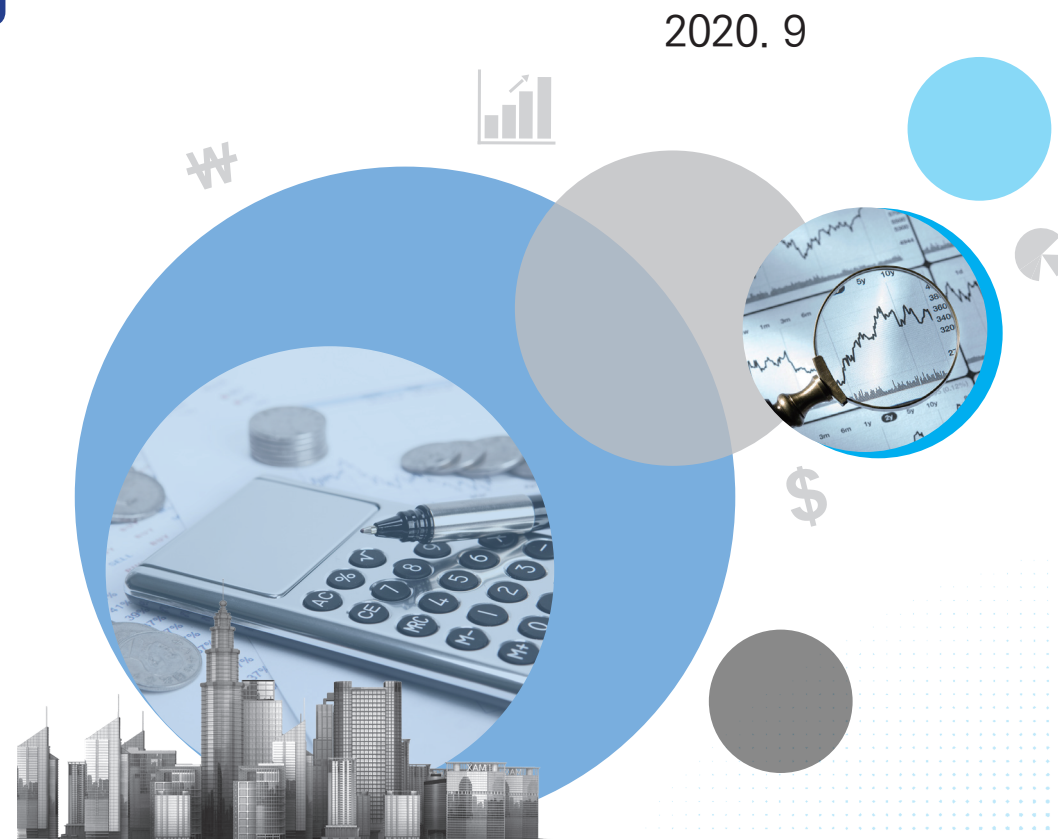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창업자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자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창업자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0.9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0.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

2020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요 약

1. 연구개요

- 본 연구는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벤처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함
- 1990. 12. 31.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이들 기업의 초기 창업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엔젤투자자의 투자수익과 손실의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하여 제도를 신설하였음)
 - 이후 1998. 12. 28.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구법 제13조를 제14조로 이관함
 - 2006. 12. 30. 조세지원제도의 항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이 최초로 신설되었음
- 동 제도는 비과세 혜택으로 정확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고, 특히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창투자 등과 달리 감사보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없어 조세지출 규모 추정이 어려움
 -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규모는 다음과 같으나, 2018~2020년 집계된 조세지출규모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규모임

<표 1>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양도소득세	-	-	-	-	-	-	0.15 (소득세)	-	101 (법인세)	1 (법인세)	1 (법인세)

주: 2019~2020년 자료를 추정치 자료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1)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20

<표 2> 제도 연혁(제도 주요 개정사항)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1998. 12. 28. (199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대상 확대 4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200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대상 확대 5호.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29. (200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대상 확대 6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7. 13. (2005.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대상 확대 2-2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용어 개정, 대상 확대) 7호.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2006. 12. 30. (200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설정 - 일몰기한: 2009. 12. 31. - 다만,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 기업 출자주식의 경우, 2007. 12. 31로 함
2007. 12. 31. (200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2007. 12. 31.) 도래로 특례대상 중 5호.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삭제
2010. 1. 1. (201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14조의 법률명 변경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 • 일몰연장 - 일몰연장: 2009. 12. 31. → 2012. 12. 31.
2011. 12. 31. (201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대상 확대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13. 1. 1. (201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일몰연장: 2012. 12. 31. → 2014. 12. 31.
2014. 12. 23. (2015.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일몰연장: 2014. 12. 31. → 2017. 12. 31.
2016. 12. 20. (201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대상 확대 5호.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17. 12. 19. (201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일몰연장: 2017. 12. 31. → 2020. 12. 31.
2019. 12. 31. (20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대상 확대 8호.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출자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제1항

2. 분석내용 및 결과

- 주요국에서는 투자단계 세금감면 요건과 연동하여 간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손실에 대한 세금감면, 공제한도 설정으로 일부 대상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편중현상을 완화함

〈표 3〉 주요국의 벤처주식 양도 과세특례

구분	미국	영국	일본	
감면유형	- 재투자 과세이연 - 양도차익 비과세 - 양도차손 공제	- 재투자 과세이연 - 양도차익 비과세 - 양도차손 공제	- 양도차손 공제 - 감액손실 공제	
대상기업	- 비상장 소기업	- 비상장 소기업	- 비상장 소기업	
업력 제한	- 없음	- SEIS(2년) - EIS(7년)	- 없음	
신주취득 요건	○ (일부 예외)	○	○	
보유기간 요건	- 과세이연: 6개월 - 비과세: 5년	- 비과세: 3년	×	
한도	투자자	- Max(취득가액의 10배, 평생한도 \$1천만)	- SEIS(£5만) - EIS(£1백만)	×
	벤처기업	×	- SEIS(£15만) - EIS(£12백만, 평생한도)	×
혁신기업 우대	×	○ (한도 상향조정)	×	
투자단계 세금감면	△ (주별로 상이)	○	○	
투자단계 세금감면요건과 연동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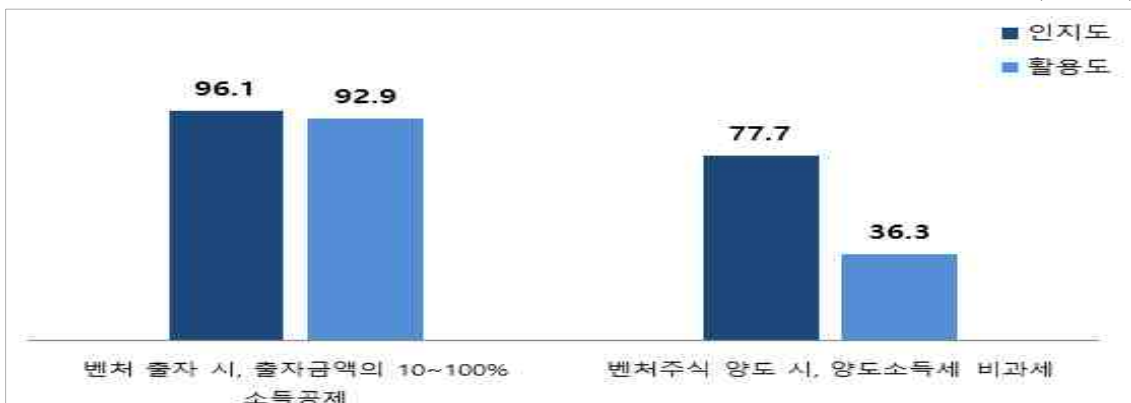
주: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자료: www.irs.gov, www.gov.uk, www.nta.go.jp

- 타당성 분석 결과,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할 정책성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원방식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정부지원: 창업초기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수단 중 정부 정책지원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하여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할 정책이 필요함
 - 업력 5년 이하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지원금 의존도는 70% 수준²⁾
 - 지원방식: 전문투자자는 투자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 동 제도가 벤처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식일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는 투자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투자성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한 조세지출일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투자규모 1억원 이하 개인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님³⁾
 - 정책대상: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적용대상 불일치로 제도의 복잡성이 높고, 인지도가 낮으며, 창업초기단계 기업들은 혜택을 얻기 어려운 구조임
 - 설문조사 결과,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지도 및 활용도는 높은 반면, 동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낮음
 - 벤처인증 전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초기 기업의 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음⁴⁾

[그림 1]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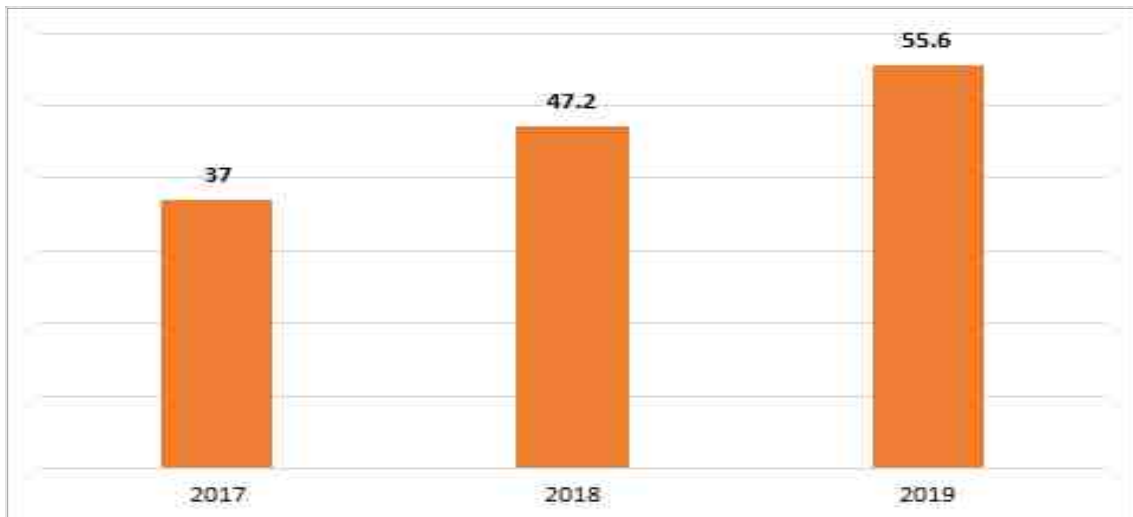
- 2)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20
- 3) 신주취득과 구주인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세제 혜택은 투자금액 합계별로 1,500만원 이하는 0%, 3,000만원 이하는 9.1%, 5,000만원 이하는 10%, 1억원 이하는 28.6%로 전체 평균 30.1%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 4) 기업설립 후 벤처인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4.55년 수준(2019년 벤처인증기업 기준)

4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방법: 벤처기업·투자자별 비과세 한도 미설정으로 일부대상에게 편중현상이 존재하며, 직접투자에 대한 엄격한 업력 및 보유요건 적용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벤처투자비율이 높으며, K-OTC⁵⁾ 중소·중견기업 주식양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
 - 2019년 기준 동 제도의 수혜기업은 전체 벤처인증기업의 17.1%에 불과, 비상장 벤처주식 양도가액의 52.4%⁶⁾가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음
 - 업력요건이 직접투자에는 5년, 간접투자에는 7년 또는 미적용

[그림 2] 투자확인서 발급기업 중 업력 5년내 벤처기업 비중

(단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가공

- 설문조사 결과, 3년 이상 보유요건을 미충족한 개인투자자는 35.5%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소액투자에서 해당 보유요건을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음
 -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업력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반면, 벤처주식은 회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는 모험자본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에 역행함⁷⁾

5)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 Korea Over The Counter의 약칭임

6) 2017~2019년, 3년 평균

7) 2018.1부터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및 증권거래세 인하

<표 4>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수혜기업 수

(단위: 개, %)

		2015	2016	2017	2018	2019
벤처인증기업 (①)		22,715	23,086	24,554	25,391	24,669
수혜 벤처기업 (②)	벤처캐피탈 투자	1,045	1,191	1,266	1,399	1,608
	신기술사업금융 투자	647	656	778	1,305	1,468
	엔젤투자	455	546	612	1,092	1,107
	K-OTC 거래	22	22	23	27	34
	소 계	2,169	2,415	2,679	3,823	4,217
수혜 비율 (②/①)		9.5	10.5	10.9	15.1	17.1

주: 각 항목 간 동일 벤처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
 자료: 벤처인·한국벤처캐피탈협회·여신금융협회·K-OTC 홈페이지

<표 5> 투자확인서 발급실적

(단위: 억원, %)

연도	벤처기업 투자				벤처미인증 중소기업 투자		합계
	업력요건 충족		업력요건 미충족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7	1,857	51.6	1,090	30.3	654	18.2	3,601
2018	3,507	59.8	1,494	25.5	868	14.8	5,869
2019	3,491	74.0	620	13.1	609	12.9	4,721

주: 1. 업력요건은 창업 후 5년 이내 또는 벤처인증 후 3년 이내
 2. 중소기업 투자란, 벤처 인증 전 2년 내 투자,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성 우수중소기업·R&D지출 연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기술신용평가 5등급 이상 중소기업을 말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가공

- 타 제도와 중복성: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와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음
 - 회수단계의 재정지원: 동 제도는 벤처투자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정책효과가 크므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예: M&A펀드, 세컨더리 펀드)과 보완적 관계임
 - 투자단계의 세제지원: 국가경제에서 벤처산업의 중요도가 높으므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벤처 투자 및 회수단계에 중복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⁸⁾

8) PwC 조사결과, 조사대상 18개 국가 중 9개 국가에서 투자와 회수단계에 동시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함

- 회수단계의 세제지원: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직접투자자는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어 역차별 문제가 존재함

□ 효과성 분석 결과, 동 제도의 재정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투자 유치 및 개인투자자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벤처투자자는 동 제도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벤처기업은 보통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벤처신주취득 유인효과를 투자손익 변동성 축소효과보다 높게 평가함

- VC는 개인투자자보다 법인투자자를, 벤처기업은 개인투자자보다 VC투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6> 동 제도의 효과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개, %, 점)

설문대상	사례수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도		구주인수 대신 신주취득을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벤처투자의 손익변동성을 줄여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위험을 줄여줌	
		긍정비율	4점 평균	긍정비율	4점 평균	긍정비율	4점 평균
벤처투자자	(103)	99.0	3.63	95.1	3.55	82.5	3.12
창업투자회사	(49)	85.7	3.16	89.8	3.22	77.6	2.94
벤처기업	(46)	69.6	2.76	67.4	2.78	69.6	2.78
창업기획자	(91)	97.8	3.34	90.1	3.20	84.6	2.98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 VC 및 신기술금융업자의 개인출자자 출자금액 및 비중과 엔젤투자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모태펀드의 대규모 추경 및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확대가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⁹⁾¹⁰⁾

9)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 1. 29),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10) 20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8,300억원)과 2018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표 7> 개인의 벤처투자금액 변동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창업투자	개인 출자자	금액	1,805	1,179	3,350	2,974	5,710
		비중	6.8	3.1	7.3	6.2	13.9
신기술사업금융	개인 출자자	금액 ¹⁾	294	912	1,628	2,618	3,640
		비중	2.8	7.2	9.8	10.5	11.2
엔젤투자	직접투자		1,842	2,193	2,599	4,726	3,198
	개인투자조합		206	393	1,001	1,143	1,522
K-OTC 시장의 개인 벤처거래가액 ²⁾			659	272	348	3,755	7,030

주: 1. 창업투자: 창투자 + 창투조합 + KVF

2.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사 + 신기술조합

1) 신기술사업금융의 신규투자금액 × 신기술사업금융의 개인출자자 비중

2) K-OTC 벤처주식거래금액 × K-OTC 개인투자자 거래비중(96%)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여신금융협회·K-OTC 홈페이지

- 투자손익 변동성 완화: 높은 손실보고비율에도 투자실패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족으로 투자손익 변동성 완화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음
 - 2019년 해산한 창투조합의 1/3이 손실보고를 함
 - 일본은 2014년부터 벤처주식 양도차익의 50%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양도차 손 및 감액손실에 대한 손실공제를 강화함

<표 8> 창투조합의 투자수익률 분포

(단위: 개, %)

연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25%	중간값	75%	최댓값
2015	22	25.2	73.0	-85.4	-	12.3	48.8	252.2
2016	37	-3.0	55.5	-83.7	-46.8	-	8.2	163.4
2017	35	18.0	54.0	-91.3	-29.0	18.8	54.7	161.7
2018	44	36.0	110.1	-99.8	-20.4	11.0	44.6	462.4
2019	36	35.0	117.5	-80.8	-26.1	19.2	61.1	627.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가공

- 정책대상자 행태변화: 설문조사 결과, 창업기획자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추가(2017년)된 이후, 개인투자자 유치(81.3%) 및 개인투자자 비중(71.4%)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출자(2020년)에 대한 세법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함¹¹⁾
- 유사지원제도 효과: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동 제도보다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투자자의 투자규모 및 소득수준이 높고, 회수경험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표 9> 벤처투자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세제 혜택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벤처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벤처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투자자	(103)	68.0	32.0
창업투자회사	(49)	59.2	40.8
벤처기업	(46)	54.3	45.7
창업기획자	(91)	71.4	28.6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조세지출 규모: 2019년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81.6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조세지출의 약 40% 정도가 창투조합의 개인투자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모펀드는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투자위험이 높은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출규모 및 비중이 낮은 편임
 - K-OTC 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수혜기업 수가 34개 불과한 K-OTC 거래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

11) 조사 결과, 업력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펀딩시도 건수 중 과세특례 대상 펀딩 실적은 전무함

<표 10> 조세지출규모 추정

(단위: 억원, %)

정책대상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개인투자자 ¹⁾	5.6	26.1	6.2	11.4	4.3	5.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²⁾	10.9	50.8	21.5	39.5	31.3	38.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³⁾	1.7	7.9	3.3	6.0	1.6	1.9
농식품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⁴⁾	0.0	0.0	0.0	0.1	0.0	0.1
신기술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⁵⁾	0.9	4.1	1.8	3.4	2.6	3.1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자 ⁶⁾	1.3	6.3	6.1	11.2	9.6	11.7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 ⁷⁾	0.6	2.8	2.5	4.5	2.4	3.0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의 K-OTC 거래 ⁸⁾	0.4	2.1	13.0	23.9	29.7	36.4
합계	21.5	100.0	54.5	100.0	81.6	100.0

- 주: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개인투자자의 양도가액=(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양도소득세율(10%)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창업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비중×양도소득세율(10%)
 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모태출자 펀드의 개인투자자 비중÷(1+모태출자 펀드의 회수수익률)×모태출자 펀드의 회수수익률×양도소득세율(10%)
 4)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모태출자 펀드의 개인투자자 비중÷(1+모태출자 펀드의 회수수익률)×모태출자 펀드의 회수수익률×양도소득세율(10%)
 5)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신기술금융사의 개인투자자 비중÷(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양도소득세율(10%)
 6) 3년 전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금액×창업 5년 내 또는 벤처인증 후 3년 내 벤처기업 투자비율×벤처펀드 회수수익률×(1-3년 이내 투자회수비율)×양도소득세율(10%)
 7)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가액÷(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양도소득세율(10%)
 8) K-OTC 벤처거래가액×K-OTC 시장의 개인투자자 거래비중÷(1+벤처펀드 회수수익률)×벤처펀드 회수수익률×(1-창업자 지분율)×양도소득세율(10%)

자료: 저자 작성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소득공제 제도와 정책대상자 일치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간접투자에 비해 투자위험이 높고, 사모펀드의 경우에 출자자 수(49인)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개인 벤처투자 증대를 위하여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창투회사를 제외한 벤처투자자, 창업기획자, 벤처회사 모두 개인의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함¹²⁾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적용대상 일치: 각 제도의 적용대상 벤처투자의 범위를 통일하여,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 벤처인증 전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득공제 제도는 벤처인증은 없지만 지원이 필요한 창업초기기업¹³⁾뿐만 아니라 창업 후 5년 이후 벤처투자자에 대하여도 세제 혜택을 제공함
 - 설문조사 결과, 각 제도의 적용대상 일치화에 대한 응답비율(40.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벤처기업·투자자별 한도 설정: 벤처기업·투자자별 한도(취득가액 기준)를 설정하여 특정 벤처기업 및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투자 장려가 필요한 혁신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에는 보다 높은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단, 동 제도는 일반투자자보다 전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도에 효과가 높으므로 투자자별 한도를 설정할 경우에 동 제도의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엔젤투자손실공제제도 도입: 투자실패 우려로 개인이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벤처주식의 양도차손 및 손상차손을 타 주식 양도차익이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과세이연제도 도입: 보유조건(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양도대금을 벤처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12) 직접투자가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세제 혜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벤처투자자가 56.3%, 창투회사가 28.6%, 벤처기업이 52.2%, 창업기획자가 45.1%로 응답하였음(나머지는 간접투자 또는 무차별에 응답)

13) 벤처 인증 전 2년 내 투자,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성 우수중소기업·R&D지출 연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기술신용평가 5등급 이상 중소기업

목 차

I. 서론	23
II.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29
1. 제도 개요	29
2. 제도 연혁	32
가. 1990. 12. 31.(제도 신설)~1997. 12. 13.	32
나. 1998. 12. 28.~ 현재	38
3. 제도 현황	49
가. 벤처투자 시장동향	49
나. 벤처 및 엔젤투자 현황	56
다. 창업기획자 등록 현황	63
라. 창투사(조합) 또는 신기사(조합) 현황	68
마. 농식품투자조합	76
바. 프리보드 시장의 벤처기업 투자	77
사. 클라우드 펀딩 현황	81
III.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89
1. 선행연구	91
가. 개인 벤처투자의 결정요인	91
나. 벤처세제지원의 효과	91
다. 벤처캐피탈 및 비즈니스 엔젤을 위한 조세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EC 보고서 ...	92
2. 국제 비교	93
가. 미국	93
나. 영국	97
다. 프랑스	102

라. 일본	103
마. 시사점	106

IV. 타당성 평가 109

1. 정부지원의 적절성	111
가.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111
나.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112
2. 수행방법의 타당성	116
가. 지원방식의 타당성	116
나. 대상설정의 타당성	118
다. 지원·감면방법의 타당성	119
3. 타 제도와의 중복성	127
가. 재정지원과 중복성 검토	127
나. 세제지원과 중복성 검토	129

V. 효과성 평가 133

1.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135
가. 정책목표 달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35
나.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 효과	137
다. 투자손익 변동성 완화 효과	142
2.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	144
가. 2011년 세법개정이 정책대상자의 행태에 가져온 변화	145
나. 2016년 세법개정이 정책대상자의 행태에 가져온 변화	146
다. 2019년 세법개정이 정책대상자의 행태에 가져온 변화	149
3. 유사지원제도와 효과 비교	151
가.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효과 비교	151
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와 효과 비교	153
4. 조세지출규모 추정	154
가. 조세지출규모 추정결과와 평가	154
나. 조세지출규모 산정과정	156

VI. 결론 및 개선방안	165
1.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	167
2. 쟁점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	169
가.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169
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적용대상 일치	174
다. 벤처기업별·투자자별 한도 설정	179
라. 엔젤투자손실공제제도 도입	181
마. 과세이연제도의 도입	184
 참고문헌	 187
 부 록	 191

표 목 차

<표 II-1>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합 등의 출자 유형	30
<표 II-2>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책대상자	30
<표 II-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지출규모	32
<표 II-4>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6(1990. 12. 31. 신설)	33
<표 II-5>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1990. 12. 31)	34
<표 II-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자 정의	35
<표 II-7>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36
<표 II-8>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연혁(1993. 12. 31~1997. 12. 13) ...	37
<표 II-9> 1998. 12. 28. 법 개정 내용	39
<표 II-10> 1999. 12. 28. 법 개정 내용	40
<표 II-11> 2000. 12. 29. 법 개정 내용	40
<표 II-12> 2001. 12. 29. 법 개정 내용	41
<표 II-13> 2005. 7. 13. 법 개정 내용	42
<표 II-14> 2006. 12. 30. 법 개정 내용	43
<표 II-15> 2007. 12. 31. 법 개정 내용	44
<표 II-16> 2010. 1. 1. 법 개정 내용	45
<표 II-17> 2011. 12. 31. 법 개정 내용	45
<표 II-18> 2013. 1. 1. 법 개정 내용	46
<표 II-19> 2014. 12. 23. 법 개정 내용	46
<표 II-20> 2016. 12. 20. 법 개정 내용	47
<표 II-21> 2017. 12. 19. 법 개정 내용	47
<표 II-22> 2019. 12. 31. 법 개정 내용	48
<표 II-2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요 제도연혁	48
<표 II-24> 벤처투자 시장 동향(2019~2020 상반기)	50
<표 II-25> 연도별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51

<표 II-26>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54
<표 II-27>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	56
<표 II-28> 벤처투자 규모 현황	57
<표 II-29> 엔젤투자 규모 현황	57
<표 II-30> 전문엔젤 투자자 수	58
<표 II-31> 개인투자조합 결성 현황	58
<표 II-32> 100억원 및 200억원 투자규모 이상 유치 기업 수	59
<표 II-33> 업종별 벤처기업 투자 현황(투자 규모 및 비중)	60
<표 II-34> 업종별 벤처기업 투자 현황(업체수, 금액, 비중)	60
<표 II-35>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	61
<표 II-36> 2018, 2019년 벤처펀드 결성액 비교	61
<표 II-37> 출자자별 벤처펀드 금액 현황	62
<표 II-38>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지역별 등록현황	66
<표 II-3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유형별 등록현황	67
<표 II-40>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 투자실적	72
<표 II-41> 신기술투자조합 및 창업투자조합 투자실적	73
<표 II-42> 신기술금융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75
<표 II-43> 신기술투자조합 및 창업투자조합 업력별 투자 비중	76
<표 II-44> 농식품투자조합 투자·회수 현황	77
<표 II-45> K-OTC 시장 기업현황	79
<표 II-46> K-OTC 시장 거래규모	79
<표 II-47> 기업규모별 기업수 및 거래대금(2019)	80
<표 II-48> 연도별 K-OTC 기업 수 현황	80
<표 II-49> 클라우드 펀딩 연도별 성공실적	81
<표 II-50> 클라우드 펀딩 업종별 성공 현황	82
<표 II-51> 클라우드 펀딩 업력별 성공 현황	83
<표 II-52> 클라우드 펀딩 모집규모별 성공 현황	83
<표 II-53>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현황(누적)	84
<표 II-54>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현황(월별)	84
<표 II-55>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구분·성별 현황	86

<표 II-56>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구분·연령별 현황	86
<표 II-57> 클라우드 펀딩 일반투자자의 1기업당 투자금액	87
<표 II-58> 클라우드 펀딩 적격투자자의 1기업당 투자금액	87
<표 III-1> 바람직한 벤처 조세지원제도의 특징	92
<표 III-2> 영국의 벤처지원제도 개요	97
<표 III-3> 영국의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00
<표 III-4> 영국의 벤처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	102
<표 III-5> 주요국의 벤처주식 양도 과세특례	107
<표 IV-1> 경영 애로사항(상위응답률)	112
<표 IV-2>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113
<표 IV-3>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규모 및 방법	115
<표 IV-4> 우리나라와 미국의 엔젤투자액 및 기업 수 현황	115
<표 IV-5> 세계 혜택이 벤처 투자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 유형(1순위)	116
<표 IV-6> 세계 혜택이 벤처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117
<표 IV-7> 벤처 출자 시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수혜대상 비교	118
<표 IV-8>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수혜기업 수	120
<표 IV-9> 벤처기업별 1사당 엔젤투자액	121
<표 IV-10>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현황(2019년)	122
<표 IV-11> 종합소득 과세구간별 비상장 벤처주식 양도가액 분포	123
<표 IV-12> 벤처투자자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	123
<표 IV-13> 투자확인서 발급실적	124
<표 IV-14> 벤처투자의 평균 회수기간	126
<표 IV-15> 구주인수 확대로 적용 대상 확대하는 것이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	127
<표 IV-16>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정책	128
<표 IV-17> 각국의 벤처투자단계별 세계 혜택	129
<표 IV-18>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벤처투자의 비교	130

<표 V-1> 동 제도의 효과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136
<표 V-2> 개인의 벤처투자금액 변동	137
<표 V-3> 신규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자 구성	138
<표 V-4> 신규 결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자 구성	140
<표 V-5> K-OTC 시장의 벤처주식 거래실적	141
<표 V-6> 최근 10년간 벤처투자펀드 평균수익률과 표준편차	142
<표 V-7> 최근 5년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률 분포	143
<표 V-8> 2010년 이후 동 과세특례의 주요 개정사항	144
<표 V-9> 창업기획자 특례대상 추가가 창업기획자의 개인출자자 유치에 미친 효과 ..	147
<표 V-10> 창업기획자의 유형	148
<표 V-11>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금액 및 투자자 구성	149
<표 V-12> 업력 3년 내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150
<표 V-13> 벤처투자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세제 혜택	151
<표 V-14> 벤처 출자금 소득공제가 더 효과적인 이유(전체)	151
<표 V-15> 벤처투자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은 세제 혜택(개인투자자)	152
<표 V-16>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의 감면실적	153
<표 V-17> 조세지출규모 추정	155
<표 V-1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156
<표 V-1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157
<표 V-20>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158
<표 V-21> 농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159
<표 V-22> 신기술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160
<표 V-23>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161
<표 V-24>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162
<표 V-25>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의 K-OTC 거래와 관련된 조세지출규모 추정 ...	162
<표 VI-1> K-OTC 시장의 벤처주식 거래실적	168
<표 VI-2> 벤처캐피탈 투자제도의 비교	171
<표 VI-3>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세제 혜택 집중 형태	173
<표 VI-4>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대상 비교	174

<표 VI-5>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	177
<표 VI-6>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관련 개선사항(1순위)	178
<표 VI-7> 주요국의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한도	181
<표 VI-8> 주요국의 엔젤투자손실공제제도	183
<표 VI-9> 주요국의 벤처투자 회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종류	185

그림 목 차

[그림 II-1] 벤처투자 재원(결성금액 및 조합 수) 현황	50
[그림 II-2] 연도별 신규투자 규모	52
[그림 II-3] 연도별 투자 잔액 규모	52
[그림 II-4] 연도·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규모	53
[그림 II-5] 연도·업력별 신규투자 기업 수 규모	54
[그림 II-6]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규모 비교	55
[그림 II-7] 벤처투자 및 엔젤투자 현황	56
[그림 II-8]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누적 등록현황	67
[그림 II-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현황(2016~2020 상반기)	71
[그림 II-10]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영위 현황(2008~2019)	72
[그림 II-11] 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 구성(2019)	74
[그림 IV-1] 연도별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자 비중	114
[그림 IV-2]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 ..	119
[그림 IV-3] 벤처기업의 엔젤투자자 투자유치 경험	121
[그림 V-1] 신규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개인출자자 출자액	138
[그림 V-2] 신규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개인출자자 비중	139
[그림 V-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손실보고비율	143
[그림 V-4] 연도별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펀드 수 및 펀드규모	145
[그림 V-5] 연도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결성조합 수 및 투자건수	146
[그림 V-6] 창업기획자 등록자 수	148
[그림 VI-1] 세계 혜택 확대가 필요한 투자자 유형(창업투자회사)	170
[그림 VI-2] 창업투자회사의 신주 취득과 구주 인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73
[그림 VI-3]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실적 분석	176

[그림 VI-4] 동 과세특례의 수혜기업비율	179
[그림 VI-5] 업력 5년 미만 벤처기업의 1사당 엔젤투자액 분포	179
[그림 VI-6] 근로소득금액 규모별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비율	180
[그림 VI-7] 동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개인투자자의 평가(긍정응답비율)	182
[그림 VI-8] 최근 5년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률 분포	182
[그림 VI-9]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평균 회수기간	184

I. 서론



I. 서론

-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도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초기 창업 자급에 대한 애로사항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
 - 정부가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자에 대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수익과 손실의 불균형을 치유하고자 도입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1999년 이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예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특례대상 확대, 일몰조항 신설, 조항 제목 변경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
 - 초기에는 동 제도에 따른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2006. 12. 30에 최초로 3년 일몰조항이 신설된 이후 4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현재 2020. 12. 31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임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나 조세지원제도의 항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신설함

- 본 연구는 동 제도의 타당성, 효과성 및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동 제도는 2020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용기한 종료 전 조세지출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제도 개선방향 및 일몰연장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크게 제도 관련 기초자료 검토,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그리고 이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방안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1)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20.

- (제도 연구) 타당성·효과성·효율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동 제도의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제도 도입 목적에 대한 검토, 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혜 대상 및 수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음
 -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조세지출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고 조세특례제도의 수혜자 행태변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 (해외 사례) 동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분석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이 있는지 점검하였음
 - 주요국에서 동 과세특례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동 제도와 관련하여 적용할 만한 시사점이 있는지 점검
 - (타당성 분석) 우선적으로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부분 즉, 해당 조세특례제도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정부 개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없는지 등을 살펴봄
 - (효과성 분석) 동 조세특례의 정책목표는 개인투자자의 신주취득 유인 및 벤처투자자로서의 개인투자자의 손익 변동성 축소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와 함께 벤처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였음

Ⅱ.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II.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1. 제도 개요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①항) 제도는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이데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자에 대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통해 수익과 손실의 불균형을 치유하고자 함

-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창업자 등에 투자·출자하는 개인 및 투자조합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특법」 §14①항 1호)
 - (조합 등의 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특법」 §14①항 2호, 2의2호, 2의3호, 3호, 6호)²⁾
 - (창업기획자 출자)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특법」 §14①항 5호)
 - 창업기획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엑셀러레이터)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전환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특법」 §14①항 4호)
 -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벤처기업 출자(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것 포함) 요건(조특령 §13)
 - ① 3년 보유

2) <표 II-1>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합 등의 출자 유형 참조

- ②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2016. 2. 5 이후부터는 최초 출자 후 3년 이내에 추가 출자하고 총출자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포함),
- ③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출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인 자,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과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출자
- (벤처기업 주식 투자) K-OTC(협회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조특법」 §14 ①항 7호)
-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출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특법」 §14 ①항 8호)

〈표 II -1〉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합 등의 출자 유형

투자 및 출자 주체	투자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투자조합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자료: 저자 작성

- 각 정책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①항 1호~8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표 II -2〉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책대상자

구분	정책대상자
1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않는 자를 말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함
2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 ¹⁾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분	정책대상자
3호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호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①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출자일 것 ²⁾ ②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또는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함
5호	○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호	○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호	○ 「증권거래세법」 ³⁾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으로 즉,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함 - 단, 「소득세법」 ⁴⁾ 에 따른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함
8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⁵⁾ 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10은 증권 모집의 특례에 대한 조항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를 말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②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⁶⁾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고,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의 어느 하나 요건을 만족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을 말함

주: 1)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2)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봄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

4)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10

6)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연구·인력개발비가 2천만원,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25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3호), 「소득세법」(법률 제16834호),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6189호), 「증권거래세법」(법률 제168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57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①항에 따라 규정된 정책대상자의 경우, 창업자 등에 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함
 - 단,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등의 취득분이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됨
- 동 제도는 비과세 혜택으로 정확한 통계 산출이 불가하고 특히,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는 창투자 등과 달리 감사보고서 등의 공시 의무가 없어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지출규모는 <표 II-3>과 같이 나타나며, 2018~2020년에 집계된 조세지출규모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규모임

<표 II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양도소득세	-	-	-	-	-	-	0.15 (소득세)	-	101 (법인세)	1 (법인세)	1 (법인세)

주: 2019~2020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제도 연혁

가. 1990. 12. 31.(제도 신설)~1997. 12. 13.

- 동 제도는 1990. 12. 3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6(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설되어, 1993. 12. 31. 동법 전면 개정 시 동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이관 및 개정되었음

§제67조의 16(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¹⁾²⁾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 1) 1990. 12. 3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 범위 중 “4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추가되었음
2) 당시 「소득세법」 개정이유는, 땀흘려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양도소득 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간 세부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가의 서화, 골동품 등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추가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종전에는 그 주식의 취득시의 유보이익과 양도 당시의 유보이익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으로 과세하도록 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소득세법」(1990. 12. 31)

□ 종전에는 개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양도로 취급되는 특정주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규정된 비상장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1991. 1. 1. 이후 양도 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음

- 1990. 12. 31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 범위 중 ‘4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추가되었음
- 당시 「소득세법」 개정이유는, 땀 흘려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양도소득 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 간 세부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개정 내용 중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가의 서화, 골동품 등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추가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종전에는 그 주식의 취득시의 유보이익과 양도 당시의 유보이익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으로 과세하도록 함

<표 II -5>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1990. 12. 31)

구분	조문내용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호. 위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토지등의 범위)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제1항 제1호¹⁾·제4호²⁾ 또는 5호³⁾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과 동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⁴⁾이 발행한 것으로서 동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⁵⁾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을 제외함

- 주: 1)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특수관계)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특수관계)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을 말함
- 2)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
- 3) 「소득세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또는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 4)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에 한함
- 5)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함

자료: 「소득세법」 제23조(법률 제428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법률 제13194호)

□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신기술사업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건전하게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³⁾

3)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다 함은 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고 매입에 의한 취득은 제외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취득한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당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정의는 <표 II-6>과 같으며, 창업의 범위 및 창업의 적용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법령에서 정해진 창업 및 적용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규정이 적용됨

<표 II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자 정의

구분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함 ○ 창업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 -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지원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규정에 근거하여 결성된 조합을 의미함

자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3조(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업종)

- 만약,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의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 등은 창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였으나 1997. 8. 28. 「여성전문금융업법」의 제정으로 동 정의가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변경되었음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표 II-7>과 같음

<표 II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구분	조문내용
「여성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조합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위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용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및 운용 ○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함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품질향상·제조원가절감·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함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자료: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중소기업창업자나 신기술사업자의 사업개시단계에서 설립자본금에 공동출자 등의 형태로 창업을 지원하여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당해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이 통상적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지분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 종전에는 당해 양도차익을 각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감면하였으나, 1993. 12. 31. 법 개정 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방법으로 전환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1993. 12. 31~1997. 12. 13. 사이의 제도 연혁은 <표 II-8>과 같음

<표 II-8>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연혁(1993. 12. 31~1997. 12. 13)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1993. 12. 31. (199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조세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각종 조세감면을 적정수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등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는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함
1996. 12. 30. (199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의 제목 중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변경함 ○ 기관투자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13조 제2항) 신설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1997. 8. 30. (1997. 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 제3항) 신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제13조 제4항) 신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특례(§제13조 제5항) 신설 ○ 이자소득 등의 비용인정특례(§제13조 제6항) 신설
1997. 12. 13. (199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한 정의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1997. 8. 28.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료: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나. 1998. 12. 28.~ 현재

- 1998. 12. 28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됨과 동시에 구법 제13조를 제14조로 이관하였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추가되었음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동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⁴⁾

4) 「조세특례제한법」 제정·개정이유, 1998. 12. 28.

<표 II -9> 1998. 12. 28.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1998. 12. 28. (199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됨 ○ 다음 각 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금융업법」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²⁾(특례대상 확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호. 제1호~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의 양도 소득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에서 제외됨

주: 1)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동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정·개정이유, 1998. 12. 28)

2) 「소득세법」, 법률 제5580호.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5584호.

- 1999. 12. 28에는 정부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즉, 동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추가되었음

- 「산업발전법」 제15조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며, 동법 제 14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제4항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법률임

<표 II -10> 1999. 12. 28.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1999. 12. 28. (2000. 1. 1.)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 확대 5호.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6045호.

- 2000. 12. 29에는 동 제도의 제1호~제4호 및 제6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로 한정하고, 4호의 규정 중 “최초” 규정을 삭제하였음

<표 II -11> 2000. 12. 29.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00. 12. 29. (2001. 1. 1.)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제1호~제4호 및 제6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동 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th> </tr> </thead> <tbody> <tr> <td>○</td> <td>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함</td> </tr> <tr> <td>1.</td> <td>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td> </tr> <tr> <td>2.</td> <td>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td> </tr> <tr> <td>3.</td> <td>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td> </tr> <tr> <td>4.</td> <td>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td> </tr> </tbody> </table> ○ 동 특례대상 중 4호의 내용 중 “최초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규정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최초 규정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함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함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6538호.

- 2001. 12. 29에는 동 제도의 제4호의 근거 규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서 동법 제13조로 변경하였고, 동 제도의 특례대상 중 제6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확대하였음

<표 II -12> 2001. 12. 29.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01. 12. 29. (200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제도 제4호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해당 법 제13조로 변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의 근거 조항에서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의 근거 조항으로 변경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13조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②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이 경우 투자금액, 투자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동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② 해당 법에 따라 등록하는 개인투자조합은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출자한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 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6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²⁾</p>

주: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6482호.

2)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투자조합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은 ① 또는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말함(① 총매출액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②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의 부품·소재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6538호.

- 2005. 7. 13에 동 제도의 특례대상으로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를 추가하여 순수 벤처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퇴출기업의 자력회복과 코스닥 상장 전 기업을 지원함⁵⁾

5) 기획재정부,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 2006.

- 특례대상으로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의 제1항 제3호의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에 한함)을 추가하였음
 - 프리보드란,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장외호가 중개시장으로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 이전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또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음⁶⁾

<표 II -13> 2005. 7. 13.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05. 7. 13. (2005.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제도의 특례대상 확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 대상(동 제도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제6호) 재규정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금융업법」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2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용어 개정, 대상 확대)¹⁾ 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호.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의 제1항 제3호의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에 한함)(특례대상 확대)²⁾ <p>* 즉, 프리보드³⁾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p>

6) 기획재정부,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 2006.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함

- 주: 1) 기존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구분하여 개정함
2) 이 조항은 2005. 8. 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3) 프리보드란,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장외호가 중개시장으로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7577호.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법률 제6302호.

- 2006. 12. 30에는 동 제도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이지만 제도의 항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이 신설되었음
 - 이는 일몰도래 시 연장 여부를 일관되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일몰기한은 2009. 12. 31로 정함
 - 다만, 개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CRC조합)을 통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법 §14①5호)의 일몰기한은 기관투자자·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 §14②·§55①)의 일몰기한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07. 12. 31로 정함

<표 II -14> 2006. 12. 30.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06.12.30. (200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2009. 12. 31. - 다만,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 기업 출자주식의 경우, 2007. 12. 31로 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8146호.

- 2007. 12. 31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조세 특례로 지원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일몰 도래와 함께 특례대상에서 삭제 하였음⁷⁾
 -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은 심각한 과세 불형평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었음
 - 일반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위험자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를 정상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

<표 II -15> 2007. 12. 31.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07. 12. 31. (200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동 제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제외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 - 4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추가 ○ 일몰(2007. 12. 31) 도래로 특례대상 중 5호.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삭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8827호.

- 2010. 1. 1.에는 본 제도의 법률명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하고, 동 제도의 일몰을 2009. 12. 31에서 2012. 12. 31로 연장하였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일몰을 연장하였음
 - 단, 1항 1호는 2009. 12. 31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만 적용함
 - 1항 1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금융업법」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7) 기획재정부,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2008.

<표 II -16> 2010. 1. 1.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10. 1. 1. (201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14조의 법률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 ○ 일몰연장 및 특례대상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2009. 12. 31. → 2012. 12. 31. - 단, 기업구조조정조합은 2007. 12. 31까지 취득하는 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는 2009. 12. 31까지 출자하여 취득하는 분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9921호.

- 2011. 12. 31에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재원 확충 지원을 위하여 동 제도의 특례 대상으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하였음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출자(20% 이상)하여 만든 회사를 말함

- 또한,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특례대상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하였음
 - 특례대상으로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함

<표 II -17> 2011. 12. 31.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11. 12. 31. (201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14조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몰: 2009. 12. 31까지 출자한) 2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호. <삭제> 6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호.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11133호.

- 2013. 1. 1에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속 지원을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2. 12. 31에서 2014. 12. 31로 2년 연장하였음

<표 II -18> 2013. 1. 1.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13. 1. 1. (2013. 1. 1.)	○ 일몰연장 - 일몰연장: 2012. 12. 31. → 2014. 12. 31.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11614호.

- 2013년과 더불어 2014. 12. 23에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지속 지원을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 12. 31에서 2017. 12. 31로 3년 연장하였음

<표 II -19> 2014. 12. 23.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14. 12. 23. (2015. 1. 1.)	○ 일몰연장 - 일몰연장: 2014. 12. 31. → 2017. 12. 31. - 일몰기한은 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기한과 동일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12853호.

- 2016. 12. 30에는 창업기획자 지원을 통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동 제도(개인이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특례대상으로 중소기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 회사와 더불어 창업기획자를 추가하였음

<표 II -20> 2016. 12. 20.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16. 12. 20. (2017. 1. 1.)	○ 기존의 삭제되었던 5호에 창업기획자를 특례대상으로 추가함 5호.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14390호.

- 2017. 12. 19에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속 지원을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 12. 31에서 2020. 12. 31로 3년 연장하였음

<표 II -21> 2017. 12. 19.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17. 12. 19. (2018. 1. 1.)	○ 일몰연장 - 일몰연장: 2017. 12. 31. → 2020. 12. 31.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15227호.

- 2019. 12. 31에는 동 제도의 특례대상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확대하였음
 - 동 제도의 특례대상 8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 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추가

<표 II -22> 2019. 12. 31. 법 개정 내용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19. 12. 31. (2020. 1. 1.)	○ 특례대상 추가 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10 ¹⁾ 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규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한 특례 규정임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16835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1998. 12. 28.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제도 연혁은 다음과 같음

<표 II -2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요 제도연혁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1998. 12. 28. (1999. 1. 1.)	○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특례제한법」(전면 개정) ○ 특례대상 확대 4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2000. 1. 1.)	○ 특례대상 확대 5호.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29. (2002. 1. 1.)	○ 특례대상 확대 6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7. 13. (2005. 7. 13.)	○ 특례대상 확대 2-2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용어 개정, 대상 확대) 7호.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2006. 12. 30. (2007. 1. 1.)	○ 일몰기한 설정 - 일몰기한: 2009. 12. 31. - 다만,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 기업 출자주식의 경우, 2007. 12. 31로 함
2007. 12. 31 (2008. 1. 1.)	○ 일몰(2007. 12. 31) 도래로 특례대상 중 5호.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삭제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 정 내 용
2010. 1. 1. (2010. 1. 1.)	○ 법 §14조의 법률명 변경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 ○ 일몰연장 - 일몰연장: 2009. 12. 31. → 2012. 12. 31.
2011. 12. 31 (2012. 1. 1.)	○ 특례대상 확대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용어 개정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013. 1. 1. (2013. 1. 1.)	○ 일몰연장 - 일몰연장: 2012.12.31. → 2014.12.31.
2014. 12. 23. (2015. 1. 1.)	○ 일몰연장 - 일몰연장: 2014.12.31. → 2017.12.31.
2016. 12. 20. (2017. 1. 1.)	○ 특례대상 확대 5호.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17. 12. 19. (2018. 1. 1.)	○ 일몰연장 - 일몰연장: 2017.12.31. → 2020.12.31.
2019. 12. 31 (2020. 1. 1.)	○ 특례대상 확대 8호.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출자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0. 1. 1. 이전)

3. 제도 현황

가. 벤처투자 시장동향⁸⁾

- 2020년 1분기 현재 기준으로 벤처투자시장에 20개 조합이 5,048억 규모로 신규 결성되었고, 총 385개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규투자금액은 7,463억원 규모임
 - 회수는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비중이 46.6%로 가장 높으며, IPO를 통한 비중은 34.0%를 차지하고 있음

8)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 5.

<표 II -24> 벤처투자 시장 동향(2019~2020 상반기)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조합	투자	회수	조합		투자		회수	
1월	1,975	2,618	797	1,809	(-8.4)	2,463	(-5.9)	948	(-47.6)
2월	2,117	1,933	727	549	(-74.1)	2,202	(13.9)	655	(19.3)
3월	2,321	3,237	1,102	2,690	(15.9)	2,799	(-13.5)	889	(-67.0)
4월	1,095	3,859	1,223	-		-		-	
5월	3,432	3,938	1,078	-		-		-	
6월	2,495	4,357	1,507	-		-		-	
7월	7,603	3,920	1,165	-		-		-	
8월	1,234	4,144	967	-		-		-	
9월	2,450	3,182	813	-		-		-	
10월	2,771	3,727	1,068	-		-		-	
11월	4,590	2,744	1,085	-		-		-	
12월	10,112	5,117	1,890	-		-		-	
계	42,196	42,777	13,421	5,048		7,463		2,492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5.

[그림 II -1] 벤처투자 자원(결성금액 및 조합 수) 현황

(단위: 억원, 개)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 5.

- 2020년 3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은 민간출자 72.2%, 정책금융 27.8%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자자 비중은 연금·공제회(18.8%), 모태펀드(17.8%), 일반법인(15.3%) 순이었으며 개인은 8.9%를 차지함
 - 개인의 출자 비중은 2019년에 전년(6.2%) 대비 7.5%p 상승하였음
 - 정책금융의 출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민간출자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표 II -25〉 연도별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3	2020. 3
정책 금융	모태펀드	23.2	23.8	25.2	19.3	20.4	27	17.8
	산업은행	4.3	5.8	5.2	3.7	0.4	-	-
	성장금융	8.5	3.8	3.5	6	6.5	2.7	6.2
	기타 정책기관	6.6	6.3	5.7	5.5	5.9	1.3	3.8
	소계	42.5	39.7	39.6	34.5	33.2	31	27.8
민간 출자	금융기관(산은제외)	17.2	15.2	13.7	21.6	12.6	8.7	6.1
	연금·공제회	4.4	8.9	9.5	13.2	6.5	-	18.8
	VC	12.4	13.4	11.6	10	10.7	8.6	12.4
	일반법인	13.6	15.4	11.5	9.5	12.3	25.2	15.3
	기타단체	1.2	3.4	5.7	4.9	6.9	1.6	10.3
	개인	6.9	3	7.3	6.2	13.7	24.3	8.9
	외국인	1.7	0.9	1	0.2	4.2	0.5	0.3
	소계	57.5	60.3	60.4	65.5	66.8	69	72.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 5.

- 2020년 상반기 전체 신규투자 금액은 7,463억원으로 전년 동기(7,789억원) 대비 4.2% 감소하였고, 투자 업체 수는 385개사로 전년 동기(418개사) 대비 7.9% 감소했음
 - 신규 투자 금액과 투자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9년 신규투자 금액은 4조 2,777억원, 투자 기업 수는 1,698개사로, 이는 전년 (3조 4,249억원, 1,399개사) 대비 각각 8,528억원(24.9%), 209개사(14.9%) 증가한 것임

[그림 II -2] 연도별 신규투자 규모

(단위: 억원, 개사)



주: 신규투자금액은 왼쪽(억원), 투자 기업 수는 오른쪽(개사) 축에 표시되어 있음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 5.

- 연도별 투자 잔액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 3월 기준으로 4,715개 업체에 12조 4,301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음
 - 2019년 투자 잔액은 12조 1,036억원으로 전년(9조 5,000억원) 대비 27.4% 증가한 수치임
 - 2020년 상반기 투자 잔액은 12조 4,301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 6,706억원) 대비 2조 7,595억원(28.5%) 증가하였음

[그림 II -3] 연도별 투자 잔액 규모

(단위: 억원,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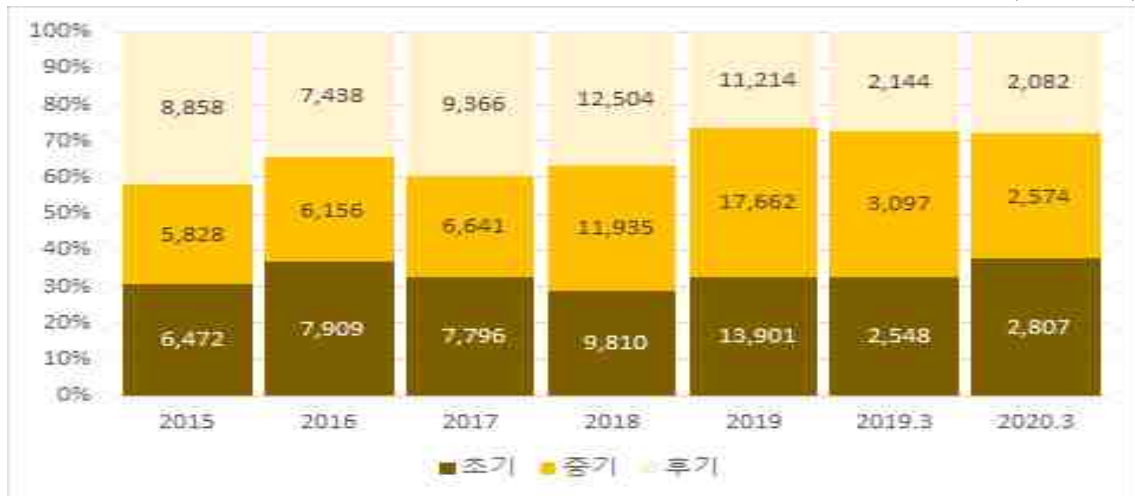


주: 신규투자금액은 왼쪽(억원), 투자 기업 수는 오른쪽(개사) 축에 표시되어 있음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 5.

- 2020년 상반기 신규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업력별 투자비중은 초기기업이 37.6%(2,807억원), 중기기업 34.5%(2,574억원), 후기기업이 27.9%(2,082억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과 비교하여 2019년 업력별 투자비중은 초기 기업은 4.1%p 증가, 중기 기업은 6.5%p 증가, 후기 기업은 10.3%p 감소하였음
 - 2019년에는 초기, 중기, 후기 기업이 각각 32.5%(1조 3,901억원), 41.3%(1조 7,662억원), 26.2%(1조 1,214억원) 비중을 차지함
 - 2018년에는 초기, 중기, 후기 기업이 각각 28.6%(9,810억원), 34.8%(1조 1,935억원), 36.5%(1조 2,504억원) 비중을 차지함

[그림 II -4] 연도·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규모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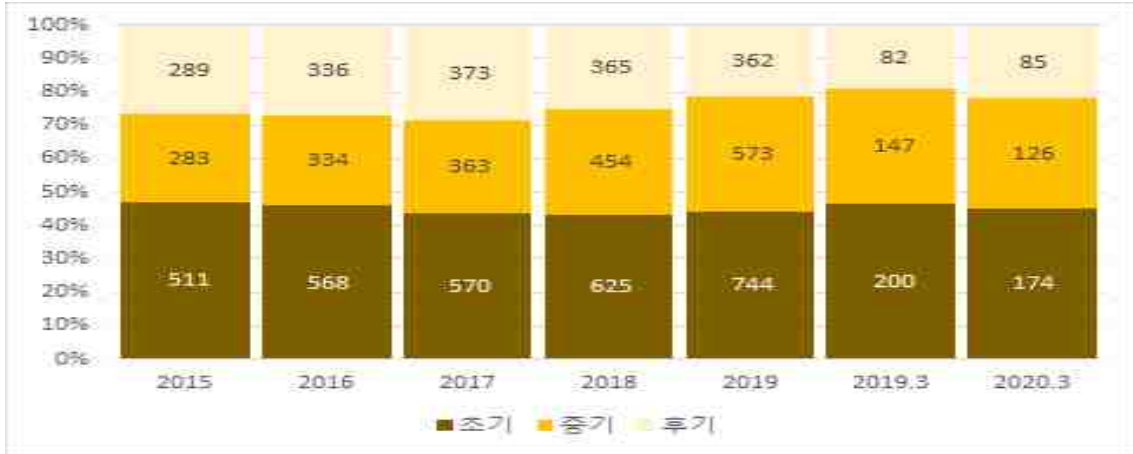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 5.

- 2020년 상반기 신규투자 기업 수를 기준으로 업력별 투자 기업 수 비중은 초기기업이 45.2%(174개사), 중기기업 32.7%(126개사), 후기기업이 22.1%(85개사)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과 비교하여 2019년 업력별 투자 기업 수 비중은 초기 기업은 1%p 증가, 중기 기업은 2.7%p 증가, 후기 기업은 3.7%p 감소하였음
 - 2019년에는 초기, 중기, 후기 기업 수는 각각 44.3%(744개사), 34.1%(573개사), 21.6%(362개사) 비중을 차지함
 - 2018년에는 초기, 중기, 후기 기업이 각각 43.3%(625개사), 31.4%(454개사), 25.3%(365개사) 비중을 차지함

[그림 II -5] 연도·업력별 신규투자 기업 수 규모

(단위: 개사)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 5.

- 2019년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은 2018년과 비교해 ICT서비스,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기타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2019년 신규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ICT서비스 부문에서 2,978억원, 바이오·의료 부문에서 2,616억원,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2,419억원, 기타 부문에서 1,44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단,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비중은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기타 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비중은 전년 대비 ICT서비스 부문에서 2.6%p,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2.3%p, 기타 부문에서 2.2%p 증가하였음

<표 II -26>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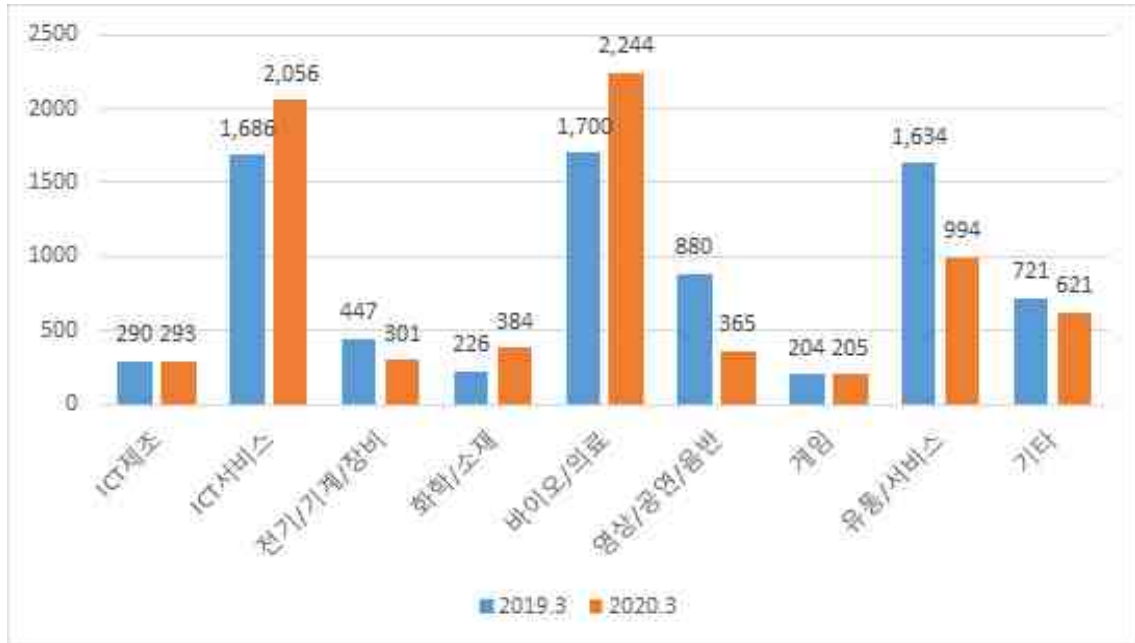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3	2020.3
ICT제조	1,463	959	1,566	1,489	1,493	290	293
ICT서비스	4,019	4,062	5,159	7,468	10,446	1,686	2,056
전기/기계/장비	1,620	2,125	2,407	2,990	2,036	447	301
화학/소재	1,486	1,502	1,270	1,351	1,211	226	384
바이오·의료	3,170	4,686	3,788	8,417	11,033	1,700	2,244
영상/공연/음반	2,706	2,678	2,874	3,321	3,703	880	365
게임	1,683	1,427	1,269	1,411	1,192	204	205
유통/서비스	3,043	2,494	4,187	5,726	8,145	1,634	994
기타	1,668	1,570	1,283	2,077	3,518	721	621
합계	20,858	21,503	23,803	34,249	42,777	7,789	7,463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 5.

- 2020년 3월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ICT서비스, 바이오·의료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영상·공연·음반,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크게 감소하였음
 - ICT서비스 부문의 신규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1,686억원) 대비 370억원 증가함
 - 바이오·의료 부문의 신규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1,700억원) 대비 544억원 증가함
 - 영상·공연·음반 부문의 신규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880억원) 대비 515억원 감소함
 - 유통·서비스 부문의 신규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1,634억원) 대비 640억원 감소함

[그림 II -6]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규모 비교

(단위: 억원)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 5.

- 2019년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은 2018년과 비교해 우선주, 보통주 부문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신규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우선주 부문에서 6,634억원, 보통주 부문에서 1,421억원, 기타 부문에서 75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단,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 비중은 우선주 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비중은 전년 대비 ICT서비스 부문에서 2.6%p,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2.3%p, 기타 부문에서 2.2%p 증가하였음

<표 II -27>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3	2020. 3
보통주	4,226	4,437	5,458	5,958	7,379	1,169	1,166
우선주	8,786	10,398	10,529	18,794	25,428	4,763	4,257
CB/BW	3,272	2,823	2,881	3,553	2,746	602	490
프로젝트	2,471	2,427	2,749	2,517	3,041	754	461
기타	2,103	1,418	2,186	3,427	4,182	501	1,089
합계	20,858	21,503	23,803	34,249	42,777	7,789	7,463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 5.

나. 벤처 및 엔젤투자 현황⁹⁾

- 2019년 벤처투자 규모는 4조 2,777억원으로 2018년(3조 4,249억원) 대비 25% 증가하며 역대 최초로 4조원을 뛰어넘었으며, 2018년 엔젤투자 규모도 5,538억원을 기록하며 제1벤처붐 시절의 엔젤투자액(2000년, 5,493억원)을 돌파함
 - 벤처투자 규모는 2017년 2조 3,803억원, 2018년 3조 4,249억원, 2019년 4조 2,777억원으로 매년 급격한 성장 추세임
 - 엔젤투자 규모도 2016년 2,586억원, 2017년 3,235억원, 2018년 5,538억원으로 증가 추세임
 - 단, 엔젤투자는 투자 이후 3년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점을 볼 때, 2018년 실적은 2021년 5월 확정될 때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 -7] 벤처투자 및 엔젤투자 현황

(단위: 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9)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표 II -28> 벤처투자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개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투자 금액	20,858	21,503	23,803	34,249	42,777
업체 수	1,045	1,191	1,266	1,399	1,6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 전체 엔젤투자 규모에서 엔젤투자자 개인의 직접 투자 규모는 4,207억원으로 76.0%를 차지하며,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 규모는 1,331억원으로 24.0%를 차지함

- 2017년 대비 2018년 개인 직접 투자 규모는 1,673억원(66.0%) 증가하였으며, 개인투자조합 투자는 630억원(89.9%) 증가하였음
- 엔젤투자는 벤처캐피탈과 달리 개인 투자실적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내 엔젤투자 공식통계는 소득공제 신청자 기준으로 산정됨
 - 단, 엔젤투자는 투자연도로부터 3년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 2018년 기록은 현재 변동 가능함

<표 II -29> 엔젤투자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개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인 직접 투자	금액	876	1,842	2,193	2,534	4,207
	업체수	226	411	441	487	694
개인투자 조합 투자	금액	83	206	393	701	1,331
	업체수	25	44	105	191	367
합계	금액	959	2,048	2,586	3,235	5,538
	업체수	251	455	546	678	1,061

- 주: 1. 엔젤투자는 벤처캐피탈과 달리 개인 투자실적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내 엔젤투자 공식통계는 소득공제 신청자 기준으로 산정함
2. 엔젤투자는 투자연도로부터 3년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 2018년 기록은 변동 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 엔젤투자 규모가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시행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18년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투자액 3,000만~5,0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0%에서 70%로 확대되었음
 - 소득공제 혜택 변화는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나타냄)
 - 1,500만원 이하(100%) → 3,000만원 이하(100%)
 - 1,500만~5,000만원(50%) → 3,000만~5,000만원(70%)
 - 5,000만원 초과(30%) → 5,000만원 초과(30%)
 - 또한, 전문엔젤과 창업기획자 등 전문투자가 그룹이 증가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침
 - 전문엔젤투자자 수 변화: 25명(2015) → 148명(2019)
 - 창업기획자 수 변화: 53개사(2017) → 214개사(2019)

〈표 II -30〉 전문엔젤 투자자 수

(단위: 명)

구분(신규)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문엔젤 투자자 수	25	82	117	127	14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 개인투자조합 결성은 2015년 43개에서 2016년 130개로 크게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문엔젤 투자자도 2015년 25명에서 2019년 148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음
 - 개인투자조합 수: 43개(2015년) → 336개(2019년)으로 681% 증가
 - 개인투자조합 결성금액: 265억원(2015년) → 2,818억원(2019년)으로 963% 증가

〈표 II -31〉 개인투자조합 결성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신규)	2015	2016	2017	2018	2019
조합 수	43	130	174	302	336
결성금액	265	725	911	2,010	2,81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 2019년 벤처투자 규모 4조 2,777억원 중 순수 민간펀드로부터 투자된 금액은 1조 4,768억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펀드 투자 금액 규모가 증가 추세인 것을 볼 때,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벤처붐을 견인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순수 민간펀드로부터 투자된 금액이 연간 벤처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1.4%, 2016년 24.6%, 2017년 32.3%, 2018년 33.8%, 2019년 34.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또한, 개인투자자가 엔젤투자 외에 벤처펀드에 출자해 간접 투자하는 금액도 2018년 2,974억원에서 2019년 5,71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투자자의 간접 투자 금액이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6.2%) 대비 7.7%p 증가한 13.9%로, 벤처펀드에 대한 개인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2018년도 1,399개사에서 2019년 1,608개사로 15% 증가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투자규모도 2018년 24억 4,810만원에서 26억 6,026만원으로 2억원 이상 증가하며 대형화 추세를 보임
 -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68개사로 2018년(51개사)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22개사로 2018년(10개사) 대비 120% 증가하였음

<표 II -32> 100억원 및 200억원 투자규모 이상 유치 기업 수

(단위: 개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00억원 이상	29	20	29	51	68
200억원 이상	5	4	5	10	2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 한편, 업종별 벤처투자 규모는 2018년과 비슷하게 바이오·의료와 ICT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통·서비스가 뒤를 이음
 - 바이오·의료 업종의 벤처기업 투자는 2018년 8,417억원에서 2019년 1조 1,033억원으로 2,616억원(31.1%) 증가하였음
 - ICT 서비스 업종의 벤처기업 투자는 2018년 7,468억원에서 2019년 1조 446억원 규모로 2,978억원(39.9%) 증가하였음

<표 II -33> 업종별 벤처기업 투자 현황(투자 규모 및 비중)

(단위: 억원, %)

연도	ICT 제조	ICT 서비스	전기·기계· 장비	화학· 소재	바이오· 의료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기타	합계
2018	1,489 (4.3)	7,468 (21.8)	2,990 (8.7)	1,351 (3.9)	8,417 (24.6)	4,732 (13.8)	5,726 (16.7)	2,077 (6.1)	34,249
2019	1,493 (3.5)	10,446 (24.4)	2,036 (4.8)	1,211 (2.8)	11,033 (25.8)	4,895 (11.4)	8,145 (19.0)	3,518 (8.2)	42,777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 벤처기업 투자를 받은 업체가 많은 업종은 ICT 서비스(446개사), 유통·서비스(359개사), 바이오·의료(299개사)이며, 이들이 전체 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 -34> 업종별 벤처기업 투자 현황(업체수, 금액, 비중)

(단위: 개사,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ICT 제조	업체수	71	66	96	80	80
	금액	1,463	959	1,566	1,489	1,493
	비중	(7.0)	(4.4)	(6.6)	(4.3)	(3.5)
ICT 서비스	업체수	252	252	283	369	446
	금액	4,019	4,062	5,159	7,468	10,446
	비중	(19.3)	(18.8)	(21.6)	(21.8)	(24.4)
전기/기계/장비	업체수	78	97	121	142	107
	금액	1,620	2,125	2,407	2,990	2,036
	비중	(7.7)	(9.9)	(10.2)	(8.7)	(4.8)
화학/소재	업체수	67	67	54	69	62
	금액	1,486	1,502	1,270	1,351	1,211
	비중	(7.1)	(7.0)	(5.3)	(3.9)	(2.8)
바이오/의료	업체수	114	159	137	236	299
	금액	3,170	4,686	3,788	8,417	11,033
	비중	(15.2)	(21.8)	(16.0)	(24.6)	(25.8)
영상/공연/음반	업체수	205	233	260	202	231
	금액	2,706	2,678	2,874	3,321	3,703
	비중	(13.0)	(12.5)	(12.0)	(9.7)	(8.7)
게임	업체수	123	99	76	68	66
	금액	1,683	1,427	1,269	1,411	1,192
	비중	(8.1)	(6.6)	(5.4)	(4.1)	(2.8)
유통/ 서비스	업체수	144	149	178	256	359
	금액	3,043	2,494	4,187	5,726	8,145
	비중	(14.6)	(11.6)	(17.6)	(16.7)	(19.0)
기타	업체수	54	71	64	100	124
	금액	1,668	1,570	1,283	2,077	3,518
	비중	(8.0)	(7.4)	(5.3)	(6.1)	(8.2)
합계	업체수	1,045	1,191	1,266	1,399	1,608
	금액	20,858	21,503	23,803	34,249	42,77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안은 각 연도의 전체 금액에서 각 업종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벤처투자를 받은 회사 수는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이 774개사(44.3%)로 가장 많았고, 업력 3년 초과~7년 이내의 중기 기업의 투자금액이 1조 7,662억원(41.3%)으로 가장 많았음

〈표 II -35〉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개사,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초기 (3년 이내)	업체수	511	568	570	625	744
	비중	(47.2)	(46.0)	(43.7)	(43.3)	(44.3)
	투자금액	6,472	7,909	7,796	9,810	13,901
	비중	(31.1)	(36.8)	(32.7)	(28.6)	(32.5)
중기 (3 ~ 7년)	업체수	283	334	363	454	573
	비중	(26.1)	(27.0)	(27.8)	(31.4)	(34.1)
	투자금액	5,828	6,156	6,641	11,935	17,662
	비중	(27.9)	(28.7)	(28.0)	(34.8)	(41.3)
후기 (7년 초과)	업체수	289	336	373	365	362
	비중	(26.7)	(27.0)	(28.5)	(25.3)	(21.6)
	투자금액	8,558	7,438	9,366	12,504	11,214
	비중	(41.0)	(34.5)	(39.3)	(36.5)	(26.2)

주: () 안은 전체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 2019년 벤처펀드는 4조 1,105억원이 결성됐으며, 2018년 4조 8,208억원과 비교하면 14.7% 감소했지만, 여전히 4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10월까지의 결성액이 전년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감소한 것은 민간 금융기관, 연기금 등 기관출자자의 펀드참여가 2018년 대비 9,289억원 감소하면서 11~12월 두달간의 결성액이 2018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임

〈표 II -36〉 2018, 2019년 벤처펀드 결성액 비교

(단위: 억원)

벤처펀드 결성	1~10월	11월	12월
2019년(A)	2조 7,483억원	4,590억원	9,031억원
2018년(B)	2조 6,980억원	7,438억원	1조 3,790억원
증감(A-B)	503억원	-2,848억원	-4,759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 출자자별로는 정책금융 중에는 모태벤처펀드 규모가 8,590억원(20.9%)으로 가장 크고, 민간출자 중에는 개인투자자 규모가 5,710억원(13.9%)로 가장 큼
 - 특히, 개인투자자의 벤처펀드 규모가 전년(2,974억원, 6.2%) 대비 크게 증가함
 - 2015년 이후 정책금융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민간출자 금융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 -37〉 출자자별 벤처펀드 금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조합수)		2015 (108)	2016 (120)	2017 (164)	2018 (146)	2019 (170)
정책 금융	모태	6,075 (23.2)	9,110 (23.8)	11,569 (25.2)	9,357 (19.4)	8,590 (20.9)
	산업은행	1,121 (4.3)	2,220 (5.8)	2,372 (5.2)	1,770 (3.7)	159 (.4)
	성장금융	2,215 (8.5)	1,450 (3.8)	1,610 (3.5)	2,905 (6.0)	2,657 (6.5)
	기타 정책기관	1,736 (6.6)	2,415 (6.3)	2,626 (5.7)	2,671 (5.5)	2,286 (5.6)
	소계	11,147 (42.5)	15,195 (39.7)	18,177 (39.6)	16,703 (34.6)	13,692 (33.3)
민간 출자	금융기관(산은 제외)	4,514 (17.3)	5,815 (15.1)	6,271 (13.7)	10,227 (21.2)	5,328 (12.9)
	연금/공제회	1,155 (4.4)	3,420 (8.9)	4,380 (9.5)	6,380 (13.2)	1,990 (4.8)
	VC	3,247 (12.4)	5,140 (13.4)	5,336 (11.6)	4,806 (10.0)	4,526 (11.0)
	일반법인	3,557 (13.6)	5,899 (15.4)	5,324 (11.6)	4,659 (9.7)	5,185 (12.6)
	기타단체	326 (1.2)	1,300 (3.4)	2,632 (5.7)	2,376 (4.9)	2,895 (7.0)
	개인	1,805 (6.8)	1,179 (3.1)	3,350 (7.3)	2,974 (6.2)	5,710 (13.9)
	외국인	456 (1.7)	351 (0.9)	462 (1.0)	84 (0.2)	1,778 (4.3)
	소계	15,058 (57.5)	23,104 (60.3)	27,755 (60.4)	31,505 (65.4)	27,413 (66.7)
계	26,205 (100.0)	38,299 (100.0)	45,932 (100.0)	48,208 (100.0)	41,105 (10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자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다. 창업기획자 등록 현황¹⁰⁾¹¹⁾

-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을 말함
 - 창업기획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근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름
 -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을 말함

- 창업기획자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 등
 - 전문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자와의 제휴, 초기창업자 홍보,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 초기창업자의 해외 진출 등
 - 창업지도 및 교육, 초기사업비 제공, 경영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제품 판로 및 마케팅, 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 타 창업자 및 창업기획자 등과의 연계 활동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 창업기획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이 때 ① 법인요건 ② 인력구성 및 임원 요건 ③ 사업계획 및 시설 기준 요건 등을 만족하여야 함
 - ① 법인 요건으로,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상법」에 따른 회사로 납입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1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 2020. 3.

1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등록현황,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30453&sid=388&itemSeq=296945&bizCategoryCode=>, 검색일자: 2020. 6. 11

-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초기 창업자와 관련한 사업의 출연(출자)재산¹²⁾이 5천만원 이상,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은 1천만원 이상일 것

② 인력구성 및 임원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¹³⁾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중소벤처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벤처기업법」에 따른 전문엔젤투자자
 - 「벤처기업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근무 당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회사의 임원으로서 해당 회사를 기업공개하거나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는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박사학위(이공·경상계열) 소지자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자
 -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적이 있거나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자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12)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회계를 수입과 지출이 다른 계와 구분경리하고, 출연(출자)재산의 경우 재산목록·출연(출자)재산 증명서와 액셀러레이터 목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이용 약약서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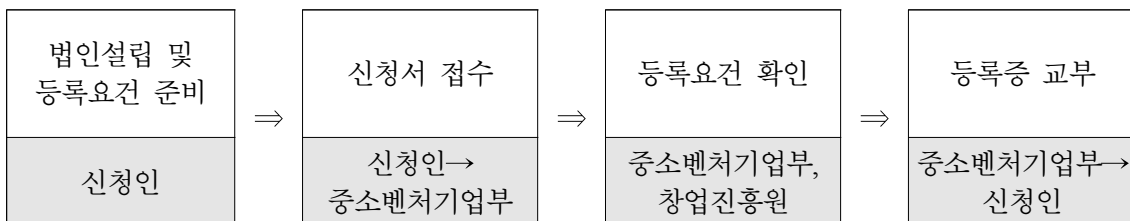
13) 4대 사회보험 중 사업장 이첩으로 가입된 보험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제외)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 제외)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다만,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사업계획 및 시설 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서는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 등을 위한 사업계획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시설 기준은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보육공간, 시제품제작 지원장비가 있을 것

□ 한편, 창업기획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음



자료: 중소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 2020. 3.

- 창업기획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 투자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함
 - 창업기획자는 다음의 내용을 정해진 시기에 따라 공시해야 함
 - 조직, 인력, 재무, 경영지표, 조합결성 및 운영현황: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사항: 매월 말일까지
 - 주요경영사항, 조합결정 및 해산, 언론보도 해명 등: 자율적으로 공시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 5. 1. 현재 기준으로 창업기획자 누적 등록현황은 전국적으로 총 242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65.7%인 159개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34.2%인 81개사는 비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창업기획자는 서울(128개사, 52.9%)에 과반수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 경기(22개사, 9.1%), 대전(19개사, 7.9%)순으로 등록됨

<표 II -38>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지역별 등록현황

(단위: 개사, %)

구분	기업	비율	
서울	128	52.8	65.7
경기	22	9	
인천	9	3.7	
부산	14	5.8	34.3
대구	8	3.3	
대전	19	7.9	
광주	5	2.1	
세종	2	0.8	
전북	4	1.7	
전남	1	0.4	
충북	3	1.2	
충남	6	2.5	
경북	6	2.5	
경남	4	1.7	
울산	4	1.7	
강원	2	1.7	
제주	3	1.2	
합계	242	100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등록현황,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30453&sid=388&itemSeq=296945&bizCategoryCode=>, 검색일자: 2020. 6. 11.

- 유형별로는 주식회사가 170개사(7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비영리법인 35개사(14.5%), 창투자 15개사(6.3%), 기술지주회사 13개사(5.4%)로 이들 유형이 창업기획자의 9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 또한, 이들 중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운영사는 45개사로 18.6% 비중임
 - TIPS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사가 발굴한 기업에 투자를 실시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와 함께 최대 5억원까지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표 II -3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유형별 등록현황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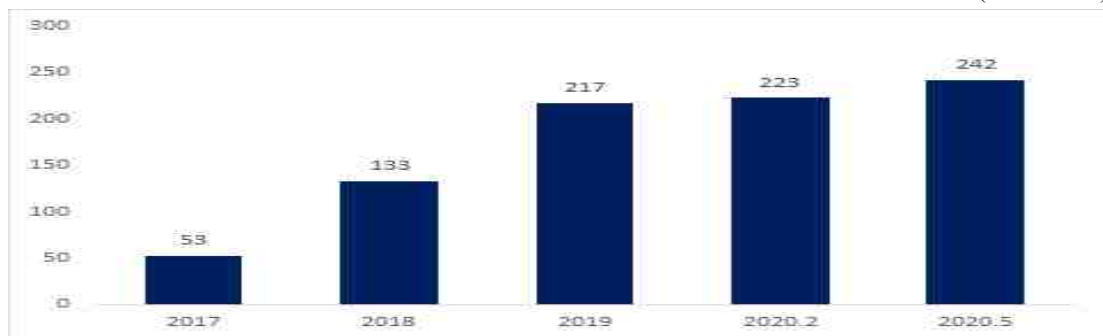
항목	유형구분							전체	TIPS 운영사
	주식 회사	비영리 법인	창투자	기술 지주회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LLC		
기업	170	35	15	13	2	2	5	242	45
비율	70.2	14.5	6.3	5.4	0.8	0.8	2.1	100	18.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등록현황,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30453&sid=388&itemSeq=296945&bizCategoryCode=>, 검색일자: 2020. 6. 11.

- 한편, 창업기획자는 2017년 53개사에서 2018년 133개사(전년 대비 150.9% 증가), 2019년 217개사(전년 대비 63.2%)로 증가하였고, 현재도 증가하는 추세임¹⁴⁾
- 창업기획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벤처투자시장에도 질적 분화가 이뤄지고 있음
- 특히, 2020년 8월 시행되는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을 허용 및 대규모 벤처펀드가 결성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서 질적 분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림 II -8]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누적 등록현황

(단위: 개사)



자료: etnews.com, 「이슈분석, 좀 더 작고 깊게, 크고 넓게...벤처투자시장 질적 분화 개시」, <https://www.etnews.com/20200310000191>, 발행일자: 2020. 3. 1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등록현황,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30453&sid=388&itemSeq=296945&bizCategoryCode=>, 검색일자: 2020. 6. 11.

14) etnews.com, <https://www.etnews.com/20200310000191>, 발행일자: 2020. 3. 10.

라. 창투사(조합) 또는 신기사(조합) 현황¹⁵⁾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회사 이하, 창투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여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함

- 창투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창업자(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
 -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경영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 창투사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음
 -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함¹⁶⁾
 - 납입자본금은 현금에 한하고, 차입금으로 조성한 자본금의 비중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으로 조달하거나 조달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금은 납입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상근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함¹⁷⁾¹⁸⁾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 상장법인 설립자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 경영·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경상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금융기관 및 창투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에서 투자심사(대출 심사는 제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5) 여신금융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현황 및 투자실적」, 2020. 2.

1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리규정 제4조 제3항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7항 제1호

18) 상근 여부는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등 4대 보험 중 하나로 확인

-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등에서의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투자와 관련된 업무(관리업무) 경력자
- 창업제외업종을 제외한 회사 또는 연구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일정 기준의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을 것¹⁹⁾
- 대표이사과 임원(등기임원 전원)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²⁰⁾
 - 3개월 이상 약정기일이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대표이사만 해당)
 -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대표이사만 해당)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대표이사, 감사, 등록취소의 원인행위를 지시한 자)인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문책 요구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로부터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주주가 아래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출 것²¹⁾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금융관련 법,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7항 제2호, 관리규정 제4조 제4항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2항 제2호

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2항 제2의2호, 시행령 제9조 제6항

-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²²⁾
 - 창투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할 것(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 창투사의 어느 주주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닐 것²³⁾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 혜택이 주어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이 2020. 12. 31까지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1과세연도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창투사·창투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내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기업여신전문금융 중 신기술사업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자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또는 융자해주는 금융회사를 말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및 운용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함

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관리규정 제4조 제5항

23)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 또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용자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총리령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용자순증액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는 2019년 149개사로 2018년(133개사) 대비 16개사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2개의 신규 창투사가 등록하고 2개의 창투사가 말소되어 동일한 창투사 개수를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10월 창투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림 II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현황(2016~2020 상반기)

(단위: 개사)



주: 2020년 상반기 2개의 창투사(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 아스텍투자파트너스)가 신규 등록하고, 2개의 창투사(골든헬릭스, 칼리스타캐피탈)가 말소되었음

자료: 벤처투자정보센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0. 1분기

-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 등록 회사 수는 113개사로 2018년 대비 9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58개로 2018년 대비 7개사가 증가하였음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51개사에서 58개사로 7개사 증가하였고, 겸업여성전문금융회사는 신규 등록 1개사, 등록 말소 1개사로 총 34개사를 유지하였으며, 겸업금융투자업자가 19개사에서 21개사로 2개사 증가하였음

[그림 II -10]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영위 현황(2008~2019)

(단위: 개사)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현황 및 투자실적」, 2020. 2.

- 2019년 창업투자(창투사, 창투조합, KVF) 신규 투자액은 4조 2,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8,528억원(24.9%) 증가하였으며, 투자잔액은 12조 1,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036억원 증가하였음

<표 II -40>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 투자실적

(단위: 개사, 억원, %)

구분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사자본금+신기술조합)			창업투자 (창투사+창투조합+KVF)				
	2018년	2019년	증감	2018년	2019년	증감		
신규	투자업체 수	1,305	1,468	163 (12.5)	1,399	1,608	209 (14.9)	
	투자	회사분	2,855	3,437	582 (20.4)	469	415	-54 (-11.5)
		조합분	22,077	29,064	6,987 (31.7)	33,780	42,362	8,582 (25.4)
		계	24,932	32,501	7,569 (30.4)	34,249	42,777	8,528 (24.9)
운영	투자업체 수	2,399	3,026	627 (26.1)	4,136	4,657	521 (12.6)	
	투자	회사분	6,357	8,406	2,049 (32.2)	2,319	2,481	162 (7.0)
		조합분	43,242	62,446	19,204 (44.4)	92,681	118,555	25,874 (27.9)
		계	49,599	70,852	21,253 (42.9)	95,000	121,036	26,036 (27.4)

주: () 안은 증감률임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현황 및 투자실적」, 2020. 2.

- 2019년 신기사(신기사, 신기술조합)의 신규 투자액은 3조 2,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7,569억원(30.4%) 증가하였으며, 투자잔액은 7조 85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252억원(42.9%) 증가하였음
 - 투자실적 증가 주요인으로 ① 진입요건 완화에 따른 신기사 증가 ② 제2차벤처법 확산에 따른 기대심리 확대가 있음

- 이 중 2019년 창업투자회사조합(창업투자조합, KVF)의 결성금액은 4조 1,10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7,103억원(14.7%) 감소하였으며, 운용 중인 창업투자회사조합 규모는 27조 3,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1,317억원(12.9%) 증가하였음
 - 운용 중인 창업투자회사조합 수는 804개사에서 920개사로 116개사(14.4%) 증가하였으며, 조합 수 증가에 따라 조합당 결성금액은 301억원에서 297억원으로 4억원(1.3%) 감소하였음

<표 II -41> 신기술투자조합 및 창업투자조합 투자실적

(단위: 개사, 억원, %)

구분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조합)			창업투자 (창투조합+KVF)		
		2018년	2019년	증감	2018년	2019년	증감
신규	조합수	285	384	99 (34.7)	146	170	24 (16.4)
	결성금액	27,379	36,285	8,906 (32.5)	48,208	41,105	-7,103 (-14.7)
	조합당 결성금액	96	94	-2 (-1.6)	330	242	-88 (-26.7)
잔액	조합수	523	799	276 (52.8)	804	920	116 (14.4)
	결성금액	78,847	109,156	30,309 (38.4)	242,041	273,358	31,317 (12.9)
	조합당 결성금액	151	137	-14 (-9.4)	301	297	-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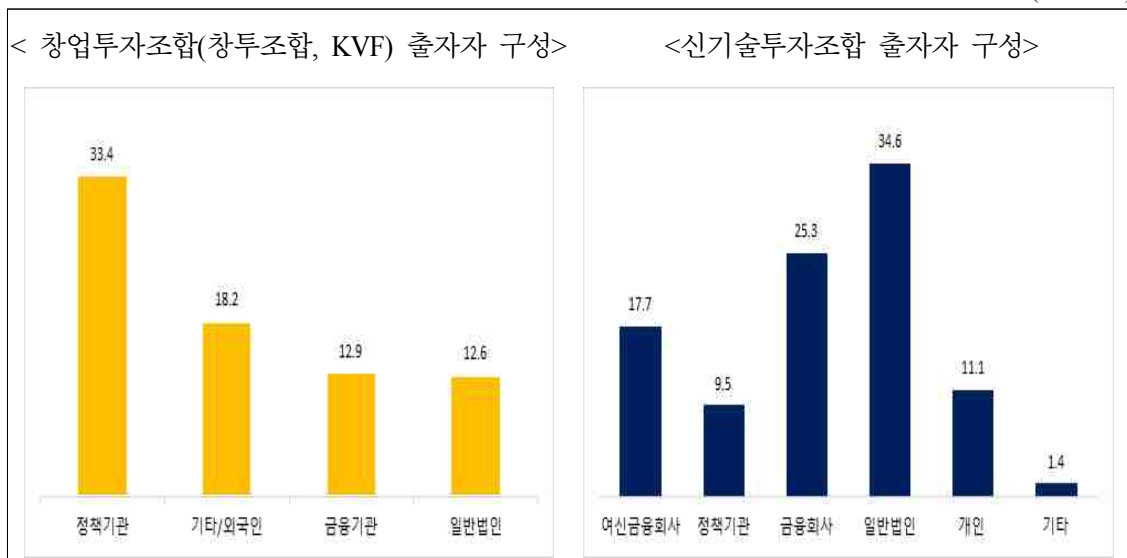
주: () 안은 증감률임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현황 및 투자실적」, 2020. 2.

- 2019년 신규 신기술투자조합 결성금액은 3조 6,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8,906억원 (32.5%) 증가하였으며, 운용 중인 신기술투자조합 규모는 10조 9,156억원으로 전년 (7조 8,847억원) 대비 3조 309억원(38.4%) 증가하였음
 - 운영 중인 조합 수는 799개사로 전년 대비 276개사(52.8%) 증가했으며, 조합 결성금액은 10조 9,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309억원(38.4%) 증가하였으나, 조합 수 증가에 따라 조합 당 결성금액은 151억(2018년)에서 137억원(2019년)으로 14억(9.4%) 감소하였음
- 2019년 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 KVF)의 신규조합을 기준으로 출자자가 정책기관 33.4%, 기타/외국인 18.2%, 금융기관 12.9%, 일반법인 12.6%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9년 신기사가 운용중인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비중은 일반 법인이 34.6%로 가장 높고, 금융회사가 25.3%, 여신금융회사 17.7%순임

[그림 II -11] 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 구성(2019)

(단위: %)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현황 및 투자실적」, 2020. 2.

- 창투사의 업종별 투자 비중은 바이오·의료(25.8%), ICT서비스(24.4%), 유통·서비스(19.0%)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이들 분야의 투자 비중은 전년 대비 1.2~2.6% 증가하였음

- 다만, ICT제조,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영상·공연·음반, 게임 업종 부문의 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신기사의 업종별 투자비중은 바이오·의료(23.7%), ICT서비스(16.5%), ICT제조(13.5%), 기타(12.9%)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신기술금융업권은 창투업권 대비 신기술사업과 연계된 제조 업종에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ICT제조, 바이오·의료, 영상·공연·음반, 유통·서비스, 기타 업종 부문의 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 -42〉 신기술금융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단위: %, %p)

구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8년	2019년	증감률
ICT제조	14.5	13.5	-1.0	4.3	3.5	-0.8
ICT서비스	14.0	16.5	2.5	21.8	24.4	2.6
전기·기계·장비	13.4	15.0	1.6	8.7	4.8	-3.9
화학·소재	4.1	4.9	0.8	3.9	2.8	-1.1
바이오·의료	24.4	23.7	-0.7	24.6	25.8	1.2
영상·공연·음반	3.0	2.6	-0.4	9.7	8.7	-1.0
게임	1.3	1.8	0.5	4.1	2.8	-1.3
유통·서비스	11.0	9.1	-1.9	16.7	19.0	2.3
기타	14.3	12.9	-1.4	6.1	8.2	2.1
합계	100.0	100	-	100.0	100.0	-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현황 및 투자실적」, 2020. 2.

- 창투사의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은 중기 기업(3~7년) 41.3%, 초기기업(~3년) 32.5%, 후기기업(7년~) 26.2% 순이었으며, 전년 대비 후기기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10.3%p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초기기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3.9%p, 중기기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6.5%p 증가하였음

- 신기사의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은 후기기업 55.8%, 중기기업 25.1%, 초기기업 19.1% 순이었으며, 전년 대비 초기기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5.1%p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중기기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2.9%p, 후기기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2.2%p 증가하였음

<표 II -43> 신기술투자조합 및 창업투자조합 업력별 투자 비중

(단위: %, %p)

구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8년	2019년	증감률
초기기업(~3년)	24.2	19.1	-5.1	28.6	32.5	3.9
중기기업(3년~7년)	22.2	25.1	2.9	34.8	41.3	6.5
후기기업(7년~)	53.6	55.8	2.2	36.5	26.2	-10.3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현황 및 투자실적」, 2020. 2.

마. 농식품투자조합²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은 모펀드인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출자금과 민간자금이 합쳐져 결성되는 펀드로, 경영체에 대한 투자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임
 - 투자조합은 사업성 및 시장성이 우수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함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재정이나 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성되며, 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이는 농림수산식품분야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육성을 위한 투자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성장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2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 2.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농식품투자조합 신규 결성 금액은 약정액 기준으로 1조 1,731억원으로 투자금액은 8,021억원 이 중 회수금액은 2,2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9년 신규 결성금액은 전년(875억원) 대비 52.1% 증가한 1,331억원이 신규로 결성되었으나, 전년 대비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은 각각 △11.2%, △68.2% 감소

<표 II -44> 농식품투자조합 투자·회수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신규 결성금액 (약정액 기준)	투자금액	회수금액 ¹⁾
2010	1,170	-	-
2011	1,130	159.9	5.5
2012	1,000	472.7	10.0
2013	900	759.9	120.0
2014	1,290	1,242.8	177.3
2015	1,210	867.1	311.4
2016	1,655	986.2	314.4
2017	1,170	1063.3	434.1
2018	875	1307.7	655.4
2019	1330.5	1,161.0	208.1
합계	11,730.5	8,020.6	2,236.2

주: 1) 회수금액의 경우, 회수완료된 투자건에 한함(회수중인 투자건은 제외)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

바. 프리보드 시장의 벤처기업 투자²⁵⁾²⁶⁾

- K-OTC 시장이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을 말하며, Korea Over The Counter의 약칭임

25) K-OTC 홈페이지, <http://www.k-otc.or.kr/>, 검색일자: 2020. 6. 11.

26)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2020. 1. 8.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주식거래 인프라 완비를 통하여 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하여 K-OTC 시장이 출범하였음
 - 기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프리보드를 운영했으나, 주식 거래 대상기업이 소수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되어 시장의 역할이 크게 저하되다가 2013년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졌음
 - 이에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에 중점을 두던 시장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場)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장개편을 추진하였음

□ K-OTC 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비상장 대기업·중견기업 주식이 새롭게 시장에 편입됨
 -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 대기업·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의 발행주식이 K-OTC 시장에서 거래됨 (비신청 지정제도를 도입함)
-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함
 -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 투자의 편의성 및 결제안정성을 제공함
 - 투자자는 K-OTC 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매체결 시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짐
-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됨
 - 규제가 최소화된 장외시장이므로, 투자자는 기업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하여야 함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임

- 20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K-OTC 시장의 법인 수는 전년대비 9개사 증가한 총 135개사이며, 종목 수는 137개, 발행주식 수는 35억 686만 8천주 규모임

<표 II -45> K-OTC 시장 기업현황

(단위: 개사, 개, 천주,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109
법인 수	117	128	138	119	126	135
종목 수	125	133	140	121	128	137
발행주식 수	2,146,046	3,040,103	3,356,253	3,095,460	3,060,495	3,506,868
자본금	4,196,089	4,210,562	4,548,914	3,882,927	4,222,644	4,644,916
시가총액	12,711,992	11,114,867	10,659,152	14,153,779	14,491,446	14,271,262

주: 1. K-OTC 시장이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을 말하며, Korea Over-The-Counter의 약칭

2. 종목 수는 우선주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2019년 K-OTC 시장 동향 분석」, 2020. 1. 8.

□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혜택 및 비보존 등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로 2019년 프리포드 시장에서 거래규모가 급증하였음

- 연간 거래대금은 전년(6,755억 6백만원) 대비 3,148억 6천만원 증가하여 9,903억 6,600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일평균거래대금은 12억 5,800만원(45.4%) 증가한 40억 2,600만원을 기록하였음
-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대상기업은 벤처기업(2005.7)에서 중소·중견기업(2018. 1)로 확대되었음
- 소액주주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초 0.5%에서 0.3%(2017.4), 다시 0.25%(2019. 6)로 인하되었음

<표 II -46> K-OTC 시장 거래규모

(단위: 천주,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109	
거래량	일평균	479	555	1,114	931	645	649
	연 간	41,223	137,736	273,973	226,156	157,281	159,549
	(누적)	41,223	178,959	452,933	679,088	836,370	995,919
거래대금	일평균	2,389	896	647	1,085	2,768	4,026
	연 간	205,425	222,284	159,060	263,666	675,506	990,366
	(누적)	205,425	427,709	586,768	850,434	1,525,940	2,516,306

주: 1. K-OTC 시장이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을 말하며, Korea Over-The-Counter의 약칭

2. 2014년은 K-OTC 시장 출범일(2014. 8. 25) 이후의 기록임

자료: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2019년 K-OTC 시장 동향 분석」, 2020. 1. 8.

-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 확대 이후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히 형성되었는데, 이는 전체 거래대금의 94.9%인 9,904억원 규모임
- 중소·벤처기업이 8,016억원 규모로 거래되어 전체 거래대금의 80.9%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1,387억원 규모로 전체 거래대금의 14.0% 비중을 차지함

<표 II -47> 기업규모별 기업수 및 거래대금(2019)

(단위: 개, %, 억원)

구분	전체	중소·중견기업						비해당		미확인	
		전체		중소·벤처		중견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기업 수	135	82	(60.7)	72	(53.3)	10	(7.4)	27	(20.0)	26	(19.3)
거래 대금	9,904	9,403	(94.9)	8,016	(80.9)	1,387	(14.0)	409	(4.1)	91	(0.9)

주: 1. K-OTC 시장이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을 말하며, Korea Over-The-Counter의 약칭

2.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되었음

3. 중견기업은 2018년말 기준 추정치가 사용되었음

자료: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2019년 K-OTC 시장 동향 분석」, 2020. 1. 8.

<표 II -48> 연도별 K-OTC 기업 수 현황

(단위: 개사)

	2014	2015	2016	2017	2018	2109
거래 기업수	117	128	138	119	126	135
신규 기업수	71	30	16	6	18	16
등록	1	2	4	3	4	1
지정	70	28	12	3	14	15
동의지정	1	-	1	1	6	4
임의지정	69	28	11	2	8	11

주: 1. K-OTC 시장이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을 말하며, Korea Over-The-Counter의 약칭

2. 2014년은 K-OTC 시장 출범일(2014. 8. 25) 이후의 기록임

자료: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2019년 K-OTC 시장 동향 분석」, 2020. 1. 8.

- 2019년말을 기준으로 K-OTC 시장 기업 수는 전년 대비 9개사가 증가한 총 135개사이며, 이 중 등록기업은 30개사, 지정기업은 105개사로 나타남
 - 2019년 총 16개사가 K-OTC 시장에 편입되었으며, 이 중 등록기업은 1개사, 지정기업은 15개사로 나타남
 - K-OTC 시장에서 법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등록기업: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한 기업
 - 지정기업: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비신청 지정)
 - 임의지정: 기업이 지정기업 요건 및 모집·매출실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회가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
 - 동의지정: 모집·매출실적 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 시장 지정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협회가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

사. 크라우드 펀딩 현황²⁷⁾

- 크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투자방법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본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됨
 - 2019. 12. 31에 동 제도의 특례대상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확대하였음

〈표 II -49〉 크라우드 펀딩 연도별 성공실적

(단위: 건, 원)

연도	펀딩시도			펀딩성공	
	건수	모집가액	청약금액	건수	성공금액
2016년	251	35,820,496,182	19,384,137,167	115	17,445,743,956
2017년	295	43,013,687,167	30,846,851,744	183	27,960,849,742
2018년	287	43,475,372,607	32,731,741,806	185	30,302,964,467
2019년	321	49,094,810,003	44,083,873,921	199	37,009,710,527
2020년	103	12,475,722,222	12,371,643,062	68	10,859,781,651
합계	1,257	183,880,088,181	139,418,247,700	750	123,579,050,343

주: 1. 주식 및 채권의 경우를 말함

2. 성공금액이란, 발행금액(발행완료 펀딩건)과 청약금액(발행미완료 펀딩건)을 합한 금액을 말함. 단,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완료 후 증권 발행기간까지의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펀딩의 성공금액은 청약금이 포함됨

자료: 크라우드넷, 펀딩성공현황, https://www.crowdnet.or.kr/statistics/success_outline.jsp, 검색일자: 2020. 6. 10.

27) 크라우드넷, <https://www.crowdnet.or.kr/index.jsp>, 검색일자: 2020. 6. 10.

□ 2016~2020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펀딩시도 건수는 총 1,257건으로 모집가액은 1,839억원이며, 이 중 펀딩을 성공한 건수는 750건, 펀딩성공금액은 1,236억원임

□ 업종별 클라우드 펀딩 성공금액 규모는 제조업(33.6%), 정보통신업(27.9%), 도매 및 소매업(13.8%) 순이었으며, 펀딩 성공건수도 제조업(32.8%), 정보통신업(28.5%), 도매 및 소매업(14.4%) 순임

<표 II -50> 클라우드 펀딩 업종별 성공 현황

(단위: 건, 원)

업종	펀딩시도			펀딩성공	
	건수	모집가액	청약금액	건수	성공금액
건설업	10	1,065,004,000	479,700,360	5	416,000,000
교육서비스업	27	2,597,572,085	1,996,316,955	19	1,927,266,285
기타금융업	12	2,395,000,000	1,733,192,500	9	1,426,150,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9	3,259,959,000	2,841,006,000	11	2,612,933,000
도매 및 소매업	188	26,296,675,788	18,947,596,695	108	17,072,338,834
부동산업	2	349,200,000	99,584,800	1	50,000,0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6	4,869,695,500	2,871,385,250	18	2,805,333,95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	150,000,000	1,000,000	0	0
숙박 및 음식점업	9	1,129,850,000	527,570,000	4	500,20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85	13,457,985,390	12,724,431,840	51	9,481,856,200
운수및창고업	1	1,000,000,000	1,033,580,000	1	1,000,00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	500,000,000	499,840,000	1	499,840,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3	14,974,082,775	9,184,408,220	51	8,303,607,938
정보통신업	312	46,560,268,089	37,237,310,690	214	34,474,408,020
제조업	419	62,572,773,194	47,541,049,410	246	41,509,456,07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2	2,702,022,360	1,700,274,980	11	1,499,660,040
합계	1,257	183,880,088,181	139,418,247,700	750	123,579,050,343

주: 1. 주식 및 채권의 경우를 말함

2. 성공금액이란, 발행금액(발행완료 펀딩건)과 청약금액(발행미완료 펀딩건)을 합한 금액을 말함. 단,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은 펀딩완료 후 증권 발행기간까지의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펀딩의 성공금액은 청약금이 포함됨

3. 2016. 7~2020. 6까지의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함

자료: 크라우드넷, 펀딩성공현황, https://www.crowdnet.or.kr/statistics/success_outline.jsp, 검색일자: 2020. 6. 10.

- 상대적으로 업력이 초기인 기업의 클라우드 펀딩 성공 비중이 높음
 - 업력별 클라우드 펀딩 성공금액비율은 1년 이하(23.7%), 2~3년(17.1%), 1~2년(15.0%), 3~4년(13.8%) 순으로 나타남

<표 II -51> 클라우드 펀딩 업력별 성공 현황

(단위: 건, 원)

업력	펀딩시도			펀딩성공	
	건수	모집가액	청약금액	건수	성공금액
1년 이하	289	42,877,310,892	34,878,681,733	170	29,282,887,630
1~2년	229	29,794,561,734	19,941,777,958	136	18,498,116,076
2~3년	200	29,611,308,786	23,554,528,074	119	21,172,603,037
3~4년	147	21,754,060,668	18,163,936,157	97	16,996,639,576
4~5년	126	16,413,734,947	9,350,319,762	58	8,125,932,699
5~6년	89	13,129,972,782	8,816,224,356	50	7,902,482,380
6~7년	48	8,417,305,797	6,384,588,767	33	6,035,054,452
7년 초과	129	21,881,832,575	18,328,190,893	87	15,565,334,493
합계	1,257	183,880,088,181	139,418,247,700	750	123,579,050,343

주: 1. 주식 및 채권의 경우를 말함

2. 성공금액이란, 발행금액(발행완료 펀딩건)과 청약금액(발행미완료 펀딩건)을 합한 금액을 말함. 단,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은 펀딩 완료 후 증권 발행기간까지의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펀딩의 성공금액은 청약금이 포함됨

3. 2016. 7~2020. 6까지의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함

자료: 크라우드넷, 펀딩성공 현황, https://www.crowdnet.or.kr/statistics/success_outline.jsp, 검색일자: 2020. 6. 10.

- 모집규모별로 펀딩시도 금액은 모집가액이 3~5억원(22.1%), 2~3억원(21.0%)이 가장 많았고, 펀딩성공 금액 또한 3~5억원(26.4%), 2~3억원(18.3%)이 가장 비중이 높음

<표 II -52> 클라우드 펀딩 모집규모별 성공 현황

(단위: 건, 원)

모집가액규모	펀딩시도			펀딩성공	
	건수	모집가액	청약금액	건수	성공금액
0.5억원 이하	384	14,740,674,877	8,366,631,665	182	6,642,712,022
0.5~1억원	363	28,815,238,600	18,182,377,499	204	15,470,994,254
1~2억원	235	34,025,279,851	24,706,714,848	159	22,159,997,729
2~3억원	142	38,532,855,847	25,003,465,791	90	22,609,631,010
3~5억원	97	40,607,896,057	35,272,104,485	82	32,577,310,679
5~7억원	26	17,268,199,999	16,477,044,212	24	15,461,977,999
7~10억원	6	5,190,015,500	7,676,068,500	6	5,065,348,500
10~15억원	4	4,699,927,450	3,733,840,700	3	3,591,078,150
합계	1,257	183,880,088,181	139,418,247,700	750	123,579,050,343

주: 1. 주식 및 채권의 경우를 말함

2. 성공금액이란, 발행금액(발행완료 펀딩건)과 청약금액(발행미완료 펀딩건)을 합한 금액을 말함. 단,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은 펀딩 완료 후 증권 발행기간까지의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펀딩의 성공금액은 청약금이 포함됨

3. 2016. 7~2020. 6까지의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함

자료: 크라우드넷, 펀딩성공 현황, https://www.crowdnet.or.kr/statistics/success_outline.jsp, 검색일자: 2020. 6. 10.

□ 한편, 클라우드 펀딩을 시도한 투자자 유형은 일반투자자가 70,583명(93.1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펀딩에 성공한 투자자 유형도 일반투자자가 58,423명(92.5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II -53>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현황(누적)

(단위: 명, %, 원)

투자자 유형	펀딩시도			펀딩성공		
	인원	비율	청약금액	인원	비율	성공금액
일반투자자	70,583	93.17	85,733,695,291	58,423	92.57	72,134,200,214
적격투자자	3,423	4.52	9,704,189,384	3,062	4.85	8,853,220,259
전문투자자등	1,755	2.32	43,980,363,025	1,624	2.57	42,591,629,870
합계	75,761	100.00	139,418,247,700	63,109	100.00	123,579,050,343

주: 1. 주식 및 채권의 경우를 말함

2. 성공금액이란, 발행금액(발행완료 펀딩건)과 청약금액(발행미완료 펀딩건)을 합한 금액을 말함. 단,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은 펀딩 완료 후 증권 발행기간까지의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펀딩의 성공금액은 청약금이 포함됨

3. 2016. 7~2020. 6까지의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함

자료: 클라우드넷, 펀딩성공 현황, https://www.crowdnet.or.kr/statistics/success_outline.jsp, 검색일자: 2020. 6. 10.

<표 II -54>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현황(월별)

(단위: 명, %, 원)

연월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6-01	59	107,198,000	3	17,000,000	9	302,950,000
2016-02	322	435,952,750	5	19,887,500	15	252,032,000
2016-03	738	1,086,010,000	36	239,900,000	68	950,855,000
2016-04	116	173,438,121	9	54,379,278	18	1,113,751,040
2016-05	335	426,479,500	15	79,666,000	27	1,307,411,000
2016-06	866	1,300,206,800	25	117,280,000	19	815,769,200
2016-07	550	897,802,500	17	133,995,500	14	649,785,000
2016-08	315	421,304,000	26	209,523,000	10	1,007,073,000
2016-09	343	457,284,963	12	100,500,000	10	416,489,804
2016-10	490	575,217,000	12	65,980,000	23	617,128,000
2016-11	875	1,022,495,200	10	56,496,000	20	640,307,000
2016-12	583	743,232,360	12	46,350,000	12	584,614,440
2017-01	553	404,695,000	7	27,900,000	20	311,250,250
2017-02	1,446	1,196,028,707	36	118,482,241	33	768,775,160
2017-03	1,625	1,123,137,428	42	126,067,106	34	809,777,066
2017-04	1,472	1,311,856,600	27	133,963,900	58	668,159,800
2017-05	1,089	1,140,476,600	39	222,222,300	16	573,032,850
2017-06	577	726,135,800	21	138,377,050	43	2,073,152,650

연월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7-07	2,002	2,070,174,600	50	190,243,800	55	1,213,995,200
2017-08	1,192	1,276,713,110	54	239,970,000	44	1,353,990,475
2017-09	581	491,845,000	25	71,970,000	17	330,580,000
2017-10	1,768	1,513,727,777	63	237,476,605	38	1,187,975,287
2017-11	2,055	1,984,712,000	111	385,712,000	51	1,255,025,000
2017-12	1,151	1,076,086,100	46	80,806,000	31	1,126,356,280
2018-01	1,193	1,117,945,780	52	166,036,000	43	1,172,444,980
2018-02	1,745	1,397,174,890	98	275,237,300	76	1,422,215,142
2018-03	1,835	1,957,436,568	89	275,076,192	62	954,735,296
2018-04	1,812	2,034,170,984	56	96,161,196	29	519,387,210
2018-05	1,522	1,760,151,000	52	98,103,000	34	1,236,753,800
2018-06	900	1,144,204,350	28	82,793,000	15	264,197,550
2018-07	914	1,230,271,139	37	97,744,135	35	1,104,387,985
2018-08	1,284	1,384,550,000	37	79,080,000	22	652,748,238
2018-09	1,030	982,503,780	15	40,661,840	13	287,708,000
2018-10	1,239	1,435,527,153	51	126,174,235	19	861,334,406
2018-11	965	1,498,419,300	47	143,520,900	37	1,637,313,300
2018-12	1,326	1,902,970,912	78	346,664,194	23	517,160,712
2019-01	2,244	3,501,378,120	103	266,854,000	42	1,153,525,452
2019-02	496	826,000,800	28	44,890,400	19	769,493,200
2019-03	1,885	2,667,305,260	143	362,456,380	42	1,398,541,500
2019-04	986	1,313,269,670	118	254,244,826	22	150,129,876
2019-05	1,381	1,894,180,340	149	286,367,200	17	552,176,104
2019-06	2,081	3,647,881,100	131	302,529,920	22	364,971,500
2019-07	1,752	1,856,018,500	125	291,120,600	15	528,327,800
2019-08	765	1,424,060,000	89	179,612,800	22	665,774,000
2019-09	988	1,480,747,325	89	210,476,495	27	266,138,000
2019-10	1,346	1,879,190,215	161	317,251,678	42	1,002,927,116
2019-11	1,462	2,568,721,850	184	506,775,650	29	622,568,850
2019-12	1,078	1,436,293,000	78	161,990,000	40	1,855,521,000
2020-01	2,345	3,179,956,200	133	276,992,000	41	391,561,140
2020-02	479	923,689,250	35	82,290,750	16	125,221,500
2020-03	826	1,219,200,002	58	141,910,988	59	661,588,338
2020-04	623	1,152,588,000	41	111,599,000	31	154,446,000
2020-05	710	1,117,834,810	41	86,357,300	35	924,296,373
2020-06	108	238,350,000	13	28,100,000	10	43,800,000
합계	58,423	72,134,200,214	3,062	8,853,220,259	1,624	42,591,629,870

주: 1. 주식 및 채권의 경우를 말함

2. 성공금액이란, 발행금액(발행완료 펀딩건)과 청약금액(발행미완료 펀딩건)을 합한 금액을 말함. 단,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완료 후 증권 발행기간까지의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펀딩의 성공금액은 청약금이 포함됨

자료: 크라우드넷, 펀딩성공 현황, https://www.crowdnet.or.kr/statistics/success_outline.jsp, 검색일자: 2020. 6. 10.

- 크라우드 펀딩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투자자는 남성이 40,422명(64.05%)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17,952명(28.45%), 그 외인 법인은 49개사(0.08%)로 나타남
- 적격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등도 여성, 법인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음

<표 II -55>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구분·성별 현황 (단위: 명, %, 원)

일반투자자								
남성			여성			법인		
인원	비율	금액	인원	비율	금액	인원	비율	금액
40,422	64.05	52,079,324,659	17,952	28.45	19,953,041,063	49	0.08	101,834,492
적격투자자								
남성			여성			법인		
인원	비율	금액	인원	비율	금액	인원	비율	금액
2,759	4.37	7,963,058,573	295	0.47	841,083,186	8	0.01	49,078,500
전문투자자 등								
남성			여성			법인		
인원	비율	금액	인원	비율	금액	인원	비율	금액
1,217	1.93	17,065,440,598	170	0.27	3,909,030,686	237	0.38	21,617,158,586

- 주: 1. 주식 및 채권의 경우를 말함
 2. 성공금액이란, 발행금액(발행완료 펀딩건)과 청약금액(발행미완료 펀딩건)을 합한 금액을 말함. 단,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완료 후 증권 발행기간까지의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펀딩의 성공금액은 청약금이 포함됨
 3. 2016. 7~2020. 6까지의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함

자료: 크라우드넷, 펀딩성공 현황, https://www.crowdnet.or.kr/statistics/success_outline.jsp, 검색일자: 2020. 6. 10.

- 투자자 구분·성별 연령분포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30대 남성이 16,8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격투자자의 경우, 40대 남성이 1,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투자자 등의 경우에도 40대 남성이 516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II -56>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구분·연령별 현황 (단위: 명, 천만원)

연령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대 미만	95	9	40	4	0	0	0	0	0	0	0	0
20대	9,038	882	5,564	455	129	23	15	4	39	48	17	36
30대	16,825	2,117	7,572	820	762	187	116	27	388	452	54	85
40대	10,310	1,495	3,188	438	1,167	366	125	33	516	806	58	124
50대	3,516	587	1,207	201	603	191	34	16	241	295	32	133
60대	536	102	336	67	97	28	4	3	30	91	7	8
70대	97	15	43	9	1	1	1	1	3	14	2	5
80대 이상	5	2	2	0	0	0	0	0	0	0	0	0
합계	40,422	5,208	17,952	1,995	2,759	796	295	84	1,217	1,707	170	391

- 주: 1. 주식 및 채권의 경우를 말함
 2. 성공금액이란, 발행금액(발행완료 펀딩건)과 청약금액(발행미완료 펀딩건)을 합한 금액을 말함. 단,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완료 후 증권 발행기간까지의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펀딩의 성공금액은 청약금이 포함됨
 3. 2016. 7~2020. 6까지의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함

자료: 크라우드넷, 펀딩성공 현황, https://www.crowdnet.or.kr/statistics/success_outline.jsp, 검색일자: 2020. 6. 10.

- 일반투자자의 클라우드 펀딩 1기업당 투자금액은 50만원 이하가 21,041명(37.56%)로 가장 비중이 크며, 그다음으로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12,973명(23.17%)로 상대적으로 1기업당 소규모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표 II -57> 클라우드 펀딩 일반투자자의 1기업당 투자금액

(단위: 명, %, 원)

투자금액	인원수	비율	총투자금액
~50만원	21,041	37.58	6,201,110,856
~100만원	12,973	23.17	11,281,901,136
~150만원	4,990	8.91	5,845,590,479
~200만원	10,418	18.61	20,506,684,895
200만원 초과	6,565	11.73	24,769,627,677
합계	55,987	100.00	68,604,915,043

주: 1. 주식 및 채권의 경우를 말함

2. 성공금액이란, 발행금액(발행완료 펀딩건)과 청약금액(발행미완료 펀딩건)을 합한 금액을 말함. 단,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은 펀딩완료 후 증권 발행기간까지의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펀딩의 성공금액은 청약금이 포함됨

3. 2016. 7~2020. 6까지의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함

자료: 클라우드넷, 펀딩성공 현황, https://www.crowdnet.or.kr/statistics/success_outline.jsp, 검색일자: 2020. 6. 10.

- 적격투자자의 클라우드 펀딩 1기업당 투자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976명(32.87%)로 가장 비중이 크며, 그다음으로는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가 789명(26.57%)로 일반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표 II -58> 클라우드 펀딩 적격투자자의 1기업당 투자금액

(단위: 명, %, 원)

투자금액	인원수	비율	총투자금액
~100만원	976	32.87	628,846,044
~200만원	789	26.57	1,205,764,711
~300만원	361	12.16	945,771,364
~400만원	175	5.89	584,111,774
~500만원	228	7.68	1,115,969,083
~600만원	87	2.93	459,564,139
~700만원	23	0.77	151,878,720
~800만원	14	0.47	106,987,600
~900만원	13	0.44	112,903,000
~1,000만원	303	10.21	3,013,311,046
합계	2,969	100.00	8,325,107,481

주: 1. 주식 및 채권의 경우를 말함

2. 성공금액이란, 발행금액(발행완료 펀딩건)과 청약금액(발행미완료 펀딩건)을 합한 금액을 말함. 단,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은 펀딩완료 후 증권 발행기간까지의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펀딩의 성공금액은 청약금이 포함됨

3. 2016. 7~2020. 6까지의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함

자료: 클라우드넷, 펀딩성공 현황, https://www.crowdnet.or.kr/statistics/success_outline.jsp, 검색일자: 2020. 6. 10.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III.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1. 선행연구

가. 개인 벤처투자의 결정요인

- 개인의 벤처투자 결정요인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며, 그중에서도 특히 특정한 조세정책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함

- Jeng and Wells(2000)는 21개국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함
 - 분석결과, 정부정책이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결정요인일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승찬·김홍근(2019)은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투자조합 출자자의 벤처 출자의사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분석결과 개인의 벤처투자에는 재무특성, 제품서비스 특성, 시장특성, 경영자 특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나. 벤처세제지원의 효과

- 김진수·김재진(2002)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들이 벤처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
 -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김재진·양동우(2014)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성과(특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실증결과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그리고 경영 또는 기술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김재진·홍범교(2014)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과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기업의 성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함
 -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는 벤처기업의 경우가 가장 작게 나타났고,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약 0.2~0.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세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다. 벤처캐피탈 및 비즈니스 엔젤을 위한 조세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EC 보고서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캐피탈 및 비즈니스 엔젤을 위한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벤처투자조세지원제도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표 III-1〉 바람직한 벤처 조세지원제도의 특징

구분	Practice	Good Practice
범위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 적격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선불 감면(upfront relief)
	투자수익에 대한 공제 (투자소득, 자본이득)	• 자본이득에 대한 감면 제공
	손실공제	• 일반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적격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손실공제
적격요건	기업연령	• 기업연령을 감면요건의 일부로 활용
	기업규모	• 기업규모를 감면요건의 일부로 활용
	업종	• 감면업종을 열거하기보다 일부 업종을 감면에서 배제
	투자자 유형	• 비즈니스 엔젤과 벤처캐피탈 투자자 모두에게 감면혜택 제공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
	국경을 넘는 투자	• 국경을 넘는 투자자의 참여를 허용
	부채 vs. 자본	• 자본투자에 한정
	신규출자	• 신규출자로 한정
	투자금액 제한	• 투자금액에 최저 또는 최고상한을 적용
	투자기간	• 최소보유기간요건 부여
세무행정	재량성	• 비재량적 관리
	재정비용 모니터링	• 매년 재정비용을 투명하게 모니터링
	효과 모니터링	• 경제적 효과를 매년 투명하게 모니터링
	안정성	• 설계 변경 사항을 사전 공지한 고정 설계 특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for venture capital and business angels to foster the investment of SMEs and start-ups*

2. 국제 비교

가. 미국

1) 연방정부의 엔젤투자 세제지원제도²⁸⁾

가) 양도소득세 과세제외²⁹⁾

- 2010. 9. 27. 이후 취득한 적격 소기업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을 5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100%가 과세제외됨³⁰⁾
 - 2009. 2. 17.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양도차익의 50%, 2009. 2. 17부터 2010. 9. 27. 사이에 취득한 주식은 양도차익의 75%가 과세제외 됨
 - 과세제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은 28% 세율로 과세됨

- 주식 종목당 과세제외 가능한 금액은 다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
 - 해당 과세연도 중 매각하거나 교환한 주식 종목의 취득원가의 10배
 - 1,000만달러(별도 신고하는 기혼자는 500만달러)에서 이전연도 과세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된 동일 주식 종목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적격 소기업 주식은 다음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C법인 주식이어야 함
 - 1993. 8. 10. 이후 최초 발행된 것이어야 함
 - 회사의 총자산이 1993. 8. 9. 이후 주식발행 전까지 계속하여 5천만달러 이하 여야 하며, 주식발행 직후 회사의 총자산 또한 5천만달러 이하여야 함
 - 구주취득이 아닌 신주취득에 해당해야 함
 - 단,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적격 소기업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적격 소기업 주식을 전환 또는 교환해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주취득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8) https://www.irs.gov/publications/p550#en_US_2019_publink100010688, 검색일자: 2020. 5. 18.

29) IRC §1202

30) IRC §1202

- 회사 자산의 80% 이상을 적격사업에 사용해야 함(80% test)
 - 주식발행 전후 2년간 회사는 신주인수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최소량 이상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음
 - 주식발행 전후 1년간 회사는 누구로부터든지 회사의 총주식가치의 5%를 초과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음
- 적격기업은 해외판매 내국법인(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규제대상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모기지 투자회사, 특정 금융자산유동화투자신탁, 협동조합을 제외한 미국기업을 말함
- 과세특례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자산의 80% 이상을 적격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바, 적격사업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함
- 보건, 법률, 엔지니어링, 건축, 회계, 보험수리학, 공연예술, 컨설팅, 체육, 금융 서비스 또는 중개서비스 분야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 1인 이상의 종업원의 평판이나 기술력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사업
 - 은행, 보험, 금융, 임대, 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 영농사업(나무재배 또는 수확사업 포함)
 - 생산량비례법(percentage depletion)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생산이나 추출과 관련된 사업
 - 호텔, 모텔, 레스토랑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³¹⁾

- 6개월 이상 보유한 적격 소기업주식 매각 시 발생한 양도차익을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격 소기업주식의 대체취득에 이용할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함
- 과세이연대상 기업이나 주식은 기본적으로 IRC section 1202(과세제외)와 동일함
 - 대체주식 취득 후 최소 6개월 이상 회사 자산의 80% 이상이 적격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31) IRC code §1045

다) 양도차손 공제특례³²⁾

- Section 1244 소기업주식 양도차손은 자본손실(capital loss)이 아닌 경상손실(ordinary loss)로 공제할 수 있음
 - 경상손실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연 5만달러(부부합산신고의 경우 연 10만달러)로 한도초과액은 자본손실(capital loss)로 보아 공제함

- Section 1244 소기업주식은 국내 소기업이 주식 및 증권 이외에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받고 발행한 신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미국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또는 우선주(단, 해당 주식이 1994. 7. 19.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는 보통주만 가능함)
 - 주식발행 당시 기업의 총자본금이 100만달러 이하여야 함
 - 엔젤투자자는 주식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취득해야 하며, 주식발행일로부터 계속 보유해야 함
 - 양도직전 최근 5개 과세연도 동안 주식발행기업의 총수입의 50% 이상이 로열티, 임대료, 배당금, 이자, 연금 및 유가증권처분이익 이외에서 발생해야 함 (50% test)

- Section 1244의 소기업주식 양도차손 공제특례 규정은 주식의 최초 소유자에 한해 적용되는바, 구주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주정부의 엔젤투자 세제지원제도³³⁾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자원의 벤처투자 시 투자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정부 차원에서 일부 주가 엔젤투자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32) IRC §1244

33) <https://www.angelcapitalassociation.org/aca-public-policy-state-program-details/>, 검색일자: 2020. 5. 18.

가) 사우스캐롤라이나³⁴⁾

- 엔젤투자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본사가 있는 업력 5년 미만 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35%(연 10만달러 한도)를 주정부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투자대상 기업은 업력 5년 미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본사 소재, 직원 25명 이하, 직전 회계연도 총소득이 200만달러 미만, 제조업 등 특정 업종(제조, 가공, 창고, 도매, 소프트웨어 개발, IT서비스, R&D, 특정 서비스 관련 시설) 영위, 엔젤투자를 받기 전 주정부의 승인을 득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엔젤투자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은 적격투자자로서 주정부의 승인을 득한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연도 말까지 세금공제를 신청해야 함

- 세금공제액은 투자액의 35%로 투자연도에 50%까지 공제 신청가능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까지 나누어 공제할 수 있음
 - 연간 공제 가능한 최대금액은 10만달러이며, 잔액은 10년에 걸쳐 나누어 공제 가능함
 - 사우스캐롤라이나 투자자가 아니거나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없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투자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납세자에게 1회에 한해 세금공제권을 매각·교환 또는 이전할 수 있음

나) 뉴저지³⁵⁾

- 엔젤투자자가 뉴저지 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정규직 직원 225명 미만의 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50만달러 한도)를 공제 가능함
 - 단, 소수민족기업, 여성기업, 특정지역 소재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25%의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

- 투자대상 기업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정규직 직원이 225명 미만이고, 직원의 75% 이상이 뉴저지에 근무해야 함
 - 뉴저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자본이나 자산을 소유하거나 사무실을 유지해야 함

34) <https://venturesouth.vc/south-carolina-angel-investor-credit>

35) https://www.njeda.com/technology_lifesciences/angel_investor_tax_credit_program

- 뉴저지에서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함
 - 적격 연구비 지출
 - 파일럿 스케일(pilot scale) 제조
 - 첨단 컴퓨팅, 첨단 자재, 바이오테크놀로지, 전자장치, 정보기술, 생명과학, 의료장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재생에너지기술 및 탄소발자국저감기술 중 하나 이상의 상업화

나. 영국

1) 벤처지원제도 개요³⁶⁾

- 영국은 비상장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4가지 제도(EIS, SEIS, SITR, VCT)를 운영 중에 있음
 -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ITR(Social Investment Tax Relief)는 직접투자, VCT(Venture Capital Trust)는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임

<표 III-2> 영국의 벤처지원제도 개요

지원제도	투자대상기업
EIS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투자시점에 총자산 £15백만 이하, 종업원 250명 이내, 상업적 판매 개시 후 7년 이내 비상장기업 ¹⁾
SEIS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으로서 투자시점에 총자산 £200,000, 종업원 25명 이내, 이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어야 함 ²⁾
SITR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 총자산 £15백만 이하, 종업원 250명 이내의 사회적기업 ³⁾
VCT (Venture Capital Trust)	• 총자산 £15백만 이하, 종업원 250명 이내, 상업적 판매 개시 후 7년 이내인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벤처캐피탈신탁 ⁴⁾

주: 1) 연구개발이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EIS 또는 VCT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은 SEIS 적용 불가

3) 사회적기업은 등록된 자선단체,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또는 공동체이익 증진조합(community benefit society)에 해당해야 함

4) 벤처캐피탈신탁은 영국 국세청의 승인하에 비상장회사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회사로 연구개발 또는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

자료: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36)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raise-money-by-offering-tax-reliefs-to-investors>, 검색일자: 2020. 5. 18.

- EIS는 창업 후 7년 이내 소기업, SEIS는 창업 후 2년 이내 극초창기 소기업, SITR은 사회적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임
 - VCT는 창업 후 7년 이내 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신탁의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임
 - 업력 7년 미만 비상장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벤처캐피탈신탁의 신주에 투자하는 개인은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투자대상기업 요건)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은 영국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적격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투자금을 적격 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투자 당시 비상장기업이어야 하며,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 아니어야 함
- (적격사업 요건) 투자금은 적격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바, 사업의 20% 이상이 아래에 해당하면 적격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석탄 또는 철강 생산
 - 농업 또는 시장 원예
 - 임대업
 - 법률 또는 금융서비스
 - 부동산 개발
 - 호텔 운영
 - 요양원 운영
 - 전기 및 열과 같은 에너지 생산
 - 가스 또는 기타 연료 생산
 - 전기 수출
 - 은행, 보험, 자금조달서비스
- (조달금액 한도)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 개인별 투자금의 연간한도와 더불어 각 기업이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최대금액에 한도가 존재함
- 회사가 일생 동안 조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SEIS 투자는 £150,000, SITR 투자는 £1,500,000, EIS와 VCT 투자는 £12,000,000임
 -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 또는 혁신기업은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³⁷⁾

- (과세특례의 종류) 개인투자자가 벤처캐피탈제도를 이용하는 적격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캐피탈신탁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업력 7년 이하 비상장 중소기업 및 벤처캐피탈신탁 투자 시, 투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대여나 채무상품 투자 시,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격기업 및 벤처캐피탈신탁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자산매각 후 동 양도차익을 적격기업 또는 벤처캐피탈신탁 주식에 재투자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이연 또는 세금감면

- (신주취득 요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신주 발행 시,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해야 함

- (과세특례요건의 연동)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보유기간 요건) SEIS, EIS, SITR상 적격기업 주식은 3년 이상, VCT(Venture Capital Trust) 주식은 5년 이상 보유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과세특례 신청기한) SEIS, EIS, SITR는 투자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 이후 최대 5년까지, VCT는 투자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 이후 최대 4년까지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함

- (과세특례확인서의 발급) 투자자가 SEIS, EIS, SITR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적합증명서(compli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함
 - 적합증명서에는 피투자회사가 해당 제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과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몇 년간 보유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음

37)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

가) 소득세 감면

- 개인이 적격기업이나 VCT의 신주에 투자할 경우, 출자금의 30% 내지 5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
 - EIS, SEIS, SITR상 적격기업의 신주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연도뿐 아니라 투자 전년도(납세자가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년도에 투자한 것으로 보겠다고 선택한 경우)의 소득세에서 소급공제가 가능하나, VCT의 신주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연도의 소득세에서만 공제할 수 있음
 - 각 제도별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에 연간 한도가 존재함
 - 미사용 공제액은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VCT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면제됨
 - 신주투자뿐 아니라 구주투자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면제함

<표 III-3> 영국의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적격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배당소득세 공제
	투자금 한도	감면율	
EIS	£ 1,000,000 ¹⁾	30%	×
SEIS	£ 100,000	50%	×
SITR	£ 1,000,000	30%	×
VCT	£ 200,000	30%	○

주: 1) 지식집약기업에 £ 1,000,000 이상 투자한 경우 £ 2,000,000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 검색일자: 2020. 5. 18.

나) 자본이득세 감면

- ① 자산매각 후 적격기업주식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자산매각 후 자산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EIS 또는 SITR상 적격기업 투자에 사용한 경우, £ 100만 범위 내에서 자본이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함
 -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산양도일 1억원 전부터 3억원 후까지 기간 중 EIS 또는 SITR상 적격기업에 투자해야 함

- 주식을 처분하거나 투자가 취소되거나 피투자기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함
- 자산매각 후 자산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SEIS상 적격기업 투자에 사용한 경우, £50,000을 한도로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100,000 범위 내 투자금의 50%에 대해 자본이득세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감면액은 £50,000임
 - 투자 전 자산을 양도할 필요는 없지만, 투자 전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투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연도에 자산을 매각해야 함

② 적격기업주식 등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EIS, SEIS, SITR 중 하나의 제도를 통해 회사주식을 취득해 소득세 감면을 받은 엔젤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VCT 주식에 투자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동 과세특례는 신주취득과 구주취득 모두에 적용됨
- EIS, SEIS, SITR의 경우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동 기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상실함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한 경우
 - 피투자회사가 해당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투자회사의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 피투자회사로부터 금전이나 기타 자산을 수취한 경우 또는 피투자회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은 경우

③ 손실공제

- EIS 주식 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자 시 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손실잔액을 통상소득과 상계할 수 있음

- 손실공제는 주식을 매각한 과세연도 또는 그 이전 과세연도 소득과 상계할 수 있음

<표 III-4> 영국의 벤처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

제도	자산매각 후 적격기업주식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양도 시 자본이득세 감면	양도차손의 소득통산 가능 여부
EIS	적격기업주식 등 투자금의 100%까지 과세이연 가능	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면 가능	○
SEIS	적격기업주식 등 투자금의 50% 세금감면(£ 50,000 한도)	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면 가능	○
SITR	적격기업주식 등 투자금의 100%까지 과세이연 가능	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면 가능	○ (대출금은 ×)
VCT	해당사항 없음	가능	×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 검색일자: 2020. 5. 18.

다. 프랑스³⁸⁾

- 창업 후 10년 내 납입하거나 취득한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50~85%를 공제함
 -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1~4년이면 양도차익의 50%, 4~8년이면 양도차익의 65%, 8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85%를 공제함³⁹⁾
 - 2013.1.1. 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주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8년이면 양도차익의 50%, 8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65%를 공제함

3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fr_s_1.7.2.2.&refresh=1590386915724#ita_fr_s_1.7.2.2, 검색일자: 2020. 5. 25.

39) article 150-0D 1 quarter of the CGI

라. 일본

1) 특정 중소기업 주식의 취득가액 공제 등의 특례(엔젤세제)⁴⁰⁾

- 2003. 4. 1. 이후에 거주자 등⁴¹⁾이 특정 중소기업 주식을 납입에 의해 취득⁴²⁾한 경우, 일반주식 또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연도에 납입에 의해 취득한 특정 중소기업 주식(이하 “공제대상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함
 - 단, 공제대상금액은 이 특례를 적용하기 전 일반주식 또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 일반주식 또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 특정 중소기업 주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등 경영지원법」 제6조에서 규정한 특정한 신규 중소기업 주식
 -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계약에 따라 취득한 설립 후 10년 이하의 중소기업 주식
 -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 제57조의 2 제1항에 따라 2014. 4. 1.부터 2021. 3. 31. 사이에 지정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 공제대상금액은 다음 산식을 이용해 계산함

$$\frac{\text{그 연도 중에 납입에 의해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주식의 합계액}}{\text{그 연도 중에 납입에 의해 취득한 특정주식의 수}} \times \left(\begin{array}{l} \text{그 연도 중에} \\ \text{납입에 의해} \\ \text{취득한} \\ \text{특정주식 수} \end{array} - \begin{array}{l} \text{그 연도 중에 양도} \\ \text{또는 증여한} \\ \text{특정주식과} \\ \text{동일종목 주식 수} \end{array} \right)$$

- 공제대상금액은 일반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40) <https://www.nta.go.jp/m/taxanswer/1530.htm>

41) 특정 중소기업의 동족주주 등 일정한 자를 제외함

42) 스톡옵션세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 이 특례를 적용받은 연도의 다음 해 이후의 각 연도분 공제대상 특정주식에 관한 동일종목 주식 1주당 취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그 특정주식에 관계된 동일종목 주식 1주당 연도 말 취득가액	-	취득가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은 공제대상액 <hr style="width: 80%; margin: 0 auto;"/> 그 연도 말 공제대상 특정주식에 관계된 동일종목 주식수
--------------------------------------	---	--

2) 특정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경우의 특례(엔젤세제)⁴³⁾

- 특정 중소기업의 주식을 납입에 의해 취득한 거주자 등에 대해 특정 중소기업의 설립일로부터 상장일 전날까지의 기간(유효기간) 중에 해당 특정주식이 다음의 사유로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잃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금액 중 일정액을 특정주식의 양도차손으로 간주하고 일반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특정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 제외)하고 청산을 종결한 경우
 - 특정주식 발행법인이 파산규정에 의한 파산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이 특례 외에도 ‘특정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손실의 손익계산 특례’와 ‘특정투자주식에 관한 양도손실 이월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일반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은 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3) 특정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손실의 손익계산 특례(엔젤세제)⁴⁴⁾

- 특정 중소기업 주식을 납입에 의해 취득한 거주자 등이 유효기간⁴⁵⁾ 중에 납입에 의해 취득한 특정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⁴⁶⁾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 중 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일반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43) <https://www.nta.go.jp/m/taxanswer/1531.htm>

44) <https://www.nta.go.jp/m/taxanswer/1532.htm>

45) 그 특정 중소기업의 설립일로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기간

46) 친족에게 양도한 것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함

- ‘특정 중소기업 주식이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경우의 특례’를 적용받아 특정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차손으로 간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4) 특정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손실의 이월공제의 특례(엔젤세제)⁴⁷⁾

-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 등이 그 전년도 이전 3년간 발생한 특정 주식에 관한 양도손실⁴⁸⁾이 있는 경우, 그 연도의 일반주식 양도소득금액⁴⁹⁾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⁵⁰⁾을 한도로 그 연도의 일반주식 양도소득금액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특정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손실의 손익계산 특례를 적용⁵¹⁾받고서도 공제할 수 없는 양도손실금액은 그 해의 다음 해 이후 3년간 일반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5) 특정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동 과세특례는 엔젤세제의 대상이 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50%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제도로, 2008. 4. 29까지의 취득분까지 적용되고 폐지됨
 - 2000. 3. 1부터 2008. 4. 29. 사이에 납입에 의해 취득한 주식으로서 상장 후 3년 내 증권회사 등을 경유해 양도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2분의 1로 하여 과세하는 특례제도임
 - 2000. 3. 1부터 2008. 4. 29. 사이에 납입에 의해 취득한 주식으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상장일 전에 합병·인수(M&A)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도 동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47) <https://www.nta.go.jp/m/taxanswer/1533.htm>

48) 특정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손실의 손익계산 특례 또는 이 특례의 적용을 받아 전기 이전에 공제된 것은 제외함

49) 특정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취득가액 공제 등의 특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적용 후의 금액

50) 특정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취득가액 공제 등의 특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적용 후의 금액

51) 특정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경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것 포함

마. 시사점

- (감면유형)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이 있으며, 일본은 2008. 4. 29. 이후 취득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함
 - 일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 반면 미국은 양도차익 과세 제외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함
 - 미국과 영국은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을 다른 벤처기업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과세이연 혜택 또한 제공함

- (손실공제) 미국, 영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벤처투자손실을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이나 통상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미국과 영국은 벤처투자손실을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의 통상소득(우리나라의 종합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영국은 당기뿐 아니라 전기의 통상소득에서 소급공제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일본은 벤처투자손실을 다른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투자대상기업) 3개국 모두 비상장 소기업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과 일본은 업력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영국은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처럼 벤처기업 주식으로 대상을 한정짓지 않고, 소기업 주식이면 총분함

- (신주취득 요건) 조사대상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신주취득에 한해 세금감면혜택을 제공하며, 구주취득은 원칙적으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함

- (보유기간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보유기간 요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세이연, 양도차손공제 등 절세효과가 적은 과세특례는 보유기간 요건을 두지 않거나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 (한도) 미국은 투자자별 한도만 두고 있는 반면 영국은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에 모두 한도를 두어 특정 투자자나 벤처기업에 편중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영국은 혁신기업 투자에 상향된 한도액을 적용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 (투자단계 세금감면) 미국, 영국, 일본은 비상장 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국가별로 공제되는 세금의 종류에 차이가 있음
 - 미국은 주정부 소득세에서, 영국은 종합소득세에서, 일본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표 III-5〉 주요국의 벤처주식 양도 과세특례

구분	미국	영국	일본
감면유형	- 재투자 과세이연 - 양도차익 비과세 - 양도차손 공제	- 재투자 과세이연 - 양도차익 비과세 - 양도차손 공제	- 양도차손 공제 - 감액손실 공제
대상기업	- 비상장 소기업	- 비상장 소기업	- 비상장 소기업
업력 제한	- 없음	- SEIS(2년) - EIS(7년)	- 없음
신주취득 요건	○ (일부 예외)	○	○
보유기간 요건	- 과세이연: 6개월 - 비과세: 5년	- 비과세: 3년	×
한도	투자자	- SEIS(£5만) - EIS(£1백만)	×
	벤처기업	×	- SEIS(£15만) - EIS(£12백만, 평생한도)
혁신기업 우대	×	○ (한도 상향조정)	×
투자단계 세금감면	△ (주별로 상이)	○	○
투자단계 세금감면요건과 연동	×	○	○

주: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자료: www.irs.gov, www.gov.uk, www.nta.go.jp

- (투자단계 세금감면요건과 연동) 영국과 일본은 투자단계와 양도단계 세금감면대상 투자의 요건이 동일함
 - 해당 주식 취득 후 투자단계에서 세금감면혜택을 받았으면 양도 시 자동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 제도의 간편성이 높은 것이 특징임

IV. 타당성 분석



IV. 타당성 분석

1. 정부지원의 적절성

가.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4만 8천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함⁵²⁾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4,613개사 중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정보가 있는 3,394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직전 연도 말 고용과 2019년 말 고용을 비교한 결과, 투자금 10억원당 4.3개, 벤처기업당 14.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함
 - 업력별로는 창업초기기업, 업종별로는 게임 및 ICT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벤처산업은 성장성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지만, 고위험·고수익의 산업특성상 시장실패(과소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⁵³⁾
 - 벤처기업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시장에 도전하기 때문에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는데, 시장 자본은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가지므로 시장실패(과소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벤처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업력 3년 미만 벤처기업의 58%가 자금조달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응답하는 등 벤처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가 벤처기업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힘

5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 4. 6), 「벤처투자 기업, 4만 8천개 일자리 신규 창출」

53)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2017)』, pp. 95~98 재인용

<표 IV-1> 경영 애로사항(상위 응답률)

(단위: 개, %)

항목	전체	업력			
		창업 3년 이하	4~10년	11~20년	21년 이상
사례 수	36,065	4,985	18,110	10,087	2,882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56.2	58.0	57.9	55.2	45.6
국내판로개척	54.7	59.1	55.2	53.5	48.2
필요인력 확보 및 유지	54.0	59.4	54.4	51.9	49.4
해외시장 개척	53.3	57.9	53.0	50.2	57.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51.1	63.7	49.1	49.3	48.2
신기술개발	44.0	51.2	42.0	42.8	47.8
과당경쟁 및 덤핑	38.6	34.2	36.9	43.5	39.4
법률·회계·세무지식 부족	33.5	37.4	33.6	32.1	31.1
각종규제	30.6	26.2	31.3	32.8	26.0
기술유출·디자인 및 상표 도용	28.0	31.5	25.7	32.2	21.3
조직관리	26.9	24.8	27.0	29.0	22.7
불공정한 시장질서	26.3	22.0	26.7	26.7	29.1
환율변동	24.0	23.1	22.6	27.0	24.1
산·학·연간 협력활동	22.4	19.6	21.1	26.1	22.7
특허분쟁	18.8	10.3	21.5	19.5	14.2

주: 1. 2018년 기준

2. 상위응답률: 매우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20.

- 창업 초기 벤처기업은 높은 성장성과 고용창출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적 불확실성과 대외적 신뢰도 부족으로 시장실패(과소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타당성을 가짐
 -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벤처투자자의 사적 한계비용을 낮춤으로써 벤처산업에 대한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나.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2018년 말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7.6%로 개인투자자는 벤처기업 외부자 자금조달의 주요한 원천임
 -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 비중이 49.1%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임직원 및 그의 특수관계자(39.5%)로 내부투자자 비중이 90%에 육박함
 - 외부투자자 중에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7.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2.5%),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1.4%) 순임

<표 IV-2>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창업자	임직원 ¹⁾	가족 ²⁾	벤처 캐피탈 ³⁾	엔젤 ⁴⁾	개인 투자자	
전체		31,318	49.1	27.7	11.8	2.5	1.4	7.5	
업종	첨단 제조	에너지/화학/정밀	2,676	53.2	22.5	12.1	3.9	0.4	8.0
		의료/제약	1,082	53.0	16.6	10.8	5.3	1.2	13.2
		컴퓨터/반도체/ 전자부품	3,273	50.4	21.4	11.9	3.6	1.9	10.9
		통신기기/방송기기	1,216	48.9	27.9	8.7	4.0	0.8	9.6
	일반 제조	기계/자동차/금속	5,573	60.2	14.5	17.5	1.3	0.3	6.1
		음식료/섬유/비금속/ 기타제조	6,465	46.4	32.6	12.9	1.5	1.0	5.7
	첨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IT기반서비스	4,088	35.8	42.6	9.8	3.1	2.7	6.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423	41.2	37.8	6.5	2.2	4.0	8.2
	일반 서비스	도소매/ 연구개발서비스/ 기타서비스	3,764	51.4	28.7	7.6	2.4	1.3	8.7
		기타	758	52.5	28.5	14.2	0.4	0.7	3.7
종사 자규 모	1~9인	15,607	54.4	28.4	9.6	1.6	1.0	4.9	
	10~29인	10,558	46.0	28.9	14.5	2.2	1.1	7.4	
	30~49인	2,460	40.4	26.4	14.4	4.3	3.2	11.4	
	50~99인	1,751	42.1	20.7	13.3	6.5	2.3	15.1	
	100인 이상	942	32.6	19.9	9.7	7.4	4.6	25.9	
성장 단계	창업기	1,324	65.1	15.1	7.8	4.1	3.0	4.9	
	초기성장기	8,441	53.8	29.0	7.7	2.4	1.3	5.8	
	고도성장기	12,342	46.7	28.7	13.2	2.7	1.4	7.4	
	성숙기	8,527	45.6	27.4	14.8	1.7	1.4	9.2	
	쇠퇴기	683	48.3	24.9	9.1	4.5	0.3	12.9	
업력	창업 3년 이하	4,212	62.9	24.6	5.2	2.0	0.9	4.5	
	4~10년	15,894	51.2	27.4	10.6	2.7	1.5	6.7	
	11~20년	9,069	41.2	30.3	15.4	2.4	1.5	9.2	
	21년 이상	2,143	40.8	25.6	18.3	2.1	1.3	11.9	

주: 1. 2018년 말 기준

- 1) 대표이사 포함
- 2) 대표이사·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 포함
- 3)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 4)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0

-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2018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업력 3년 이하의 초기벤처기업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임
- 벤처기업의 2018년 말 개인투자자 비중은 평균 7.5%이나, 업력 3년 미만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4.5%에 불과함

[그림 IV-1] 연도별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자 비중

(단위: %)



주: 1. 2018년 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0

- 벤처기업의 2018년 신규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10억원으로 신규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정부 정책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업력이 짧을수록 정부 정책지원금의존도가 높음
 - 신규자금 조달방법은 정부 정책지원금이 65.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은행 등 일반금융(25.4%), 기타(5.2%),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2.4%), 회사채 발행(0.9%), IPO(0.2%)의 순서로 나타남
 - 업력 5년 이하 벤처기업의 2018년 신규 자금조달규모는 평균 8억 2천만원이며, 이 중 70%를 정부 정책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음

<표 IV-3>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규모 및 방법

(단위: 백만원, %)

구분	신규자금 조달규모	신규자금 조달 방법						
		IPO	벤처 캐피탈, 엔젤투자	회사채 발행	정부 정책 지원금	은행 등 일반금융	기타	
전체	1,008	0.2	2.4	0.9	65.8	25.4	5.2	
업력	0~5년	821	0.2	3.4	1.4	69.9	21.3	3.8
	6~7년	695	-	3.2	0.0	60.3	29.4	7.1
	7~10년	919	0.1	1.8	1.2	66.8	22.7	7.2
	11~20년	1,232	0.3	1.7	0.7	64.3	28.0	4.9
	21년 이상	1,985	0.0	0.8	1.7	62.3	32.3	2.9

주: 1. 2018년 기준

2. 정부 정책지원금: R&D, 융자, 보증서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0

- 201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엔젤투자액 비중은 0.031%로 미국(0.113%)의 1/4 수준이며, 엔젤투자 기업 수는 미국의 1/62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엔젤투자액 비중은 2014년에는 미국의 1/28 수준이었으나, 엔젤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2018년에는 그 격차가 1/4 수준으로 감소함
 - 엔젤투자 기업 수가 여전히 미국의 1/62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벤처등록업체 (2018년 말 기준 25,391개) 중 엔젤투자를 받은 업체 비중이 4.3%에 불과함

<표 IV-4> 우리나라와 미국의 엔젤투자액 및 기업 수 현황

(단위: 억원, 십억달러, %, 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우리 나라	엔젤 투자액	금액	959	2,048	2,586	3,601	5,869	4,721
		GDP 대비 비중	0.006	0.012	0.015	0.020	0.031	0.025
	엔젤 투자기업	기업 수	251	455	546	612	1,092	1,107
미국	엔젤 투자액	금액	24.1	24.6	21.3	23.9	23.1	23.9
		GDP 대비 비중	0.139	0.136	0.115	0.123	0.113	0.117
	엔젤 투자기업	기업 수	73,400	71,110	64,380	61,560	66,110	63,730

자료: 한국엔젤투자협회, 『Center for Venture Research』(Angel Market Analysis Report)

-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혜택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 자금조달수단 중 정부 정책지원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민간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정책지원금 위주의 신규 자금조달은 성장단계로 갈수록 대규모 자본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음

2. 수행방법의 타당성

가. 지원방식의 타당성

- 개인투자자는 벤처투자자 중 세제 혜택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투자자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벤처투자 유도는 정책 타당성이 인정됨
 -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세제 혜택이 벤처 투자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 유형으로 개인투자자를 꼽음

<표 IV-5> 세제 혜택이 벤처 투자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 유형(1순위)
(단위: 명, 개소, %)

구분	사례수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기타 투자자
창업투자회사	(49)	36.7	18.4	44.9	0.0
벤처기업	(46)	56.5	32.6	8.7	2.2
창업기획자	(91)	31.9	14.3	53.8	0.0

자료: 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 창업기획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개인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출자 시 세제 혜택과 양도 시 세제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출자 시 세제 혜택은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투자결과에 관계없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투자성공 시에만 세금감면효과가 발생함

- 벤처투자자(개인)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투자의사 결정 시 세제 혜택이 영향을 준 정도에 관해 설문한 결과, 투자규모가 적을수록 출자 시 세제 혜택이 양도 시 세제 혜택에 비하여 투자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금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는 출자 시 세제 혜택과 양도 시 세제 혜택이 벤처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사함
 - 반면 투자금 합계가 3천만원 이하인 개인투자자는 양도 시 세제 혜택보다 출자 시 세제 혜택이 벤처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투자금 합계가 1,500만원~3천만원인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영향 있음’ 비율은 63.6%인 데 반해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영향 있음’ 비율은 이보다 높은 81.1%로 나타남
 - 투자규모가 적은 일반개인투자자는 투자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IV-6〉 세제 혜택이 벤처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영향 있음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영향 없음	
전체	(103)	90.3	9.7	83.5	16.5	
투자금액 합계	1,500만원 이하	(10)	90.0	10.0	80.0	20.0
	~3,000만원 이하	(11)	81.8	18.2	63.6	36.4
	~5,000만원 이하	(10)	100.0	0.0	100.0	0.0
	~1억원 이하	(14)	78.6	21.4	71.4	28.6
	~3억원 이하	(33)	97.0	3.0	87.9	12.1
	~5억원 이하	(11)	90.9	9.1	90.9	9.1
	5억원 초과	(14)	85.7	14.3	85.7	14.3
소득구간	1,200만원 이하	(6)	83.3	16.7	83.3	16.7
	~4,600만원 이하	(8)	87.5	12.5	87.5	12.5
	~8,800만원 이하	(35)	91.4	8.6	77.1	22.9
	~1억 5천만 이하	(29)	86.2	13.8	82.8	17.2
	~3억원 이하	(18)	94.4	5.6	88.9	11.1
	~5억원 이하	(5)	100.0	0.0	100.0	0.0
	5억원 초과	(2)	100.0	0.0	100.0	0.0
벤처투자 회수경험	회수	(31)	87.1	12.9	80.6	19.4
	미회수	(72)	91.7	8.3	84.7	15.3

자료: 벤처투자자(개인) 설문조사 결과

- 전문투자자는 투자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 동 제도가 벤처투자 유도에 효과적인 지원방식일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는 투자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성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한 조세지출일 수 있음
 - 투자규모가 적은 일반투자자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투자규모가 큰 전문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나. 대상 설정의 타당성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의 불일치로 제도의 복잡성이 높고, 인지도가 낮음
 - 동 과세특례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비하여 적용대상 벤처투자 범위가 좁음
 - 예를 들어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업력요건이나 보유요건이 없지만, 동 과세특례는 직접투자의 경우 업력요건 및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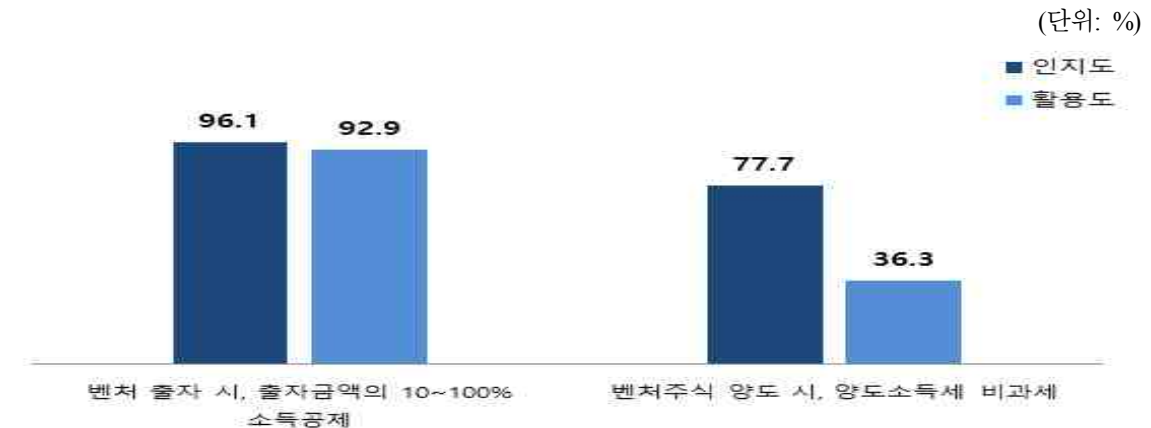
<표 IV-7> 벤처 출자 시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수혜대상 비교

구분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직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에 투자 ○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중소기업, R&D지출 연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 5등급 이상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5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 벤처기업 주식 ○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 (대주주 제외)
간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조합투자기구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창업 후 5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 투자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자료: 저자 작성

-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지도 및 활용도는 높은 반면 동 과세특례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벤처투자자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96.1%와 92.9%에 달한 반면 동 과세특례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이보다 낮은 77.7%와 36.3%에 그침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의 발급으로 투자자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 가능한 반면 동 과세특례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2]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



자료: 벤처투자자(개인) 설문조사 결과

- 벤처투자자(개인)를 대상으로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벤처기업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개인투자자의 58.3%가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 과세특례 제도의 존재 및 적용요건에 대한 벤처투자자의 낮은 인지도는 제도의 활용도를 떨어뜨려 정책목표 달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다. 지원·감면방법의 타당성

1) 한도 미설정의 타당성 검토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자별 한도가 존재하나, 동 과세특례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자별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함
- 동 과세특례를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벤처기업 수는 2019년 말 현재 전체 벤처인증기업의 약 17%에 불과한바, 특정 벤처기업에 대한 편중현상이 존재함
 - 2019년 중 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벤처기업 수는 각각 1,608개, 1,468개, 1,107개로 2019년 말 벤처인증기업 24,669개의 약 17.1%에 해당하는 수치임
 - 17.1%는 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엔젤투자자로부터 중복투자를 받은 업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수혜기업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표 IV-8〉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수혜기업 수

(단위: 개, %)

		2015	2016	2017	2018	2019
벤처인증기업(①)		22,715	23,086	24,554	25,391	24,669
수혜 벤처기업 (②)	벤처캐피탈 투자	1,045	1,191	1,266	1,399	1,608
	신기술사업금융 투자	647	656	778	1,305	1,468
	엔젤투자	455	546	612	1,092	1,107
	K-OTC 거래	22	22	23	27	34
	소계	2,169	2,415	2,679	3,823	4,217
수혜 비율 (②/①)		9.5	10.5	10.9	15.1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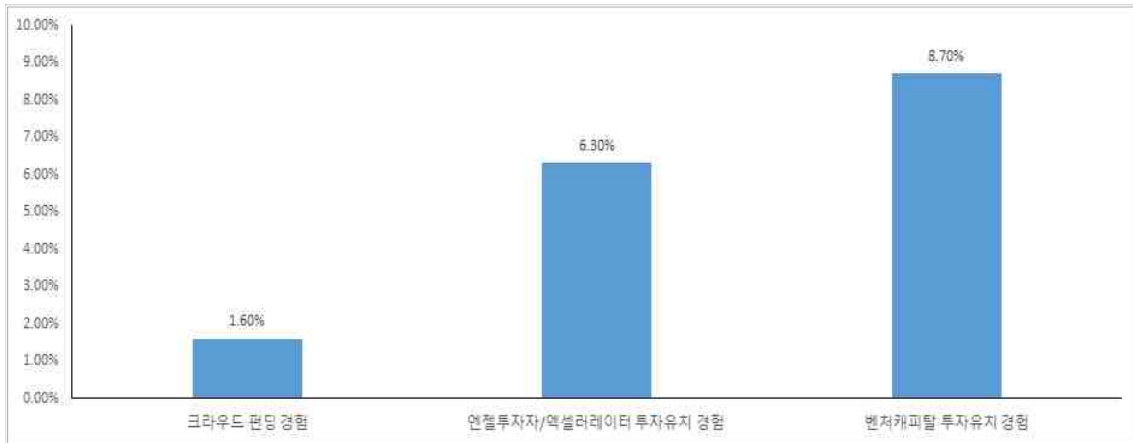
주: 각 항목간 동일 벤처기업에 대한 중복투자 없는 것으로 가정
 자료: 벤처인·한국벤처캐피탈협회·여신금융협회·K-OTC 홈페이지

- 수혜벤처기업 수 및 수혜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혜비율이 낮은 편어서 벤처기업들이 동 과세특례의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엔젤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이 전체 응답자의 6.3%에 불과함
 - 미국의 경우, 2019년 엔젤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수는 63,730개로 우리나라의 약 62배에 달함

- 벤처투자자(개인),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벤처투자자 및 벤처캐피탈은 동 과세특례의 벤처투자 활성화 효과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 반면 벤처기업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함

[그림 IV-3] 벤처기업의 엔젤투자자 투자유치 경험

(단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0

-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를 발급한, 업력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의 1사당 엔젤투자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1사당 엔젤투자액은 평균 3억 8천만원이고, 최솟값은 120만원, 최댓값은 61억 8천만원으로 기업별로 엔젤투자액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으로 올수록 1사당 엔젤투자액 평균과 표준편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별로 큰 편차를 보임

<표 IV-9> 벤처기업별 1사당 엔젤투자액

(단위: 백만원)

연도	평균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
2016	438.6	0.2	10,605.3	887.8
2017	401.0	4.0	9,000.0	799.3
2018	398.1	2.5	11,886.1	854.2
2019	380.7	1.2	6,182.7	660.5

주: 1.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를 발급한 벤처기업 중 업력요건(창업 후 5년 이내 또는 벤처인증 후 3년 이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1사당 엔젤투자액을 집계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자료

- 2019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소득공제 신청인원의 50%, 소득공제 신청액의 70%가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있음
 - 근로소득금액 2천만~4천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인당 소득공제 신청액이 479만원인 데 반해 근로소득금액 8천만~1억원,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인당 소득공제 신청액은 각각 1천만원과 1,774만원으로 분석됨

〈표 IV-10〉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현황(2019년)

(단위: 명, 백만원)

결정세액이 있는 자			결정세액이 없는 자		
근로소득금액 규모별	인원	금액	근로소득금액 규모별	인원	금액
1천만 이하	1	1	1천만 이하	39	66
2천만 이하	128	257	2천만 이하	189	758
4천만 이하	966	3,142	4천만 이하	470	3,733
6천만 이하	1,744	12,025	6천만 이하	180	2,553
8천만 이하	1,827	18,216	8천만 이하	8	133
1억 이하	1,336	15,754	1억 이하	2	36
2억 이하	2,943	45,585	1억 초과	1	0
3억 이하	578	13,718			
5억 이하	332	9,667			
10억 이하	219	8,082			
10억 초과	96	4,83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V(근로소득금액)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비상장 벤처주식을 양도한 개인투자자의 종합소득 분포를 살펴본 결과, 비상장 벤처주식 양도가액의 52.4%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개인투자자가 양도한 비상장 벤처주식의 양도가액 합계는 4조 297억원이며, 이 중 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양도가액 합계는 2조 6,571억원으로 전체의 약 52.4%를 차지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비상장 벤처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개인투자자는 총 1만 7,508명이며, 이 중 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는 2,565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함

<표 IV-11> 종합소득 과세구간별 비상장 벤처주식 양도가액 분포

(단위: 명, %, 억원)

종합소득 과세구간	비상장 벤처주식 양도가액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합계		비중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없음	1,087	1,095	1,107	1,396	1,251	2,416	3,445	4,907	19.7	12.2
~ 1,200만원	1,038	765	1,052	814	882	770	2,972	2,350	17.0	5.8
~ 4,600만원	2,014	1,566	2,042	2,598	1,871	2,305	5,927	6,469	33.9	16.1
~ 8,800만원	772	1,136	959	1,737	868	2,584	2,599	5,457	14.8	13.5
~ 1억5천만원	372	934	493	1,710	387	1,595	1,252	4,239	7.2	10.5
~ 3억원	-	-	315	2,093	256	3,619	571	5,712	3.3	14.2
~ 5억원	311	2,590	109	1,280	69	1,870	489	5,740	2.8	14.2
5억원 초과	80	3,503	119	1,052	54	868	253	5,423	1.4	13.5
총합계	5,674	11,588	6,196	12,681	5,638	16,028	17,508	40,297	100	100

주: 개인투자자가 비상장 벤처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자료를 분석한 것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투자규모와 소득금액이 클수록 벤처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분석결과를 <표 IV-10>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고소득자의 벤처주식 양도가액이 저소득자보다 많고, 투자수익률 또한 높으므로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자에 편중됐을 가능성이 높음

<표 IV-12> 벤처투자자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연평균 수익률 (base=회수경험 '있음', n=31)							
		0% 미만 (손실)	0~10%	10~20%	20~30%	30~40%	40~50%	50% 초과	
전체	(103)	12.9	3.2	6.5	19.4	6.5	9.7	41.9	
투자금액 합계	1,500만원 이하	(10)	25.0	0.0	0.0	0.0	0.0	0.0	75.0
	~3,000만원 이하	(11)	0.0	100.0	0.0	0.0	0.0	0.0	0.0
	~5,000만원 이하	(10)	0.0	0.0	33.3	0.0	0.0	0.0	66.7
	~1억원 이하	(14)	33.3	0.0	0.0	0.0	33.3	0.0	33.3
	~3억원 이하	(33)	22.2	0.0	0.0	33.3	0.0	22.2	22.2
	~5억원 이하	(11)	0.0	0.0	0.0	33.3	0.0	33.3	33.3
	5억원 초과	(14)	0.0	0.0	12.5	25.0	12.5	0.0	50.0
소득구간	1,200만원 이하	(6)	25.0	0.0	0.0	25.0	0.0	0.0	50.0
	~4,600만원 이하	(8)	0.0	0.0	50.0	0.0	0.0	0.0	50.0
	~8,800만원 이하	(35)	11.1	11.1	11.1	11.1	0.0	11.1	44.4
	~1억5천 이하	(29)	11.1	0.0	0.0	22.2	11.1	11.1	44.4
	~3억원 이하	(18)	20.0	0.0	0.0	20.0	20.0	20.0	20.0
	~5억원 이하	(5)	0.0	0.0	0.0	50.0	0.0	0.0	50.0
	5억원 초과	(2)	-	-	-	-	-	-	-

자료: 벤처투자자(개인) 설문조사 결과

- 비상장 벤처주식의 취득자 및 양도자에 고소득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별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세제 혜택이 고소득자에 편중됐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벤처기업별 한도 미실정으로 특정 벤처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대다수 벤처기업들은 동 과세특례의 정책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2) 직접투자의 업력요건 설정의 타당성 검토

- 동 과세특례에서 직접투자는 설립 후 5년 내 또는 벤처인증 후 3년 내 벤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벤처인증 전 기업의 주식 취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반면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벤처기업 주식 취득을 대상으로 하며, 업력 3년 내 기술성 우수중소기업은 벤처인증과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벤처기업 인증 전 2년 내 투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함
-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 중 13.1%가 업력요건 미충족으로, 12.9%가 벤처인증 전 투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업력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벤처투자 비중이 30.3%와 25.5%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13.1%로 감소함

〈표 IV-13〉 투자확인서 발급실적

(단위: 억원, %)

연도	벤처기업 투자				벤처미인증 중소기업 투자		합계
	업력요건 충족		업력요건 미충족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7	1,857	51.6	1,090	30.3	654	18.2	3,601
2018	3,507	59.8	1,494	25.5	868	14.8	5,869
2019	3,491	74.0	620	13.1	609	12.9	4,721

주: 1. 업력요건은 창업 후 5년 내 또는 벤처인증 후 3년 내 벤처기업 주식투자를 말함

2. 벤처미인증 중소기업 투자란 벤처 인증 전 2년 내 투자,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성 우수중소기업·R&D지출 연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기술신용평가 5등급 이상 중소기업을 말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가공

- 동 과세특례는 벤처인증 전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비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초기 기업 투자에 대한 유인이 부족함
 - 2019년 벤처인증기업 기준 기업설립 후 벤처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5년 정도이나, 업력 5년 미만 벤처기업을 비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업력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벤처 직접투자는 5년의 업력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간접투자는 업력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형평성 논란이 존재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 창업 후 벤처인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동 과세특례는 벤처인증 전 기업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극초창 벤처기업이 동 과세특례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공제대상을 일치시켜 벤처인증 취득 전 2년 내 투자자와 업력 3년 내 기술성 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보유요건 설정의 타당성 검토

- 동 과세특례는 3년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년 이내 회수비율이 33.5%에 달해 벤처투자자의 1/3이 보유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투자규모 및 소득이 적을수록 장기간 보유여력이 없어 회수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보유기간 요건이 엄격한 편은 아님
 - 미국은 5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바, 우리나라보다 보유기간 요건이 장기이며, 영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3년임

<표 IV-14> 벤처투자의 평균 회수기간

(n=3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년 이내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31)	6.5	29.0	45.2	19.4
투자금액 합계	1,500만원 이하	(4)	50.0	0.0	50.0	0.0
	~3,000만원 이하	(1)	0.0	100.0	0.0	0.0
	~5,000만원 이하	(3)	0.0	33.3	66.7	0.0
	~1억원 이하	(3)	0.0	66.7	0.0	33.3
	~3억원 이하	(9)	0.0	22.2	55.6	22.2
	~5억원 이하	(3)	0.0	0.0	66.7	33.3
	5억원 초과	(8)	0.0	37.5	37.5	25.0
소득구간	1,200만원 이하	(4)	50.0	25.0	25.0	0.0
	~4,600만원 이하	(2)	0.0	50.0	50.0	0.0
	~8,800만원 이하	(9)	0.0	33.3	55.6	11.1
	~1억 5천만 이하	(9)	0.0	11.1	55.6	33.3
	~3억원 이하	(5)	0.0	40.0	40.0	20.0
	~5억원 이하	(2)	0.0	50.0	0.0	50.0
	5억원 초과	(0)	0.0	0.0	0.0	0.0

자료: 벤처투자자(개인) 설문조사 결과

- 다만, 미국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5년의 보유요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이보다 완화된 6개월의 보유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업력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반면 벤처주식은 높은 회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업력 및 보유기간 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어 모험자본시장 활성화에 위배되는 측면이 존재함
- 벤처주식 회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대주주 양도분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음

4) 신주취득요건 설정의 타당성 검토

- 동 과세특례는 구주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주취득에 한해 적용됨
 - 구주취득은 벤처기업에 자금유입 효과가 없으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최근 세법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증자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의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구주취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세제 혜택의 적용대상을 구주인수로 확대하는 것이 벤처회사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벤처투자자(개인)의 74.8%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회사의 긍정응답비율은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나타남
 - 창업투자회사와 벤처기업의 긍정응답비율이 각각 44.9%와 52.2%에 그침

〈표 IV-15〉 구주인수 확대로 적용 대상 확대하는 것이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개소, %)

구분	사례수	영향 없음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벤처투자자	(103)	6.8	18.4	74.8
창업투자회사	(49)	18.4	36.7	44.9
벤처기업	(46)	28.3	19.6	52.2
창업기획자	(91)	14.3	24.2	61.5

자료: 벤처투자자(개인), 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 창업기획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구주인수로 세제 혜택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벤처기업 자금유치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주인수로 한정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다도 벤처기업에 신규자금 유입효과가 있는 신주취득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3. 타 제도와의 중복성

가. 재정지원과 중복성 검토

-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형태는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정지원은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회수단계에서 재정지원은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동 과세특례와 재정지원 간 중복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회수단계의 대표적인 재정지원에는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이 있음
- 벤처투자의 회수 및 재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대부분은 회수통로를 다양화하고,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IPO 및 M&A 요건 완화, 벤처지주회사 설립규제의 완화 등)와 관련되어 있음
- 동 과세특례는 벤처투자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은 중복지원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

〈표 IV-16〉 개인의 벤처투자자에 대한 지원정책

구분	단계	지원내용
세제 지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 창업벤처전문PEF에 투자하거나 일정요건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출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 액수에 따라 30~100% 소득공제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전문회사, 창업기획자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 ○ 증권거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재정 지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젤투자매칭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 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된 펀드로 모태펀드가 출자한 M&A펀드는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사용해야 함 ○ 세컨더리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만기(통상 7~8년) 안에 회수하지 못한 구주를 인수하여 펀드의 원활한 청산을 유도하고 기업에 지속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6조, 제117조

나. 세제지원과 중복성 검토

-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보유·회수단계로 나눌 수 있음
 - 투자단계의 세제지원에는 「조특법」 제16조에 의한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회수단계의 세제지원에는 동 과세특례와 「조특법」 제117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있음

1) 투자단계 세제지원과 중복성 검토

- 국가경제에서 벤처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다수 국가가 벤처 투자 및 회수단계에 중복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 과세특례 간 중복지원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Pw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8개 국가 중 9개 국가에서 투자와 회수 단계에 동시에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함

<표 IV-17> 각국의 벤처투자단계별 세제 혜택

	국가명	투자 시 세제 혜택	수취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양도 시 세제 혜택
1	벨기에	√	√	√
2	캐나다	√		
3	프랑스	√	√	√
4	독일	√	√	
5	아일랜드	√		
6	이스라엘	√	√	√
7	이탈리아	√	√	
8	일본	√		√
9	몰타	√		
10	폴란드			√
11	포르투갈	√		
12	슬로베니아		√	√
13	한국	√	√	√
14	스페인	√		√
15	스웨덴	√		
16	터키	√	√	√
17	영국	√	√	√
18	미국	√		√
	전체	16(89%)	9(50%)	11(61%)

자료: PwC·CASE·IHS,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for venture capital and business angels to foster the investment of SMEs and start-ups*, EU Publications, 2017. 7. 19.

- 다만,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효과가 높은 정책수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전문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투자 전문성이 낮은 개인 일반투자자는 투자단계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벤처투자 유인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 회수단계 세제지원과 중복성 검토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벤처투자의 불일치로 제도의 복잡성이 높고,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면제되나, 벤처기업의 직접투자자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직접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존재함

〈표 IV-18〉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벤처투자의 비교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벤처투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벤처투자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벤처투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벤처투자
<p>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제2호·제2호의 2·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4.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17조

V. 효과성 평가



V. 효과성 평가

1.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가. 정책목표 달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동 과세특례의 정책목표 달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투자자는 동 제도의 효과를 높게 평가한 반면 벤처기업은 ‘보통’으로 평가함
 - 개인투자자는 99%가 동 제도가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도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동 제도의 개인벤처투자 유도 효과에 대해 개인투자자,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의 순서로 긍정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벤처기업은 동 제도의 개인벤처투자 유도효과에 대한 긍정응답비율이 69.6%에 불과했음
 - 벤처기업의 경우 개인투자자를 통한 신규 자금조달비율이 낮고, 개인투자자보다 벤처캐피탈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긍정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정책목표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인의 벤처신주취득 유인효과’가 ‘투자손익 변동성 축소효과’보다 높게 평가됨
 - 개인투자자의 경우 ‘구주인수 대신 신주취득을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효과’에 대한 긍정응답비율이 95.1%이나, ‘벤처투자의 손익변동성을 줄여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는 이보다 낮은 82.5%임
 -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투자성공 시 인센티브로, 투자실패 시 별도의 세제지원이 없기 때문에 벤처투자의 손익변동성 완화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표 V-1> 동 제도의 효과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개, %, 점)

설문대상	사례수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도		구주인수 대신 신주취득을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벤처투자의 손익변동성을 줄여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위험을 줄여줌	
		긍정 비율	4점 평균	긍정 비율	4점 평균	긍정 비율	4점 평균
벤처투자자	(103)	99.0	3.63	95.1	3.55	82.5	3.12
창업투자회사	(49)	85.8	3.16	89.8	3.22	77.5	2.94
창업기획자	(91)	97.8	3.34	90.1	3.20	84.5	2.98
벤처기업	(46)	69.6	2.76	67.4	2.78	84.6	2.78

자료: 벤처투자자(개인),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결과, 동 과세특례의 업력요건은 개인투자자가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창업 5년 내 또는 벤처 인증 후 3년 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내용이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1%가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함
 - 다만, 투자금액 3천만원 이하 및 5천만원~1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자는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거나 같은 비율로 나타남
 - 실제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창업 5년 내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 벤처기업 주식’ 비중을 조사한 결과 평균 79.6%의 높은 비율을 보임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설문결과, 동 과세특례는 벤처캐피탈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투자목적의 조합 결성 시 개인투자자 유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창업투자회사 내 창업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창업투자회사의 71.4%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함

나.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 효과

- 2015년 이후 벤처캐피탈의 개인출자자 출자액 및 비중, 엔젤투자액, KOTC 시장의 벤처주식거래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

<표 V-2> 개인의 벤처투자금액 변동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펀드	개인 출자자	금액	1,805	1,179	3,350	2,974	5,710
		비중	6.8	3.1	7.3	6.2	13.9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 출자자	금액 ¹⁾	294	912	1,628	2,618	3,640
		비중	2.8	7.2	9.8	10.5	11.2
엔젤투자	직접투자		1,842	2,193	2,599	4,726	3,198
	개인투자조합		206	393	1,001	1,143	1,522
K-OTC 시장의 개인 벤처거래가액 ²⁾			659	272	348	3,755	7,030

주: 1) 신기술사업금융의 신규투자금액 × 신기술사업금융의 개인출자자 비중

2) K-OTC 벤처주식거래금액 × K-OTC 개인투자자 거래비중(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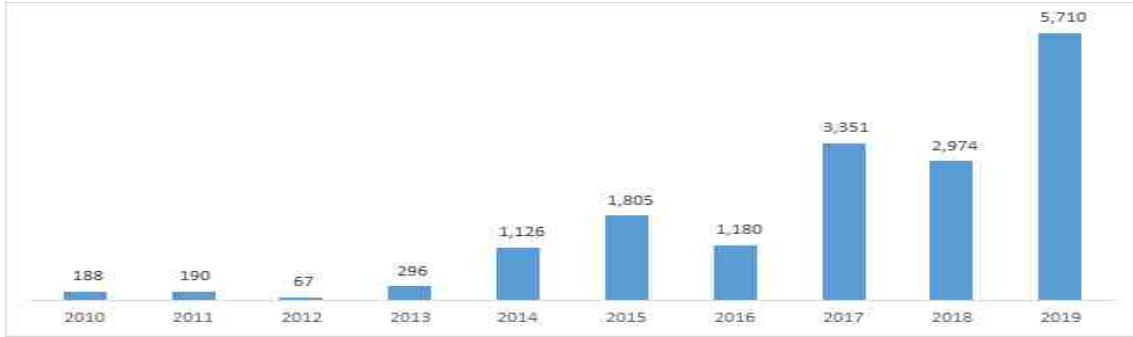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여신금융협회·K-OTC 홈페이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펀드의 개인출자자의 출자액 합계는 2015년 1,805억원에서 2019년에는 5,710억원으로 5년간 3.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7년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2017년 상승세는 8,300억원에 달하는 모태펀드의 대규모 추경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됨⁵⁴⁾
 - 2019년 벤처투자는 총 4조 2,777억원으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는데, 20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8,300억원) 등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투자된 금액이 이중 9,154억원으로 2019년 투자의 21%를 차지함

54)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 1. 29),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그림 V-1] 신규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개인출자자 출자액

(단위: 억원)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0 KVCA YEARBOOK & VENTURE CAPITAL DIRECTORY」

<표 V-3> 신규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자 구성

(단위: 개,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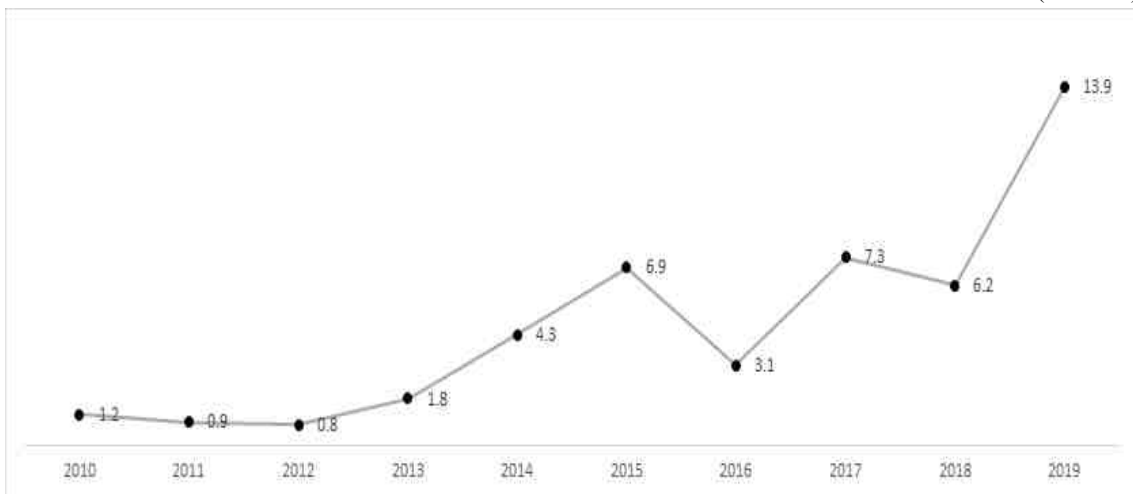
구분 (조합수)		2015 (108)	2016 (120)	2017 (164)	2018 (146)	2019 (170)	
정책 금융	모태	금액	6,075	9,110	11,569	9,357	8,590
		비중	23.2	23.8	25.2	19.4	20.9
	산업은행	금액	1,121	2,220	2,372	1,770	159
		비중	4.3	5.8	5.2	3.7	0.4
	성장금융	금액	2,215	1,450	1,610	2,905	2,657
		비중	8.5	3.8	3.5	6.0	6.5
	기타 정책기관	금액	1,736	2,415	2,626	2,671	2,286
		비중	6.6	6.3	5.7	5.5	5.6
	소계	금액	11,147	15,195	18,177	16,703	13,692
		비중	42.5	39.7	39.6	34.6	33.3
민간 출자	금융기관 (산은제외)	금액	4,514	5,815	6,271	10,227	5,328
		비중	17.3	15.1	13.7	21.2	12.9
	연금 /공제회	금액	1,155	3,420	4,380	6,380	1,990
		비중	4.4	8.9	9.5	13.2	4.8
	VC	금액	3,247	5,140	5,336	4,806	4,526
		비중	12.4	13.4	11.6	10.0	11.0
	일반법인	금액	3,557	5,899	5,324	4,659	5,185
		비중	13.6	15.4	11.6	9.7	12.6
	기타단체	금액	326	1,300	2,632	2,376	2,895
		비중	1.2	3.4	5.7	4.9	7.0
	개인	금액	1,805	1,179	3,350	2,974	5,710
		비중	6.8	3.1	7.3	6.2	13.9
	외국인	금액	456	351	462	84	1,778
		비중	1.7	0.9	1.0	0.2	4.3
	소계	금액	15,058	23,104	27,755	31,505	27,413
		비중	57.5	60.3	60.4	65.4	66.7
계	금액	26,205	38,299	45,932	48,208	41,10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0 KVCA YEARBOOK & VENTURE CAPITAL DIRECTORY」

- 신규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개인출자자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19년에는 13.9%로 상승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민간출자자 비중은 2015년 57.5%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66.7%로 증가함
 - 2019년 신규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정책금융이 33.3%, 민간출자가 66.7%이며, 개별 유형별로는 개인과 외국인 출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각각 13.9%와 4.3%를 차지함

[그림 V-2] 신규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개인출자자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0 KVCA YEARBOOK & VENTURE CAPITAL DIRECTORY」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개인출자자의 출자액 합계는 2015년 294억원에서 2019년 3,640억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냄
 - 진입요건 완화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증가와 제2벤처분 확산에 따른 기대심리 확대가 2016년 이후 급속한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됨⁵⁵⁾
 -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숫자가 2016년 70개사에서 2019년에는 113개사로 증가함

55) 여신금융협회(2020. 2), 「2019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현황 및 투자실적」

- 신규 결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개인출자자 비중은 2015년 2.8%에서 2019년에는 11.2%로 상승함
 - 정책기관의 비중은 2017년 12.4%에서 2019년 9.5%로 감소한 반면 개인투자자 비중은 2017년 9.8%에서 2019년 11.1%로 증가함

<표 V-4> 신규 결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자 구성

(단위: %)

	2017	2018	2019
여신금융회사	17.9	17.4	17.7
정책기관(기금, 정부, 정책펀드 등)	12.4	10.2	9.5
금융회사	9.7	19.3	25.3
기타 벤처캐피탈(LLC)	0.5	0.3	0.2
일반법인	48.5	41.2	34.6
개인	9.8	10.5	11.1
외국(법)인	0.1	0.2	0.2
기타	1.1	0.9	1.4
합계	100	100	100

자료: 여신금융협회, 「2019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현황 및 투자실적」(2020. 2)

- 엔젤투자액은 2015년 2,048억원에서 2019년 4,720억원으로 5년간 2.3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18년 엔젤투자액의 급증에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⁵⁶⁾
 - 2018년부터 엔젤투자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투자액 3천만~5천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0%로 높아짐
- K-OTC 시장의 개인 벤처거래가액은 2015년 659억원에서 2019년 7,03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018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K-OTC 시장 거래규모가 급증한 것이 2018년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됨⁵⁷⁾

56)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 1. 29),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57)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2020. 1. 8), 「금투협, 2019년 K-OTC 시장 동향 분석」

- 2018년 1월부터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증권거래세가 절반수준으로 인하됨(0.5% → 2017년 4월부터 0.3% → 2019년 6월부터 0.25%)
- 이러한 세제 혜택 확대의 영향으로 K-OTC 시장의 벤처주식 거래규모는 2017년 362억원에서 2018년에는 3,911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표 V-5> K-OTC 시장의 벤처주식 거래실적

(단위: 백만원, 억원, %)

연도	거래량			거래대금		
	전체	벤처기업	비중	전체	벤처기업	비중
2001	208.9	105.3	50.4	840.7	644.8	76.7
2002	190.4	85.8	45.1	584.8	439.4	75.1
2003	62.7	29.8	47.6	171.9	100.0	58.2
2004	13.6	3.4	25.1	102.2	36.6	35.8
2005	20.6	6.5	31.5	187.4	106.1	56.6
2006	28.8	4.9	16.9	190.0	80.9	42.6
2007	35.1	10.2	29.0	420.1	303.6	72.3
2008	29.1	16.3	56.0	318.3	242.6	76.2
2009	82.0	9.0	11.0	154.6	102.3	66.2
2010	87.5	25.2	28.8	580.5	398.6	68.7
2011	64.0	37.1	57.9	498.1	333.4	66.9
2012	36.1	11.0	30.4	259.1	146.1	56.4
2013	31.7	9.7	30.6	246.2	115.5	46.9
2014	53.7	24.7	46.0	2,194.6	212.4	9.7
2015	137.7	95.3	69.2	2,222.8	686.4	30.9
2016	274.0	26.9	9.8	1,590.6	283.8	17.8
2017	226.2	8.4	3.7	2,636.7	362.8	13.8
2018	157.3	23.4	14.9	6,755.1	3,911.2	57.9
2019	159.5	46.6	29.2	9,903.7	7,322.7	73.9

자료: 금융투자협회(<http://www.k-otc.or.kr/>)

- 개인의 벤처투자 급증기간에 동 제도에 별다른 제·개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의 제2벤처법을 동 과세특례가 직접적으로 견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설문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동 과세특례가 개인의 벤처투자 유도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017년 이후 벤처투자가 급증한 데에는 모태펀드의 대규모 추경,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K-OTC 시장에서 2018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조치 이후 거래규모가 급증(2,636억원 → 6,755억원)한 것을 살펴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비상장주식 매수의사결정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음

다. 투자손익 변동성 완화 효과

- 우리나라 엔젤투자자의 투자수익률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의 2019년도 엔젤투자수익률은 30.7%로 2018년의 23.2%에 비해 상승했으나, 역사적으로 25% 이상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⁵⁸⁾
- 최근 10년간 벤처투자펀드의 평균수익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 투자수익률에 상당한 편차를 보임
 - 2019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평균수익률은 35.4%와 52.1%로 양호한 수준이나, 표준편차가 117.4%와 61.4%로 평균을 상회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2016년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은 2010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함

<표 V-6> 최근 10년간 벤처투자펀드 평균수익률과 표준편차

(단위: %)

해산연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평균수익률	표준편차	평균수익률	표준편차
2010	18.524	53.839	-0.446	-
2011	9.938	52.173	없음	없음
2012	7.815	39.931	19.636	24.393
2013	16.600	65.980	117.529	154.098
2014	6.139	37.287	43.126	31.042
2015	25.190	73.034	103.519	96.150
2016	-2.988	55.458	64.400	132.068
2017	17.935	54.031	35.145	72.579
2018	35.772	110.129	28.343	28.378
2019	35.449	117.471	52.172	61.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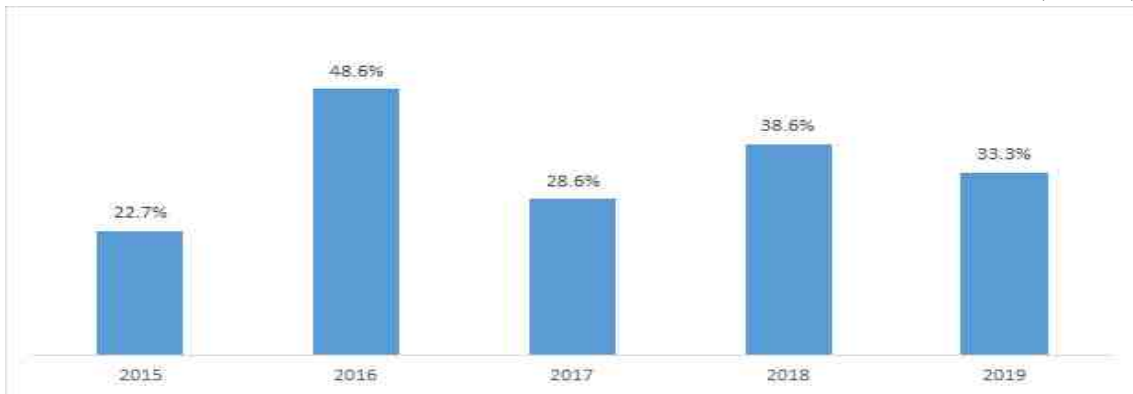
주: 각 연도에 해산한 펀드의 단순수익률의 평균과 표준편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58) The angel market in 2019: Commitments by angels increase with a significant rise in deal valuations, Center for venture research

- 최근 5년간 해산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손실보고비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22.7~48.6%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손실보고비율은 33.3%로 2019년에 해산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군데 중 1군데가 손실을 보고함

[그림 V-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손실보고비율

(단위: %)



주: 1. 투자수익률=(회수액-투자액)/투자액
 2. 회수액은 이미 감액이 반영된 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가공

- 최근 5년간 해산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률 분포를 살펴본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편차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벤처투자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률의 표준편차는 2015년 73.034에서 2019년에는 117.471로 증가함
- 2019년 기준 투자수익률 최솟값은 -80.8%인데 반해 최댓값은 627.5%에 달함

<표 V-7> 최근 5년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률 분포

(단위: 건, %)

해산 연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25%	중간값	75%	최댓값
2015	22	25.190	73.034	-85.382	-	12.270	48.750	252.235
2016	37	-2.988	55.458	-83.682	-46.761	-	8.198	163.372
2017	35	17.935	54.031	-91.291	-29.022	18.836	54.678	161.735
2018	44	35.772	110.129	-99.830	-20.380	10.985	44.550	462.378
2019	36	35.449	117.471	-80.784	-26.104	19.169	61.146	627.495

주: 1. 투자수익률=(회수액-투자액)/투자액
 2. 회수액은 이미 감액이 반영된 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가공

- 벤처투자의 높은 손실보고비율에도 불구하고 투자실패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족으로 투자손익 변동성 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주요국은 벤처투자손실을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통상소득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벤처투자위험을 낮추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실패 시 세제상 혜택이 부족한 편으로 판단됨

2.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

- 2010년 이후 동 제도는 6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이 중 세 번은 일몰기간 연장이고 세 번은 특례대상의 추가임
 - 2012년 농식품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개인출자자, 2017년 창업기획자의 개인출자자, 2020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출자가 특례대상에 추가됨

<표 V-8> 2010년 이후 동 과세특례의 주요 개정사항

개정일자 (도입일자)	개정내용
2011. 12. 31. (2012. 1. 1.)	○ 특례대상의 확대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2013. 1. 1. (2013. 1. 1.)	○ 일몰연장: 2012. 12. 31. → 2014. 12. 31.
2014. 12. 23. (2015. 1. 1.)	○ 일몰연장: 2014. 12. 31. → 2017. 12. 31.
2016. 12. 20. (2017. 1. 1.)	○ 특례대상의 확대: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2017. 12. 19. (2018. 1. 1.)	○ 일몰연장: 2017. 12. 31. → 2020. 12. 31.
2019. 12. 31. (2020. 1. 1.)	○ 특례대상의 확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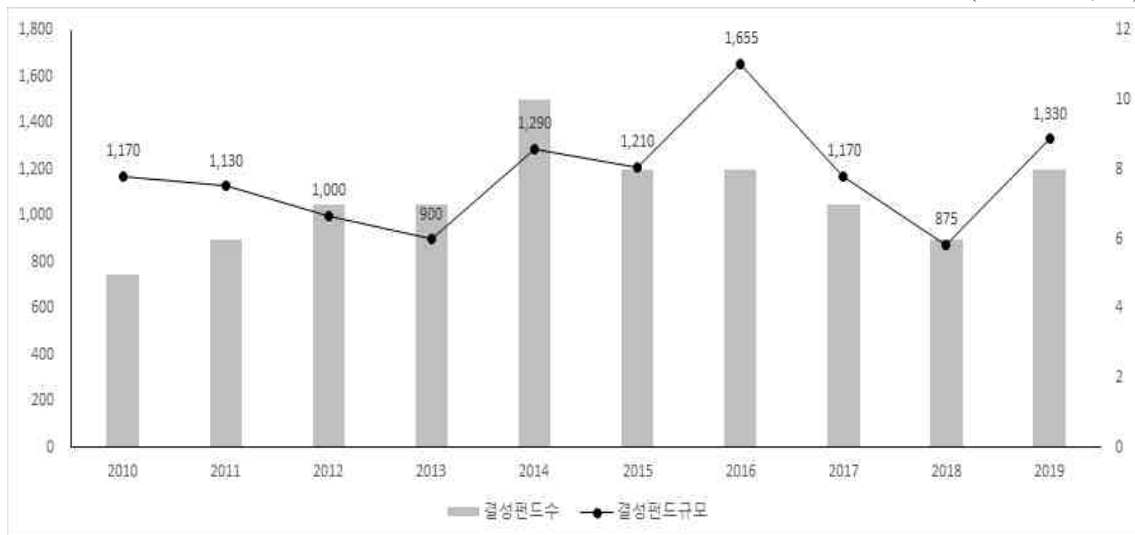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가. 2011년 세법개정이 정책대상자의 행태에 가져온 변화

- 2011년 「조특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농식품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개인출자자가 특례대상에 추가됨
- 농식품투자조합 개인출자자가 특례대상에 추가된 직후 신규 결성 펀드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신규 결성 펀드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세법개정 직후인 2012년 신규 결성 펀드수는 7개로 전년 6개 대비 1개 증가함
 - 반면 신규 결성 펀드규모는 전년의 1,130억원에서 2012년 1,000억원, 2013년 900억원으로 감소함

[그림 V-4] 연도별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펀드 수 및 펀드규모

(단위: 억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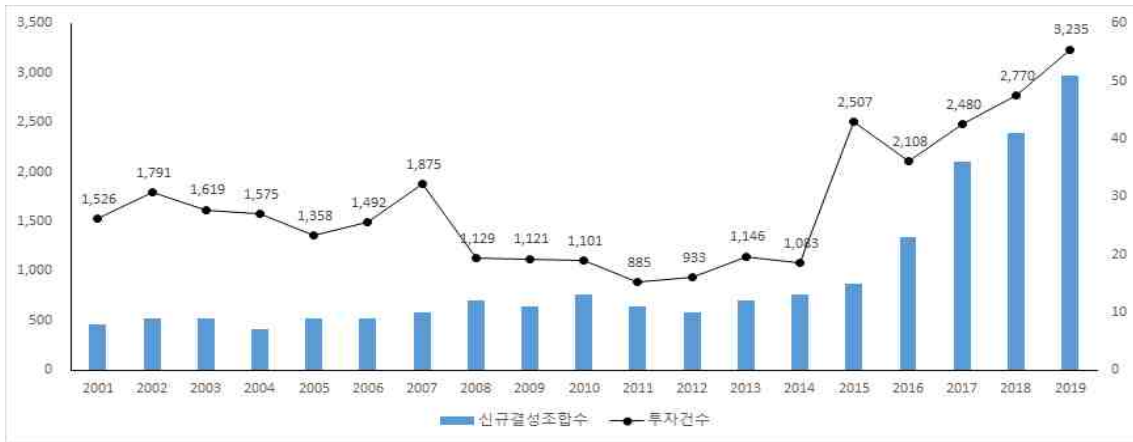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개인출자자가 특례대상에 추가된 직후 신규 결성 조합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신규 투자건수는 소폭 증가함
 - 세법개정 직후인 2012년의 신규 결성 조합수는 10개로 전년 11개 대비 1개 감소한 반면 투자건수는 2011년 885건에서 2012년 933건으로 증가함
 - 2015년을 기점으로 신규 결성 조합수 및 투자건수가 급증한바, 이는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 V-5] 연도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결성조합 수 및 투자건수

(단위: 개사, 건)



자료: 여신금융협회, 계간 「여신금융」 제61호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11년 「조특법」 개정이 농식품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증가를 유인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나. 2016년 세법개정이 정책대상자의 행태에 가져온 변화

- 2016년 「조특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이 특례대상에 추가됨
- 창업기획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 세법개정이 창업기획자의 개인출자자 모집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함
 - 동 세법개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7년 이전 창업기획자 자료가 필요하나, 창업기획자 등록이 201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세법개정 전후 창업기획자 숫자나 출자자 구성 등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 2017년부터 창업기획자 등록이 개시되었으나, 중소벤처부에 벤처투자실적이나 투자자 구성에 대한 자료 등을 신고한 창업기획자 수가 극소수여서 동 과세특례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벤처투자실적 및 투자자 구성에 관한 자료를 벤처중소기업부에 신고한 창업기획자 수는 2017년 6개, 2018년 8개, 2019년 5개에 불과함
 -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본 연구는 창업기획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 세법개정의 효과를 파악함

- 창업기획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창업기획자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이후 개인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에 응답한 창업기획자의 81.3%가 동 세법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 유치가 용이해졌다고 응답함
 - 동 세법개정 이후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71.4%로 조사됨

<표 V-9> 창업기획자 특례대상 추가가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 유치에 미친 효과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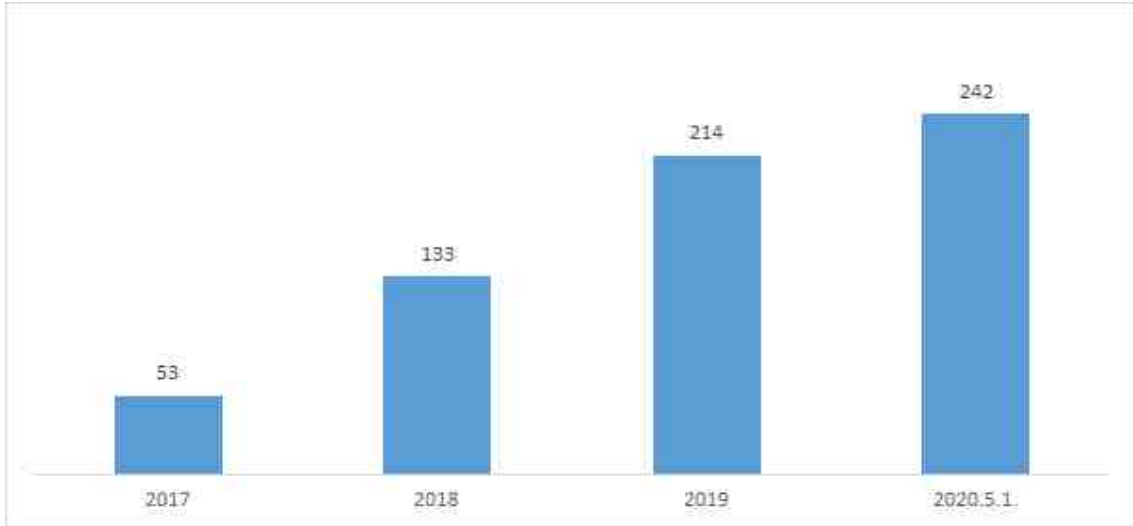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종합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체	(91)	18.7	62.6	17.6	1.1	81.3	18.7	
창업기획자 등록연도	1년 이내	(5)	0.0	60.0	40.0	0.0	60.0	40.0
	1~2년 이내	(23)	26.1	60.9	13.0	0.0	87.0	13.0
	2~3년 이내	(24)	16.7	70.8	12.5	0.0	87.5	12.5
	3~4년 이내	(20)	20.0	55.0	20.0	5.0	75.0	25.0
	5년 이상	(19)	15.8	63.2	21.1	0.0	78.9	21.1
담당 창업자 수	0~4개	(22)	13.6	63.6	22.7	0.0	77.3	22.7
	5~9개	(13)	30.8	61.5	7.7	0.0	92.3	7.7
	10~49개	(35)	14.3	60.0	22.9	2.9	74.3	25.7
	50개 이상	(21)	23.8	66.7	9.5	0.0	90.5	9.5

자료: 창업기획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 실제로 창업기획자 숫자는 2017년 53개에서 2020년 5월 현재 242개로 4.2배가 증가함
 -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회사 형태가 70.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비영리법인(14.5%), 창업투자회사(6.3%) 순임

[그림 V-6] 창업기획자 등록자 수

(단위: 개)



주: 창업기획자는 2017년 최초 등록 시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 1. 29), 「지난해 벤처투자자와 2018년 엔젤투자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https://www.k-startup.go.kr/main.do>

<표 V-10> 창업기획자의 유형

(단위: 개, %)

항목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창투자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LLC	합계
기업수	170	35	15	13	2	2	5	242
비율	70.2	14.5	6.3	5.4	0.8	0.8	2.1	100

주: 2020. 5. 1. 기준
 자료: <https://www.k-startup.go.kr>

-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실적을 신고한 19개 창업기획자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업기획자 1사당 벤처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개인투자자 비중은 뚜렷한 추세가 발견되지 않음
 - 1사당 벤처투자액은 2017년 5억 6천만원에서 2019년에는 2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개인투자자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70.2%, 2019년 47.9%로 연도별 뚜렷한 경향이나 추세를 발견하기 어려움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체 창업기획자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운영실적을 신고한 극소수 창업기획자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V-11>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금액 및 투자자 구성

(단위: 백만원, %)

연도	식별 번호	투자금액	투자자 구성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2017	A1	50	-	-	100.0	-
	A2	1,112	-	77.5	22.5	-
	A3	1,218	4.3	54.4	8.6	32.1
	A4	10	-	100.0	-	-
	A5	399	5.5	71.8	19.8	2.9
	A6	599	-	3.2	44.6	52.2
	평균	565	1.6	51.1	32.6	14.5
2018	B1	1,920	-	-	100.0	-
	B2	220	-	77.4	17.1	5.5
	B3	200	-	100.0	-	-
	B4	1,822	-	100.0	-	-
	B5	10	-	100.0	-	-
	B6	921	15.7	84.3	-	-
	B7	250	-	100.0	-	-
	평균	974	14.5	70.2	14.6	0.7
2019	C1	50	-	100.0	-	-
	C2	6,379	17.0	65.7	17.0	-
	C3	1,800	26.3	73.8	-	-
	C4	900	-	-	100.0	-
	C5	4,620	100.0	-	-	-
	평균	2,750	28.7	47.9	23.4	-

주: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금액과 투자자 구성을 신고한 2017년 6개, 2018년 8개, 2019년 5개의 창업기획자의 신고자료를 분석한 자료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가공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16년 세법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개인 출자자가 특례 대상에 추가된 것에 대해 창업기획자는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를 통해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음
 - 창업기획자의 운영실적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말 기준 170개 창업기획자 중 3%에 해당하는 5개사만이 운영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함

다. 2019년 세법개정이 정책대상자의 행태에 가져온 변화

- 2019년 「조특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출자가 특례대상에 추가됨

- 구체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됨
- 업력 3년 내 창업초기기업의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을 살펴본 결과, 과세특례 대상인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의 펀딩 시도건수가 최근 3년 내 총 1건에 불과하며, 세법개정 이후에도 펀딩 시도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창업초기기업들의 클라우드 펀딩 시도건수는 연 144~160건에 달하는 반면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의 펀딩 시도건수는 2019년 1건이 유일함
- 올해부터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출자가 특례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에 세법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업력 3년 내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의 펀딩 시도건수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용이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성은 인정됨

〈표 V-12〉 업력 3년 내 기업의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단위: 건, 백만원, 명, %, 천원)

항목	2017		2018		2019		2020. 4. 9.	
	적격기업	기타	적격기업	기타	적격기업	기타	적격기업	기타
총펀딩 시도건수	-	160	-	151	1	144	-	23
총펀딩 성공건수	-	99	-	84	1	89	-	12
펀딩성공률	-	62	-	56	100	62	-	52
총펀딩 성공금액	-	14,456	-	12,610	933	14,570	-	2,557
개인투자자 수	-	9,281	-	6,846	298	7,656	-	1,665
개인투자자 비중	-	97.5	-	97.8	96.8	98.4	-	98.7
개인투자자 1인당 평균 투자금액	-	899	-	1,205	1,717	1,463	-	1,476

주: 기술우수중소기업, R&D지출 연 3천만원 이상 기업, TCB평가 우수기업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3. 유사지원제도와 효과 비교

가.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효과 비교

-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동 제도보다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제도와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중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세제 혜택을 질문한 결과, 개인투자자의 68%가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선택함

<표 V-13> 벤처투자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세제 혜택

(단위: 명, 개소, %)

구분	사례수	벤처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벤처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투자자	(103)	68.0	32.0
창업투자회사	(49)	59.2	40.8
벤처기업	(46)	54.3	45.7
창업기획자	(91)	71.4	28.6

자료: 벤처투자자(개인), 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 창업기획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 효과적인 이유로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투자결과에 관계없이 절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 가장 높게 조사됨
 - 개인투자자의 84.3%가 투자결과에 관계없이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점 때문에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벤처투자 유도에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표 V-14> 벤처 출자금 소득공제가 더 효과적인 이유(전체)

(단위: 명, 개소, %)

구분	사례수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결과에 관계없이 절세효과가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보다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더 크므로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지원 대상 범위가 더 넓으므로	기타
벤처투자자	(70)	84.3	8.6	5.7	1.4
창업투자회사	(29)	69.0	20.7	10.3	0.0
벤처기업	(25)	44.0	32.0	20.0	4.0
창업기획자	(65)	72.3	18.5	9.2	0.0

자료: 벤처투자자(개인), 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 창업기획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한편 투자금액이 크고, 회수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가 투자금액이 적고, 회수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에 비하여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투자액 3억원 이하 구간의 개인투자자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지만, 투자액 3억원 초과 구간의 개인투자자는 동 제도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벤처투자회수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지만, 벤처투자회수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는 동 제도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V-15> 벤처투자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은 세제 혜택(개인투자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벤처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벤처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체	(103)	68.0	32.0	
투자금액 합계	1,500만원 이하	(10)	80.0	20.0
	~3,000만원 이하	(11)	100.0	0.0
	~5,000만원 이하	(10)	90.0	10.0
	~1억원 이하	(14)	64.3	35.7
	~3억원 이하	(33)	63.6	36.4
	~5억원 이하	(11)	45.5	54.5
	5억원 초과	(14)	50.0	50.0
소득구간	1,200만원 이하	(6)	50.0	50.0
	~4,600만원 이하	(8)	87.5	12.5
	~8,800만원 이하	(35)	68.6	31.4
	~1억5천 이하	(29)	65.5	34.5
	~3억원 이하	(18)	66.7	33.3
	~5억원 이하	(5)	80.0	20.0
	5억원 초과	(2)	50.0	50.0
벤처투자 회수경험	회수	(31)	45.2	54.8
	미회수	(72)	77.8	22.2

자료: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동 제도보다 개인의 벤처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더 크지만, 개인투자자의 투자규모 및 회수경험에 따라 상대적인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됨

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와 효과 비교

-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실적은 2017년 24억원, 2018년 64억원, 2019년에는 35억원으로 연도별로 큰 폭의 변동을 보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실적이 2019년 기준 15억 2,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두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면제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표 V-16〉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의 감면실적

(단위: 억원)

항목	감면실적		
	2017	2018	201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7.71	38.61	15.27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92	3.34	4.41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03	0.27	0.35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2.28	21.20	13.2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에 한함)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11	0.22	0.48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함)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73	0.42	1.07
합계	24.77	64.06	34.83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투자성공 시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증권거래세 면제는 투자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개인의 벤처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벤처 투자 활성화 효과는 동 제도가 증권거래세 면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개인투자자가 벤처캐피탈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만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향유할 수 있고,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4. 조세지출규모 추정

가. 조세지출규모 추정결과와 평가

- 동 제도는 비과세 혜택의 특성상 개인투자자가 비과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 추정에 어려움이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가 집계되고 있지만, 세부내역이나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 추정결과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81억 6천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31억 3천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며, 전체 조세지출의 38.4%를 차지함
-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출규모 및 비중이 간접투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2019년 기준 약 9억 6천만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11.7%에 불과함
- K-OTC 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K-OTC 벤처주식 양도와 관련한 조세지출 비중이 2018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의 K-OTC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규모는 2017년 4천만원(전체 조세지출규모의 2.1%)에서 2018년에는 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다시 29억 7천만원으로 증가함

□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간접투자 및 K-OTC 주식 양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바, 시장실패위험이 높은 고위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간접투자는 주로 사모펀드의 형태로 출자자를 모집하나, 사모펀드는 출자자 숫자가 49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의 벤처참여 투자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공인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혜기업 수 또한 34개에 불과한데 조세지출규모는 벤처 직접투자의 3배 이상으로 분석됨

<표 V-17> 조세지출규모 추정

(단위: 억원, %)

정책대상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개인투자자 ¹⁾	5.6	26.1	6.2	11.4	4.3	5.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²⁾	10.9	50.8	21.5	39.5	31.3	38.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³⁾	1.7	7.9	3.3	6.0	1.6	1.9
농식품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⁴⁾	0.0	0.0	0.0	0.1	0.0	0.1
신기술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⁵⁾	0.9	4.1	1.8	3.4	2.6	3.1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자 ⁶⁾	1.3	6.3	6.1	11.2	9.6	11.7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 ⁷⁾	0.6	2.8	2.5	4.5	2.4	3.0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의 K-OTC거래 ⁸⁾	0.4	2.1	13.0	23.9	29.7	36.4
합계	21.5	100.0	54.5	100.0	81.6	100.0

- 주: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개인투자자의 양도가액÷(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양도소득세율(10%)
-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창업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비중×양도소득세율(10%)
- 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모태출자 펀드의 개인투자자 비중÷(1+모태출자 펀드의 회수수익률)×모태출자 펀드의 회수수익률×양도소득세율(10%)
- 4)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모태출자 펀드의 개인투자자 비중÷(1+모태출자 펀드의 회수수익률)×모태출자 펀드의 회수수익률×양도소득세율(10%)
- 5)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신기술금융사의 개인출자자 비중÷(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양도소득세율(10%)
- 6) 3년 전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금액×창업 5년 내 또는 벤처인증 후 3년 내 벤처기업 투자비율×벤처펀드 회수수익률×(1 - 3년 이내 투자회수비율)×양도소득세율(10%)
- 7)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가액÷(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양도소득세율(10%)
- 8) K-OTC 벤처거래가액×K-OTC 시장의 개인투자자 거래비중÷(1+벤처펀드 회수수익률)×벤처펀드 회수수익률×(1-창업자 지분율)×양도소득세율(10%)

나. 조세지출규모 산정과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개인투자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개인투자자의 양도가액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개인투자자가 제출한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정보를 기초로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회수수익률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를 통해 투자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가액은 2017년 368억원에서 2019년에는 164억원으로 감소함
 - 그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벤처투자수익률 상승으로 조세지출 추정액은 2017년 5억 6천만원, 2018년 6억 2천만원, 2019년 4억 3천만원으로 연도별 편차가 크지 않음

〈표 V-1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가액 ¹⁾	368.0	236.3	164.9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벤처투자수익률 ²⁾	17.9	35.8	35.4
다.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가÷(1+나)×나]	56.0	62.3	43.1
라. 조세지출추정액[=다×10%]	5.60	6.23	4.31

주: 1) 개인투자자가 제출한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국세청 제공자료)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벤처투자수익률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자료: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를 기준으로 저자 가공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개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및 개인출자자 비중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받은 ‘개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개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개인출자자 비중’을 곱한 후 이를 연도별로 합산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합계는 2017년 109억원에서 2018년 215억원, 2019년 31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표 V-1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¹⁾	109	215	313
나. 조세지출추정액[=다×10%]	10.9	21.5	31.3

주: 1) 개별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개별 창업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비중의 연도별 합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양도가액과 모태출자펀드 회수수익률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
 -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에 각 연도별 모태출자펀드의 개인출자자 구성비를 곱하여 개인투자자 양도분을 추정함
 - 그런 다음 개인투자자 양도분에 모태출자펀드 회수수익률을 적용하여 주식양도차익을 추정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은 2017년 2,455억원, 2018년 4,240억원, 2019년 2,648억원으로 연도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임

- 주식양도차액은 크지만, 모태출자펀드의 개인출자자 구성비가 1.2%로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조세지출추정액은 1억 7천만~3억 3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표 V-20〉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¹⁾	2,455.1	4,240.8	2,648.2
나. 모태출자펀드의 개인출자자 구성비 ²⁾	1.2	1.3	1.2
다. 모태출자 펀드의 회수수익률 ³⁾	125.8	155.4	96.3
라.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가×나÷(1+다)×다]	16.9	32.8	15.6
마. 조세지출추정액[=라×10%]	1.69	3.28	1.56

주: 1)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2) KVIC MarketWatch

3) KVIC MarketWatch, 2017년 모태출자 펀드의 회수수익률 자료를 구할 수 없어 2018년과 2019년의 평균값을 사용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4) 농식품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 농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농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양도가액과 모태출자펀드 회수수익률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
 -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상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에 각 연도별 모태출자펀드의 개인출자자 구성비를 곱하여 개인투자자 양도분을 추정함
 - 그런 다음 개인투자자 양도분에 모태출자펀드 회수수익률을 적용하여 주식양도차익을 추정함
 - 농식품투자조합의 개인출자자 구성비 및 회수수익률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모태출자펀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은 2017년 5억 9천만원에서 2019년에는 70억 3천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 2018년부터 농식품투자조합의 회수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식양도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개인출자자 구성비가 낮아 최종적인 조세지출추정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됨

〈표 V-21〉 농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¹⁾	5.9	53.7	70.3
나. 모태출자펀드의 개인출자자 구성비 ²⁾	1.2	1.3	1.2
다. 모태출자펀드의 회수수익률 ³⁾	125.8	155.4	96.3
라.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가×나÷(1+다))×다]	0.0	0.4	0.4
마. 조세지출추정액[=라×10%]	0.00	0.04	0.04

주: 1)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국세청 제공자료)

2) 농식품투자조합의 개인출자자 구성비가 모태출자펀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KVIC MarketWatch)

3) 농식품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이 모태출자펀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KVIC MarketWatch, 2017년 모태출자 펀드의 회수수익률 자료를 구할 수 없어 2018년과 2019년의 평균값을 사용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5) 신기술투자조합의 개인투자자

- 신기술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신기술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양도가액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에 신기술금융사의 개인출자자 구성비를 곱하여 개인투자자 양도분을 추정함
 - 그런 다음 개인투자자 양도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을 적용하여 주식양도차익을 추정함
 - 신기술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회수수익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은 2017년 584억원에서 2019년 881억원으로 증가함
- 신기술금융사의 개인출자자 구성비 및 벤처투자수익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조세지출추정액 또한 2017년 8,700만원에서 2019년에는 2억 5,600만원으로 증가함

〈표 V-22〉 신기술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가.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¹⁾	584.3	667.5	881.4
나. 신기술금융사의 개인출자자 구성비 ²⁾	9.8	10.5	11.1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벤처투자수익률 ³⁾	17.9	35.8	35.4
라.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가×나÷(1+다)×다]	8.71	18.47	25.60
마. 조세지출추정액[=라×10%]	0.87	1.85	2.56

주: 1)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상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2)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3) 신기술투자조합의 벤처투자수익률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6)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자

- 개인투자자의 벤처직접투자 관련 조세지출액은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용 투자확인서 발급액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 3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2017년, 2018년, 2019년 조세지출액은 3년 전인 2014년, 2015년, 2016년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액을 이용하여 추정함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액 중 업력요건(창업 후 5년 내 또는 벤처 인증 후 3년 내)과 의무보유기간(3년)요건을 충족한 것을 추출한 후, 벤처펀드수익률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추정함
 -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수익률 정보를 구할 수 없으므로 벤처펀드수익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조세지출추정액이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019년 9억 6천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동 금액은 2014년~2016년 엔젤투자액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로 2017년 이후 엔젤투자액이 급등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벤처직접투자 관련 조세지출액은 이후 연도에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표 V-23〉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가.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액 ¹⁾	959	2,048	2,586
나. 업력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투자비율 ²⁾	63.4	63.4	63.4
다. 벤처주식 취득 후 3년 내 매각비율 ³⁾	35.5	35.5	35.5
라. 벤처펀드수익률 ⁴⁾	3.4	7.3	9.1
마.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가×나×(1-다)×라]	13.4	61.1	95.8
바. 조세지출추정액[=마×10%]	1.3	6.1	9.6

주: 1) 2014년, 2015년, 2016년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액
 2) 2016년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액 중 업력요건 충족 벤처기업 투자비율(2014년과 2015년 신청액 자료를 구할 수 없어 2014년과 2015년은 2016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3) 개인투자자가 벤처주식을 취득한 후 3년 내 매각한 비율(벤처투자자(개인) 설문자료 이용)
 4) 개인투자자 벤처투자수익률 정보를 구할 수 없어 벤처펀드수익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가공

7)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

-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가 신고한 증권거래신고서상 주식양도가액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벤처투자수익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 개인투자자는 전액 신주인수를 통해 창업기획자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함
 - 창업기획자지분의 회수수익률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벤처투자수익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가액은 2017년 39억원에서 2018년 이후 93억 원대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조세지출추정액은 2017년 6천만원에서 2018년 이후 2억 4,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표 V-24>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가.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가액 ¹⁾	39.49	93.06	93.45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벤처투자수익률 ²⁾	18	36	35
다.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가÷(1+나)×나]	6.0	24.5	24.5
라. 조세지출추정액[=다×10%]	0.60	2.45	2.45

주: 1)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가 신고한 증권거래신고서상 주식양도가액(전액 신주인수로 가정함)

2) 창업기획자 지분의 투자수익률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벤처투자수익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가공

8)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의 K-OTC 거래

□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의 K-OTC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K-OTC 벤처거래가액과 벤처펀드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수익률 정보를 구할 수 없어 벤처펀드수익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벤처기업의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창업자지분율이 대주주지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소액주주 양도분을 추정함

□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의 K-OTC 거래가액은 2017년 363억원에서 2018년 3,911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19년에는 다시 7,323억원으로 증가함

<표 V-25>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의 K-OTC 거래와 관련된 조세지출규모 추정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가. K-OTC 벤처거래가액 ¹⁾	363	3,911	7,323
나. K-OTC 시장의 개인투자자 비중 ²⁾	96.0	96.0	96.0
다.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수익률 ³⁾	3.43	7.30	9.06
라. 벤처기업의 대주주비율 ⁴⁾	61.7	49.1	49.1
마.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가×나×(1-다)×라]	4.42	130.02	297.25
바. 조세지출추정액[=마×10%]	0.4	13.0	29.7

자료: 1)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tc.or.kr/>)

2) 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17. 11.)

3) 개인투자자 벤처투자수익률 정보를 구할 수 없어 벤처펀드수익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이용)

4) 벤처기업의 대주주지분율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어 벤처기업 창업자지분율을 사용함(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이용)

- 2018년부터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와 함께 거래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 거래규모의 증가와 함께 조세지출추정액 역시 2017년 4천만원에서 2019년에는 29억 7천만원으로 증가함

VI. 결론 및 개선방안



VI. 결론 및 개선방안

1.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

- 과세특례의 정책목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이들 기업의 초기 창업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엔젤투자자의 투자수익과 손실의 불균형을 치유하는 것임
- 효과성 분석결과, 동 과세특례제도가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치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제도의 직간접 수혜자인 개인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이 동 제도가 지닌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도효과에 대해 높게 평가함
 - 다만, 벤처기업은 동 제도의 효과를 ‘보통’으로 평가하였으며, 개인투자자보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희망하였는데, 이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후속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15년 이후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의 개인출자자 출자액 및 개인출자자 비중이 크게 상승했고, 엔젤투자액 또한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이후 동 제도의 특별한 제·개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2벤처 붐에 동 과세특례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모태펀드의 대규모 추경,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과 더불어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동 제도는 회수경험이 있고, 투자액이 큰 전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치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투자액이 적은 일반투자자는 투자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 즉시 세부담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K-OTC 시장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 시행 이후 K-OTC 시장의 거래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회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강력한 투자유인 도구가 될 수 있음
 - K-OTC 시장의 거래규모는 2017년 2,636억원에서 2018년 6,75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9,903억원으로 급증함

〈표 VI-1〉 K-OTC 시장의 벤처주식 거래실적

(단위: 백만원, 억원)

연도	거래량			거래대금		
	전체	벤처기업	비중	전체	벤처기업	비중
2001	208.9	105.3	50.4	840.7	644.8	76.7
2002	190.4	85.8	45.1	584.8	439.4	75.1
2003	62.7	29.8	47.6	171.9	100.0	58.2
2004	13.6	3.4	25.1	102.2	36.6	35.8
2005	20.6	6.5	31.5	187.4	106.1	56.6
2006	28.8	4.9	16.9	190.0	80.9	42.6
2007	35.1	10.2	29.0	420.1	303.6	72.3
2008	29.1	16.3	56.0	318.3	242.6	76.2
2009	82.0	9.0	11.0	154.6	102.3	66.2
2010	87.5	25.2	28.8	580.5	398.6	68.7
2011	64.0	37.1	57.9	498.1	333.4	66.9
2012	36.1	11.0	30.4	259.1	146.1	56.4
2013	31.7	9.7	30.6	246.2	115.5	46.9
2014	53.7	24.7	46.0	2,194.6	212.4	9.7
2015	137.7	95.3	69.2	2,222.8	686.4	30.9
2016	274.0	26.9	9.8	1,590.6	283.8	17.8
2017	226.2	8.4	3.7	2,636.7	362.8	13.8
2018	157.3	23.4	14.9	6,755.1	3,911.2	57.9
2019	159.5	46.6	29.2	9,903.7	7,322.7	73.9

자료: 금융투자협회(<http://www.k-otc.or.kr/>)

- 타당성 분석결과, 벤처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정부 정책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하여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할 정책 타당성이 인정됨
 - 업력 5년 이하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지원금 의존도는 7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임

- 개인투자자는 세제지원이 벤처투자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 유형으로 동 과세특례가 개인의 벤처투자 유도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간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동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개인투자자 특성에 따라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에 차이가 있고, 경제주체별로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벤처투자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소액일반투자자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투자규모가 큰 전문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한 투자자 유형에 대하여 벤처투자자는 개인투자자, 창업투자회사는 일반 법인투자자,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⁵⁹⁾

2. 쟁점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

가.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직접투자가 간접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간접투자의 과세특례 대상이 직접투자보다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에 역행됨
- 직접투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간접투자는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투자에 폭넓게 적용됨
- 직접투자는 창업 후 5년 내 또는 벤처 인증 후 3년 내 기업에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간접투자는 업력요건이 없으므로 창업 후 5년 후 벤처기업에 투자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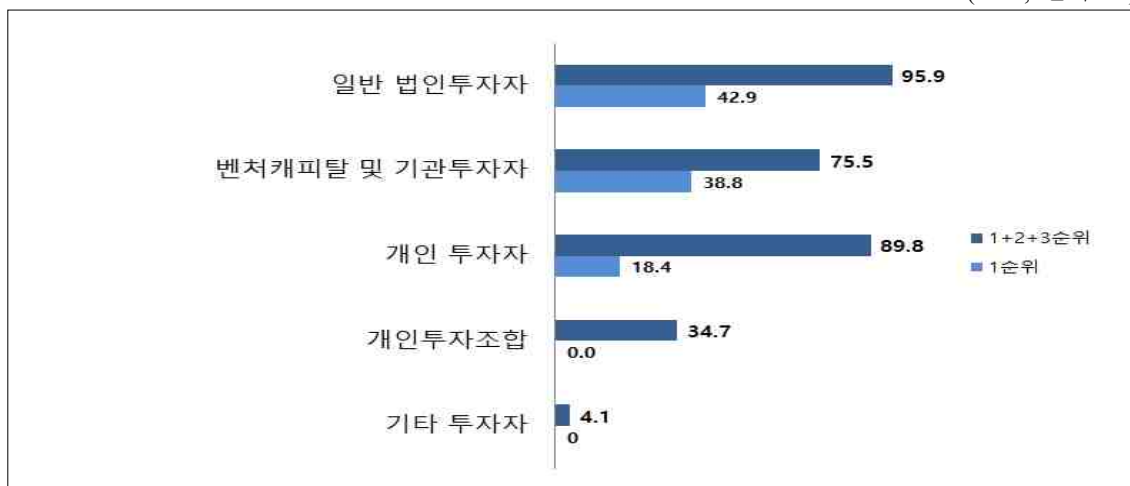
59) 창업투자조합의 운영주체인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최대 모집 가능한 출자자 숫자가 49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거액 투자가 가능한 일반 법인투자자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유치가 후속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개인의 직접투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엄격한 특례요건 적용으로 인하여 동 과세 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중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전체의 11.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비중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 관련 조세지출 비중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를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향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

- 간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사모펀드의 형태로 운영되는바, 사모펀드는 모집 가능한 유한책임조합원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투자자의 저변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
 - 모집 가능한 투자자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은 거액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자 또는 법인투자자를 개인투자자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창업투자회사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한 투자자 유형을 질문한 결과 일반법인투자자를 꼽은 응답비율(42.9%)이 개인투자자(18.4%)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1]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한 투자자 유형(창업투자회사)

(n=49, 단위: %)



자료: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설문결과

- 아울러 직접투자는 개인투자자의 출자금이 전액 벤처기업에 유입되나, 간접투자는 출자금 중 일부만 창업자 및 벤처기업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직접투자가 간접투자에 비하여 벤처기업 자금조달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투자의무비율을 준수하였다면 그 외 자금은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함

〈표 VI-2〉 벤처캐피탈 투자제도의 비교

	신기술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¹⁾
근거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업무집행 조합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회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회사, 외국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회사, 외국투자회사
설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출자하여 설립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 • 유한책임조합원 수(49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 총액 (20억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 수(49인 이하) • GP 최소 출자비율 (출자금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 총액 (30억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 수(49인 이하) • GP 최소 출자비율 (출자금의 1%) • 모태조합 출자 필수(M&A, 세컨더리, 의무비율준수 등 경우 예외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 총액 (20억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 수(49인 이하) • GP 최소 출자비율 (출자금의 1%) • 모태조합 출자 없이 결성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자와 공동 GP 가능
투자대상	신기술사업자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투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구주, CB, BW 등 • 타 벤처조합 인수 • 기술 관련 무형 자산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인수 • 신규 CB, BW, EB • 프로젝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 구주, CB, BW 등 • 지식재산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인수 • 신규 Cb, BW, EB • 프로젝트 투자 • 조건부지분투자 • 기타 중기부장관 고시 • FUND OF FUND 가능

	신기술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¹⁾
투자의무 비율 규제	없음	3년 내 출자금의 40%를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 (창업투자의무)	없음	총자산규모별로 투자의무 비율 차등(운용 중인 총 자산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투자금지 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제외, 사행산업, 미풍양속 저해 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 등	금융기관 등 제한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벤처투자만을 제한하고 업종제한 없음
상장주식 취득제한	제한 없음	출자금의 20%	제한 없음 (규약 제한)	출자금의 20%
중견기업 투자	제한 없음	창업투자의무비율 준수 후	불가능	투자의무 준수 후 가능(투자의무 총자산비율 완화)
해외투자	제한 없음	선창업투자의무준수 후 출자금의 40% 이내	제한 없음	투자의무 준수 후 가능(투자의무 총자산비율 완화)
지분취득 한도	제한 없음	50% 이내(6개월 이상 보유 7년 이내 매각 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투자의무 준수/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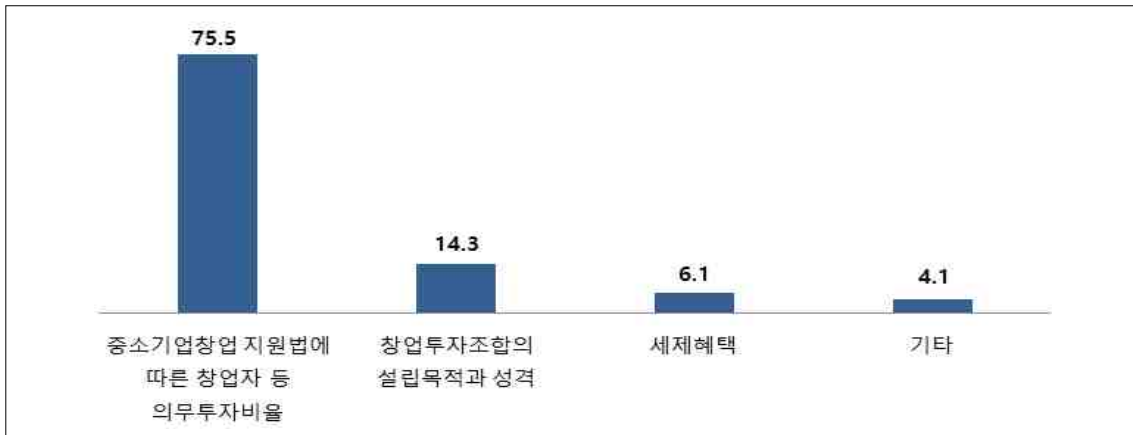
주: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함

자료: KVCA, monthly magazine, Vol. 140

- 창업투자회사가 출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할 때는 세제 혜택보다 근거법률에 따른 의무투자비율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신주를 취득할 것인지 구주를 인수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법률에 따른 의무투자비율이 투자방법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75.5%), 세제 혜택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6.1%)

[그림 VI-2] 창업투자회사의 신주 취득과 구주 인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n=49, 단위: %)



자료: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벤처시장의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접투자기구의 운영 주체인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하고, 벤처투자자(개인)와 창업기획자, 벤처회사 모두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개인투자자 28.2%, 벤처기업 3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VI-3>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세제 혜택 집중 형태

(단위: 명, 개소, %)

구분	사례수	직접투자	간접투자	무차별
벤처투자자	(103)	56.3	28.2	15.6
창업투자회사	(49)	28.6	61.2	10.2
벤처기업	(46)	52.2	34.8	13.0
창업기획자	(91)	45.1	36.3	18.7

자료: 벤처투자자(개인), 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 창업기획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동 과세특례의 입법취지가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벤처투자위험을 낮춰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간접투자에 비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직접투자의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적용대상 일치

- 동 과세특례는 특별한 제·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반면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속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온 결과,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간 불일치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표 VI-4>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대상 비교

구분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직접투자 및 개인투자 조합 통한 투자	벤처 인증 기업	업력 5년 이내		○	○	
		업력 5년 초과	벤처인증 후 3년 이내		○	○
			벤처인증 후 3년 초과	K-OTC 시장 거래	○	○
				K-OTC 시장 미거래	○	×
	벤처 미인증 기업	업력 3년 이내	기술성 우수중소기업		○	×
			R&D 지출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	×
			기술신용평가 5등급 이상 중소기업		○	×
			벤처인증 전 2년 내 투자		○	×
		업력 3년 초과	벤처인증 전 2년 내 투자		○	×
			창업기획자			
간접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해당 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	
			기타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당 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	
			기타	○	×	
	농식품투자조합		해당 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	
	전문투자조합		해당 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	
			기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기술성 우수중소기업, R&D 지출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 5등급 이상 중소기업		업력 3년 이내		○	○
업력 4-7년 이내			○	×		

자료: 저자 작성

- 타당성 분석결과,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벤처투자의 범위 불일치로 인해 동 과세특례의 인지도가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됨⁶⁰⁾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제도 인지도가 높은 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별도의 확인서 발급절차가 없어 투자시점에 개인투자자가 본인이 수혜대상인지 인지하기 어려움
 -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3%가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벤처투자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함
 - 동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낮은 인지도 및 이해도는 동 제도의 효과성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도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동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아서’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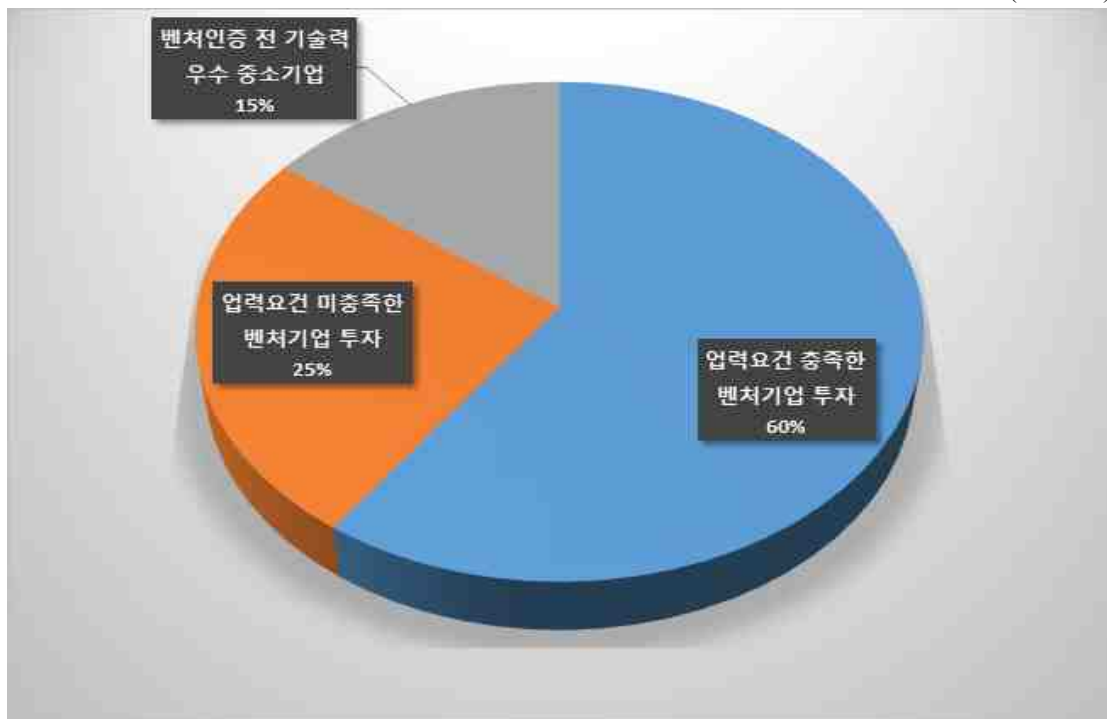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벤처인증 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인증 전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둘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개인의 벤처 직접투자에 대해 5년의 업력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업력에 제한 없이 모든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 셋째,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시 출자금의 사용용처에 관계없이 출자금 전액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정책목적에 부합되는 투자를 한 부분만 분리하여 지원대상으로 함
 - 넷째, 창업기획자, 벤처기업투자신탁,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이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 하나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특례항목이 존재함

60)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분석결과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96.1%와 93.3%에 달한 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이보다 낮은 77.7%와 36.3%에 그침

- 2018년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발급실적의 40.3%가 벤처인증 또는 업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됨
 - 총발급실적의 25.5%는 업력 5년 후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고, 14.8%는 우수한 기술력은 있지만 벤처인증 전이라서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그림 VI-3]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실적 분석

(단위: %)



주: 2018년 발급실적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가공

- 동 과세특례의 경우 벤처인증 전 투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에 비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 창업 후 벤처인증까지 평균 4.55년(2019년 기준)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동 과세특례는 창업 5년 내 벤처기업 직접투자만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벤처인증 후 0.45년간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이루어짐
 - 아울러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인증 전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초기 중소기업(업력 3년 이내)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나, 동 과세특례는 벤처인증 전 투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벤처투자의 절대적인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벤처투자가 창업초기기업보다 중기 벤처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벤처인증 전 기술력을 갖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업력별 벤처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업력 3년 이내 초기 벤처기업 투자비중은 2015년 47.2%에서 2019년에는 44.3%로 감소한 반면 업력 3~7년 사이 중기 벤처기업 투자비중은 26.1%에서 34.1%로 증가함

<표 VI-5>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개사,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초기(3년 이내)	업체수	511	568	570	625	744
	비중	47.2	46.0	43.7	43.3	44.3
	투자금액	6,472	7,909	7,796	9,810	13,901
	비중	31.1	36.8	32.7	28.6	32.5
중기(3~7년)	업체수	283	334	363	454	573
	비중	26.1	27.0	27.8	31.4	34.1
	투자금액	5,828	6,156	6,641	11,935	17,662
	비중	27.9	28.7	28.0	34.8	41.3
후기(7년 초과)	업체수	289	336	373	365	362
	비중	26.7	27.0	28.5	25.3	21.6
	투자금액	8,558	7,438	9,366	12,504	11,214
	비중	41.0	34.5	39.3	36.5	26.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 1. 29)

- 동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벤처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회사 모든 그룹에서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일치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인투자자의 40.8%가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일치화를 동 과세제도의 개선사항 1순위로 꼽음

<표 VI-6>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관련 개선사항(1순위)

(단위: 명, 개소, %)

구분	사례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일치화	벤처기업 업력에 따른 차별적인 세제 혜택	신주취득 뿐 아니라 구주인수로 지원대상 확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주식 양도차손을 비적격 주식양도 차익과 상계 허용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한도 설정
벤처투자자	(103)	40.8	16.5	25.2	2.9	1.9
창업투자회사	(49)	30.6	30.6	14.3	0.0	4.1
벤처기업	(46)	39.1	15.2	6.5	4.3	15.2
창업기획자	(91)	29.7	26.4	23.1	0.0	2.2
구분	사례수	주식양도 차익을 벤처주식 재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 혜택 제공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차등적용	직접출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의 일치투자	벤처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축소와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벤처투자자	(103)	1.9	3.9	2.9	1.0	2.9
창업투자회사	(49)	0.0	6.1	0.0	12.2	2.0
벤처기업	(46)	4.3	8.7	0.0	2.2	4.3
창업기획자	(91)	3.3	7.7	2.2	1.1	4.4

자료: 벤처투자자(개인), 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 창업기획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불일치가 정책효과를 낮추는 장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양 제도의 지원대상을 일치시켜 제도의 단순화와 효율성을 높이되, 단기적으로는 벤처인증 전 기술성 우수중소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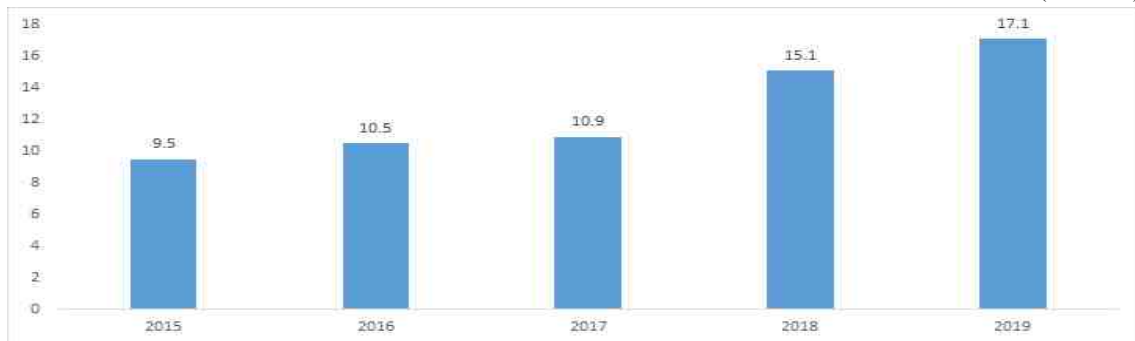
○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 시점에는 벤처기업 등 투자에 사용될 비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 벤처기업별·투자자별 한도 설정

- 타당성 분석결과, 동 과세특례는 벤처기업별·투자자별 한도 미설정으로 인하여 소수의 벤처기업 및 고소득자에 세제 혜택이 편중되는 현상이 존재함
- 2019년 기준 동 제도의 수혜기업은 전체 벤처인증기업의 17.1% 미만에 불과함
 -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는 업력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1사당 엔젤투자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1사당 엔젤투자액은 120만원~61억 8천만원으로 기업별로 상당한 편차를 나타냄

[그림 VI-4] 동 과세특례의 수혜기업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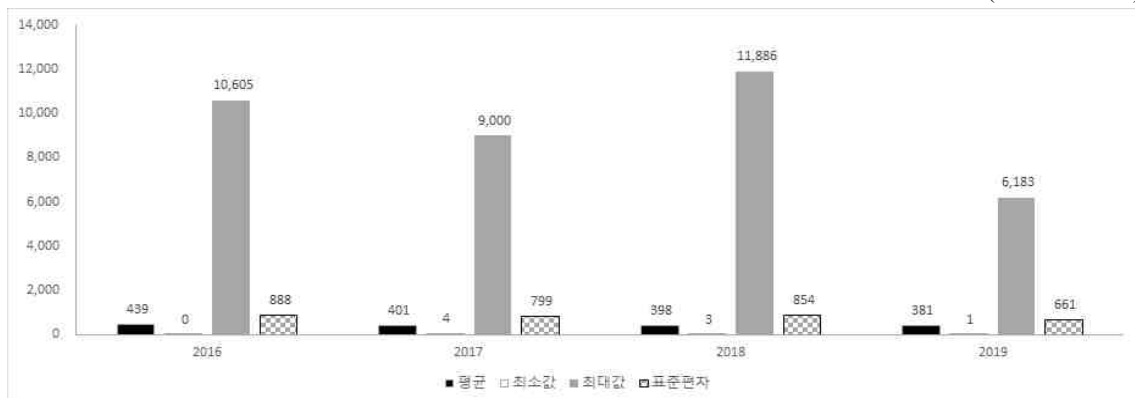


주: 수혜 벤처기업 수 ÷ 각 연도 말 벤처인증기업 수 =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벤처기업 수+신기술 사업금융이 투자한 벤처기업 수+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벤처기업 수+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수) ÷ 각 연도 말 벤처인증기업 수

자료: 벤처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여신금융협회, K-OTC 홈페이지

[그림 VI-5] 업력 5년 미만 벤처기업의 1사당 엔젤투자액 분포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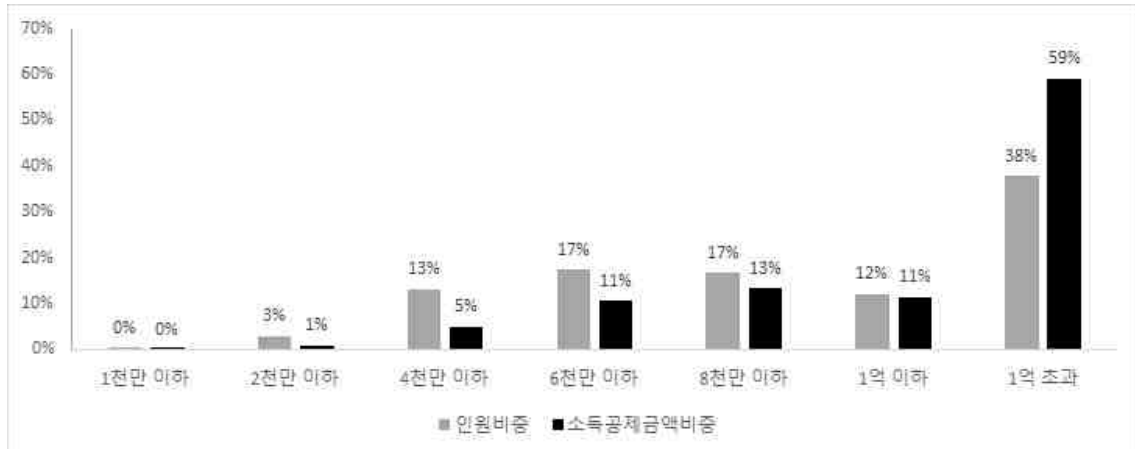
주: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를 발급한 벤처기업 중 업력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1사당 엔젤투자액을 집계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자료 가공

- 2019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소득공제 신청인원의 50%, 소득공제 신청액의 70%가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비상장 벤처주식을 양도한 개인투자자의 종합소득 분포를 살펴본 결과, 비상장 벤처주식 양도가액의 52.4%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있음
 - 고소득자의 벤처주식 양도가액이 저소득자보다 크고, 투자수익률 또한 높으므로⁶¹⁾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자에 편중됐을 가능성이 높음

[그림 VI-6] 근로소득금액 규모별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비율

(단위: %)



- 주: 1. 근로소득금액 규모별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인원/전체 근로소득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인원
- 2. 근로소득금액 규모별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금액/전체 근로소득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자료 가공

- 주요국은 벤처기업별·투자자별 한도 설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특정 벤처기업이나 특정 투자자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있음
 - 미국은 투자자별 한도만을 설정하고 있으며, 한도는 취득가액의 10배와 평생 한도 1천만달러 중 큰 금액임
 - 영국은 투자자뿐 아니라 벤처기업에도 한도를 두고 있으며, 혁신기업에는 더 높은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61)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투자규모와 소득금액이 클수록 벤처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VI-7〉 주요국의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한도

국가	투자자별 한도	벤처기업별 한도
미국	취득가액의 10배와 평생한도 1천만달러 중 큰 금액	없음
영국	SEIS: £5만 EIS: £1백만	SEIS: £15만 EIS: £12백만(평생한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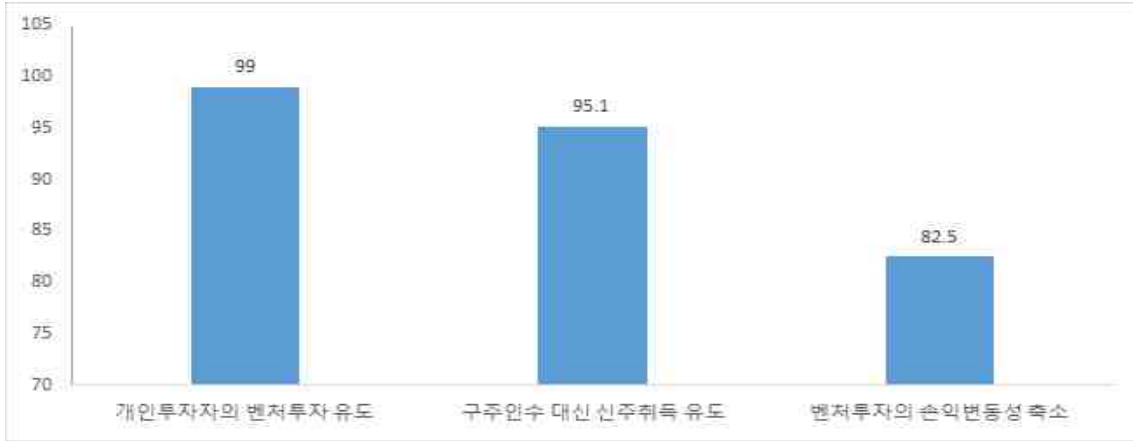
- 특정 벤처기업 및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과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별, 투자자별로 취득가액 기준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투자 장려가 필요한 혁신기술개발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높은 한도를 설정할 경우 극초창기 유망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벤처기업별·투자자별 한도 설정이 벤처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정책효과를 낮추지 않으면서 과세 공평성 유지가 가능한 적절한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해야 할 것임
 - 일반투자자보다 전문투자자가 동 과세특례의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별 한도설정이 전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이나 영국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 벤처기업 투자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높은 수준의 평생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한도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라. 엔젤투자손실공제제도 도입

- 동 과세특례의 효과성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투자손익 변동성 축소효과가 개인의 벤처신주취득 유인효과보다 낮게 평가됨
 -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도’ 효과의 긍정응답비율은 99%에 달한 반면 ‘벤처투자의 손익변동성 축소’ 효과의 긍정응답비율은 이보다 낮은 82.5%로 집계됨

[그림 VI-7] 동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개인투자자의 평가(긍정응답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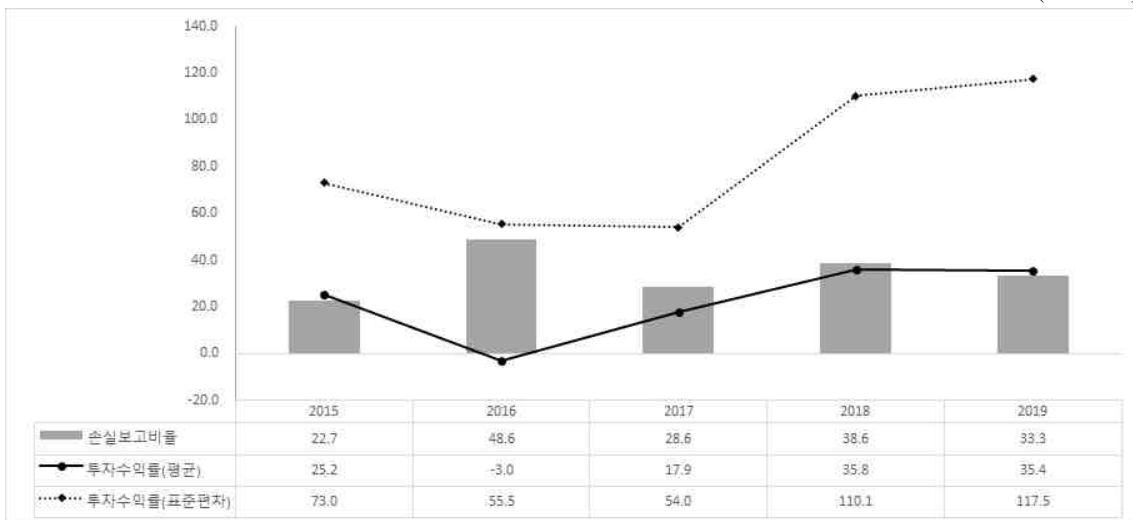


자료: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률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1/3이 손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최근 5년간 해산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22.7~48.6%가 손실을 보고함
 -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투자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편차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벤처투자자의 투자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8] 최근 5년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률 분포

(단위: %)



주: 1. 투자수익률=(회수액-투자액)/투자액
 2. 회수액은 이미 감액이 반영된 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가공

- 우리나라는 벤처투자자의 높은 손실보고비율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투자실패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투자 성공 시 인센티브로 투자 실패 시 세제지원이 전무함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일본 등 조사대상 국가들은 벤처주식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이나 통상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임

〈표 VI-8〉 주요국의 엔젤투자손실공제제도

국가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양도차손 공제규정	벤처주식 양도차손 공제특례
미국	주식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 또는 통상소득(연간 \$3,000 한도)과 통산 가능하며,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	-
영국	주식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하며,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	EIS 또는 SEIS주식의 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자 시 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손실잔액을 주식매각연도 또는 그 이전 과세연도의 통상소득과 상계 가능
일본	상장주식 양도차손은 분리과세 신청 상장주식의 배당·양도소득, 특정 공사채 및 공모공사채 투자신탁 등의 이자·배당·양도소득과 통산 가능하며, 3년 내 이월공제 가능	특정한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차손 또는 감액손실은 다른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하며, 3년 내 이월공제 가능

자료: 저자 작성

-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세계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벤처투자실패로 인한 양도차손에 대해 보다 폭넓은 손익통산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벤처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의 양도차손은 연 3천달러 범위 내에서 통상소득과 통산이 가능함
 - 영국의 경우 비상장 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은 주식매각연도 또는 그 이전 과세연도의 통상소득과 제한 없이 상계가 가능함
 - 일본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는 대신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차손 또는 감액손실을 다른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투자실패에 대한 우려로 개인이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주요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벤처주식의 양도차손 및 감액손실을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통상소득과 상계는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 국가 세수에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할 것임

마. 과세이연제도의 도입

-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주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개인투자자의 1/3 이상이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벤처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년 내 회수비율이 전체의 35.5%로 나타남
 - 특히, 투자금액이나 소득이 적을수록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회수기간이 짧았음

[그림 VI-9]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평균 회수기간



자료: 벤처투자자(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우리나라의 의무보유기간이 주요국에 비하여 긴 편은 아니지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K-OTC 시장의 중소·중견기업 주식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 미국의 의무보유기간은 5년, 영국은 3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의무보유기간이 길거나 동일함

-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활성화된 회수시장의 존재로 위험부담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업력요건이나 보유기간 요건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은 업력요건 및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⁶²⁾
- 한편 주요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는 벤처투자 회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종류 및 유형이 다양하지 못한 편임
 -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가 벤처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외에도 벤처주식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벤처주식 양도차손에 대한 공제특례 등 다양한 유형의 과세특례를 운영 중임
 - 미국과 영국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벤처주식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동시에 운영하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과세이연보다 엄격함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나 과세이연의 의무보유기간은 이보다 짧은 6개월임

〈표 VI-9〉 주요국의 벤처투자 회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종류

과세특례의 종류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양도소득세 비과세	○	○	○	×
벤처주식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	○	×
벤처주식 양도차손에 대한 공제특례	×	○	○	○

자료: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투자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세제 혜택 때문에 주어진 회수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
 - 개인투자자가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벤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등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2) 벤처투자의 주요 회수수단이던 IPO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의무보유기간이 타 국가에 비하여 긴 편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의무보유기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3년으로 유지하되, 3년을 못 채우고 벤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벤처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⁶³⁾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재투자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63)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8

참고문헌

-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_____,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2019년 K-OTC 시장 동향 분석」, 2020. 1. 8.
김승찬·김홍근, 「개인투자조합 출자자의 출자의사결정요인 실증연구: 벤처기업 투자
의사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32권(11), 2019.
김재진·김진수,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김재진·양동우, 「벤처캐피탈 투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4), 2014.
김재진·홍범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김진수·김재진,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벤처투자정보센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0. 1분기.
여신금융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현황 및 투자실적」, 2020. 2.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20.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 1. 29.
_____, 「창업기획자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 2020. 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vol.143, 2020. 5.
- European Commission,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for venture capital and business
angels to foster the investment of SMEs and start-ups*, 2017.
- Jeng, L. A., and Wells, P. C., “The determinants of venture capital funding: evidence
across countrie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 6(3), 2000, pp. 241~289.

<미국>

https://www.irs.gov/publications/p550#en_US_2019_publink100010688, 검색일자: 2020. 5. 18.

<https://www.angelcapitalassociation.org/aca-public-policy-state-program-details/>, 검색일자: 2020. 5. 18.

<https://venturesouth.vc/south-carolina-angel-investor-credit>

https://www.njeda.com/technology_lifesciences/angel_investor_tax_credit_program

<영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raise-money-by-offering-tax-reliefs-to-investors>, 검색일자: 2020. 5. 18.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 검색일자: 2020. 5. 18.

<프랑스>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fr_s_1.7.2.2.&refresh=1590386915724#ita_fr_s_1.7.2., 검색일자: 2020. 5. 25.

<일본>

<https://www.nta.go.jp/m/taxanswer/1530.htm>

<https://www.nta.go.jp/m/taxanswer/1531.htm>

<https://www.nta.go.jp/m/taxanswer/1532.htm>

<https://www.nta.go.jp/m/taxanswer/1533.htm>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등록현황,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30453&sid=388&itemSeq=296945&bizCategoryCode=>, 검색일자: 2020. 6. 11.

크라우드넷, <https://www.crowdnet.or.kr/index.jsp>, 검색일자: 2020. 6. 10.

K-OTC 홈페이지, <http://www.k-otc.or.kr/>, 검색일자: 2020. 6. 11.



부 록



<부 록> 설문지(벤처투자자)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20개 내외이며,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현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조사담당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수행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A. 일반 현황

A01. 귀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용) 투자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설문 중단

A02. 귀하가 최근 3년 내 직·간접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1. 1,500만원 이하
2.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 5억원 초과

A03. 귀하가 최근 3년 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1.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4. 크라우드 펀딩
5.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6.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7. 기타 ()

A04. 귀하가 최근 3년 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간접투자'란 직접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 크라우드 펀딩, 벤처 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투자 비율
직접투자(A03의 보기1)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
간접투자(A03의 보기2~6)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
합계	<input style="width: 80%; text-align: left;" type="text" value="1 0 0"/> %

A05. 귀하가 최근 3년 내 벤처기업에 투자하실 때의 각 투자 방법별 투자 금액의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투자 비율
신주발행(증자참여)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
구주취득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
전환사채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
프로젝트 파이낸싱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
기타()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
합계	<input style="width: 80%; text-align: left;" type="text" value="1 0 0"/> %

C03. 개인의 벤처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 중 어느 것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직접투자
2. 간접투자
3. 무차별

C04. 현재의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2. 충분한 편이다
3. 부족한 편이다
4. 매우 부족한 편이다

C05.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C05-1. (C05에서 보기1 응답자만)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응답 가능)

1. 창업 후 5년 이상 벤처기업 주식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술성 우수중소기업
3. 창업 후 3년 미만 R&D지출 연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4. 창업 후 3년 미만 기술신용평가 5등급 이상 우수기업
5. 창업벤처전문 PEF가 취득한 벤처주식
6.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취득한 벤처주식
7. 기타()

C06.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 대상을 구주인수로 확대하는 것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영향이 없을 것이다
2. 개인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할 유인을 줄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개인투자자의 투자회수를 용이하게 만들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모든 구주인수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C07.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일치화
2. 벤처기업 업력에 따른 차별적인 세제 혜택
(예: 투자위험이 높은 업력 3년 미만 벤처기업 투자에 더 큰 세제 혜택 제공)
3. 신주취득뿐 아니라 구주인수로 지원대상 확대
4.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벤처주식 양도차손을 비적격 주식양도차익과 상계 허용
5.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한도 설정
6. 주식양도차익을 벤처주식 재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 혜택 제공
7.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8.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차등적용
9.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의 일치
10. 벤처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축소와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11. 기타()

**C08.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간담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연락처 남겨주시면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참여의사 있음(연락처:)
2. 참여의사 없음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설문지(창업투자회사)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20개 내외이며,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현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조사담당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수행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A. 일반 현황

A01. 귀사는 최근 3년 내 창업투자조합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설문 중단

A02. 귀사가 현재 운영 중인 창업투자조합은 몇 개입니까?

개

A03. 귀사가 현재 운영 중인 창업투자조합의 평균적인 투자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구분	투자자 구성 비율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input type="text"/> %
일반법인투자자(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제외)	<input type="text"/> %
개인투자자	<input type="text"/> %
개인투자조합	<input type="text"/> %
기타 투자자	<input type="text"/> %
합계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0 <input type="text"/> 0 %

A04. 귀사가 현재 운영 중인 창업투자조합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1. 0% 미만(손실) 2. 0~10% 3. 10~20% 4. 20~30%
 5. 30~40% 6. 40~50% 7. 50% 초과

B. 특례제도의 효과

다음은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개인투자자의 벤처주식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사의 최근 3년간 창업투자조합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B01. 귀하는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벤처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1	2	3	4
구주 인수 대신 신주취득을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1	2	3	4
벤처투자의 손익변동성을 줄여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1	2	3	4

☞ 1개 항목이라도 3(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4(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한 경우만 B01-1 문항 응답

B01-1. (B01에서 1개 항목이라도 효과가 없다고 한 응답자만)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인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조세가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개인투자자가 조세보다 다른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 다른 조세지원제도가 개인투자자 유치에 더 큰 효과가 있어서
(예시. 벤처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 최초 투자 당시에는 양도차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서
- 동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아서
- 기타()

B02. 귀하는 다음의 세제 혜택이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벤처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1	2	3	4
벤처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2	3	4

B03.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세제 혜택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벤처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2. 벤처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B03-1. (B03에서 1순위 응답으로 보기1을 선택한 경우만) 벤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보다 개인의 벤처투자 유도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양도차익의 실현 여부는 불확실한 반면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결과에 관계없이 절세효과가 발생하므로
2. 양도소득세 부담보다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더 크므로
3.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지원 대상 범위가 더 넓으므로
4. 기타 ()

B04. 세제 혜택이 벤처 투자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 유형은 누구입니까? 영향력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2. 일반 법인투자자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제외)
3. 개인투자자
4. 기타 투자자()

C02.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중 어느 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벤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 벤처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C03. 개인의 벤처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 중 어느 것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직접투자
2. 간접투자
3. 무차별

C04. 현재의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2. 충분한 편이다
3. 부족한 편이다
4. 매우 부족한 편이다

C05.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C05-1. (C05에서 보기1 응답자만)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응답 가능)

1. 창업 후 5년 이상 벤처기업 주식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술성 우수중소기업
3. 창업 후 3년 미만 R&D지출 연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4. 창업 후 3년 미만 기술신용평가 5등급 이상 우수기업
5. 창업벤처전문 PEF가 취득한 벤처주식
6.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취득한 벤처주식
7. 기타()

C06.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 대상을 구주인수로 확대하는 것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영향이 없을 것이다
2. 개인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할 유인을 줄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개인투자자의 투자회수를 용이하게 만들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모든 구주인수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C07.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일치화
2. 벤처기업 업력에 따른 차별적인 세제 혜택
 (예: 투자위험이 높은 업력 3년 미만 벤처기업 투자에 더 큰 세제 혜택 제공)
3. 신주취득뿐 아니라 구주인수로 지원대상 확대
4.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벤처주식 양도차손을 비적격 주식양도차익과 상계 허용
5.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한도 설정
6. 주식양도차익을 벤처주식 재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 혜택 제공
7.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8.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차등적용
9.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의 일치
10. 벤처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축소와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11. 기타()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설문지(벤처회사)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20개 내외이며,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현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조사담당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수행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A. 일반 현황

A01. 귀사의 창업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년

B02. 귀하는 다음의 세제 혜택이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벤처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1	2	3	4
벤처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2	3	4

B03.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세제 혜택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벤처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2. 벤처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B03-1. (B03에서 1순위 응답으로 보기1을 선택한 경우만) 벤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보다 개인의 벤처투자 유도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양도차익의 실현 여부는 불확실한 반면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결과에 관계없이 절세효과가 발생하므로
2. 양도소득세 부담보다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더 크므로
3.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지원 대상 범위가 더 넓으므로
4. 기타()

B04. 세제 혜택이 벤처 투자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 유형은 누구입니까? 영향력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2. 일반 법인투자자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제외)
3. 개인투자자
4. 기타 투자자 ()

B05.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귀사에 미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벤처회사의 개인투자자 유치에 효과가 있었다	1	2	3	4
구주 인수 대신 신주취득을 유도함으로써 벤처회사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1	2	3	4
벤처 출자에 대한 투자손익변동성을 줄여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1	2	3	4

☞ 1개 항목이라도 3(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4(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한 경우만 B05-1 문항 응답

B05-1. (B05의 보기3,4 응답자만) 효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인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조세가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개인투자자가 조세보다 다른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 다른 조세지원제도가 개인투자자 유치에 더 큰 효과가 있어서
(예시. 벤처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 출자 당시 양도차익 발생여부가 불확실해서
- 동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아서
- 귀사는 상장기업이라 원래부터 귀사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기타()

C. 특례제도의 개선방안

C01.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확대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 일반 법인투자자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제외)
- 개인투자자
- 개인투자조합
- 기타 투자자()

C02.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중 어느 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벤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 벤처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C03. 개인의 벤처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 중 어느 것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직접투자
2. 간접투자
3. 무차별

C04. 현재의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2. 충분한 편이다
3. 부족한 편이다
4. 매우 부족한 편이다

C05.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C05-1. (C05에서 보기1 응답자만)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1. 창업 후 5년 이상 벤처기업 주식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술성 우수중소기업
3. 창업 후 3년 미만 R&D지출 연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4. 창업 후 3년 미만 기술신용평가 5등급 이상 우수기업
5. 창업벤처전문 PEF가 취득한 벤처주식
6.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취득한 벤처주식
7. 기타()

C06.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 대상을 구주인수로 확대하는 것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영향이 없을 것이다
2. 개인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할 유인을 줄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개인투자자의 투자회수를 용이하게 만들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모든 구주인수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C07.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일치화
2. 벤처기업 업력에 따른 차별적인 세제 혜택
(예: 투자위험이 높은 업력 3년 미만 벤처기업 투자에 더 큰 세제 혜택 제공)
3. 신주취득뿐 아니라 구주인수로 지원대상 확대
4.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벤처주식 양도차손을 비적격 주식양도차익과 상계 허용
5.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한도 설정
6. 주식양도차익을 벤처주식 재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 혜택 제공
7.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8.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차등적용
9.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의 일치
10. 벤처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축소와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11. 기타()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설문지(창업기획자)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20개 내외이며,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현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조사담당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수행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A. 일반 현황

A01. 귀사가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	--	--	--	--

 년

B02. 귀하는 다음의 세제 혜택이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벤처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1	2	3	4
벤처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2	3	4

B03.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세제 혜택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벤처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2. 벤처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B03-1. (B03에서 1순위 응답으로 보기1을 선택한 경우만) 벤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보다 개인의 벤처투자 유도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양도차익의 실현 여부는 불확실한 반면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결과에 관계없이 절세효과가 발생하므로
2. 양도소득세 부담보다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더 크므로
3.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지원 대상 범위가 더 넓으므로
4. 기타()

B04. 세제 혜택이 벤처 투자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 유형은 누구입니까? 영향력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2. 일반 법인투자자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제외)
3. 개인투자자
4. 기타 투자자()

B05.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귀사에 미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자 유치에 효과가 있었다	1	2	3	4
구주 인수 대신 신주취득을 유도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1	2	3	4
창업기획자 출자에 대한 투자손익변동성을 줄여 개인투자자의 창업기획자 투자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1	2	3	4

☞ 1개 항목이라도 3(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4(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한 경우만 B05-1 문항 응답

B05-1. (B05에서 1개 항목이라도 효과가 없다고 한 응답자만) 효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개인투자자의 투자이사결정에 조세가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개인투자자가 조세보다 다른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2. 다른 조세지원제도가 개인투자자 유치에 더 큰 효과가 있어서
3. 출자당시 양도차익 발생여부가 불확실해서
4. 동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아서
5. 귀사는 상장기업이라 원래부터 귀사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6. 기타()

B06. 귀사의 개인투자자의 신주취득과 구주 인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3년간 평균을 답해 주십시오.

구분	비중
신주 취득	<input type="text"/> %
구주 인수	<input type="text"/> %
기타()	<input type="text"/> %
합계	1 0 0 %

B07. 2016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 대상에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동 세법개정이 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세법개정 이후 개인투자자 유치가 더 용이해졌다	1	2	3	4
세법개정 이후 개인투자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1	2	3	4
세법개정 이후 개인투자자가 구주인수보다 신주취득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1	2	3	4

C. 특례제도의 개선방안

C01.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확대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2. 일반 법인투자자(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제외)
3. 개인투자자
4. 개인투자조합
5. 기타 투자자()

C02.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중 어느 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벤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 벤처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C03. 개인의 벤처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 중 어느 것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직접투자
2. 간접투자
3. 무차별

C04. 현재의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2. 충분한 편이다
3. 부족한 편이다
4. 매우 부족한 편이다

C05.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C05-1. (C05에서 보기1 응답자만)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응답 가능)

1. 창업 후 5년 이상 벤처기업 주식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술성 우수중소기업
3. 창업 후 3년 미만 R&D지출 연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4. 창업 후 3년 미만 기술신용평가 5등급 이상 우수기업
5. 창업벤처전문 PEF가 취득한 벤처주식
6.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취득한 벤처주식
7. 기타()

C06.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 대상을 구주인수로 확대하는 것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영향이 없을 것이다
2. 개인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할 유인을 줄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개인투자자의 투자회수를 용이하게 만들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모든 구주인수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C07.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일치화
2. 벤처기업 업력에 따른 차별적인 세제 혜택
 (예: 투자위험이 높은 업력 3년 미만 벤처기업 투자에 더 큰 세제 혜택 제공)
3. 신주취득뿐 아니라 구주인수로 지원대상 확대
4.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벤처주식 양도차손을 비적격 주식양도차익과 상계 허용
5.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한도 설정
6. 주식양도차익을 벤처주식 재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 혜택 제공
7. 벤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8.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차등적용
9.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의 일치
10. 벤처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축소와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11. 기타()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